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4-19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Research on Operational and Management Roadmaps for Rural Specialized Districts in Jeonbuk State

장성화 김귀진

Jthink 전북연구원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장성화

전북대학교 공학박사(도시계획)
전북대학교 도시 및 환경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일본 동경대학 ANESC 공동연구원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귀진

전북대학교 공학석사(도시계획)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4-19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Research on Operational and Management Roadmaps for Rural Specialized Districts in Jeonbuk State

장성화 김귀진

Jthink 전북연구원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 구 책 임	장성화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4장, 5장(1절, 3절, 4절)
공 동 연 구	김귀진	연구위원	제2장 2절, 3장, 5장(2절, 3절)

자 문 위 원	김영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상범	국립농업과학원 농촌공간계획실장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장효천	(사)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원장
	백금철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차장

연구관리 코드 : 24JU1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SUMMARY

1.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농촌특화지구 제도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됨

○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24년 시행되는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 사업지원을 위한 공간적 범위의 설정과 함께 기존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와 강화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에 따라 향후 이로 인한 전북자치도 농촌공간의 개발과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첫째,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고려할 사항과 구체적인 방법 등 시군의 일선 현장에서서의 정책 적용 및 집행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

- 현재, 농림축산식품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정책설명 자료들이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에 일정부분 계획 수립권자의 자율성을 허용

○ 둘째,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시설의 신규 입지에 대한 제한사항과 지정지구로의 시설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사업과의 연계 필요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수단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지구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특례사항 들을 검토, 농촌특화지구에 적용방안 모색

○ 이 연구는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로, 정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사례 시군의 계획 내용 분석을 통해 도내 13개 시군 및 도 차원에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계획수립 단계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2024년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였으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농촌특화지구에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 농식품부의 정책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연구목표와 방향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였음

○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지침 등)의 확정과 연동하여 농촌특화지구를 포함한 농촌공간계획 전반의 계획수립 및 심의·승인 기준, 추진체계 등에 대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연구(용역 포함)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농촌공간계획의 법적인 위상 부여 및 범위 확정

○ 농촌공간계획은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촌공간에 대한 부분을 보조(완화 또는 강화)하고 공간적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을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관리·성장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계획 수립 절차 개선

○ 현행 법령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와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 혼선과 계획기간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됨

○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자문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의 기능은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 사업계획은 기본·시행계획과 수립 목적 및 범위 등가 소규모·구체적이므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계획수립 취지를 고려한 과도한 현황분석 항목의 조정

○ 기본계획의 수립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계획수립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황분석 관련 항목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완화 또는 삭제 검토 필요

○ 인구분석,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은 현행 지침에서의 위상을 축소 조정하여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기준에 포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 필요

○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의 경우, 농촌특화지구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구계 설정, 세부사업의 입지선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보조자료로 활용 제안

▌농촌특화지구 관련 기본·시행계획의 내용 범위 명확화

○ 기본계획에서는 농촌특화지구 후보지역을 도출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구의 선정 및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시군의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의 취지와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농촌특화지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 필요

차 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3
나. 연구의 목적 ····· 10

2. 연구 범위 및 수행방법

가. 연구의 범위 ····· 11
나. 연구의 수행방법 ····· 12

제2장 농촌공간 정책 동향 분석

1. 농촌공간 정책의 변화 ····· 17

2. 농촌공간 정책·제도의 동향

가. 농촌공간 관련 정부 정책 동향 ····· 23
나. 농촌공간 관련 법령 관련 동향 ····· 26

3. 농촌공간계획 관련 동향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방침 ····· 34
나. 관련 정책 동향 ····· 39
다. 농촌공간 계획 수립 동향 ····· 40

제3장 농촌특화지구 정책 및 사례 분석

1. 농촌특화지구의 도입 배경 및 목적

가. 농촌특화지구의 도입 배경 ····· 45
나. 농촌특화지구의 목적 ····· 47

2. 농촌특화지구의 개념과 운영 방향

가. 농촌특화지구의 정의 ····· 49
나. 농촌특화지구의 운영 방향 ····· 51

3. 농촌특화지구 사례 분석

가. 농촌공간계획 및 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사례 검토 ····· 52
나. 사례 분석 ····· 74

제4장 농촌특화지구 지정 방안

1.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 ····· 79

2.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및 고려 사항

가.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 81
나.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고려 사항 ····· 82

3.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 및 방법

가.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 ····· 89
나. 농촌특화지구 지정 방법 ····· 100

제5장 전북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방안

1. 농촌특화지구 적용 여건 검토

가.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준비 태세 ····· 109
나. 전북자치도의 정책 추진 여건 ····· 111

2. 농촌특화지구 운영 방향

가. 농촌마을보호지구 ····· 113
나. 산업 관련 지구 ····· 114
다. 경관농업지구 ····· 116
라. 농업유산지구 ····· 118
마. 시행계획 수립 이외 지역 운영 방안 ····· 120

3. 전북형 농촌특화지구 검토(안)

가. 「전북특별법」 특례지구 내용 검토 ····· 121
나. 농생명산업지구 연계 방안 ····· 122
다. 기타 특례지구 연계 방안 ····· 125

4.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계획수립 기반마련 ····· 127
나. 관련 주체의 역량강화 ····· 130
다. 주민참여 확대 ····· 132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 요약 ····· 137

2. 정책적 제언 ····· 139

참고문헌 ····· 141

영문요약 (Summary) ····· 142

표 차 례
LIST OF TABLES

[표1-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주요 내용 ····· 5
[표1-2] 농촌특화지구의 개념 및 성격 ····· 8
[표1-3] 농촌특화지구 종류 및 내용 ····· 9

[표 2-1] 용도지역 현황 ····· 25
[표 2-2] 농촌공간재구조화 관련 법령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 30
[표 2-3]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시행 법령 비교 ····· 32
[표 2-4]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상 계획 내용 ····· 33
[표 2-5] 수립 지침 상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 관련 내용 ····· 33
[표 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농촌 현황 진단 내용 ····· 34
[표 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내 농촌특화지구 관련 내용 ···· 38
[표 2-8]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실) 중 농촌관련 내용 ····· 39
[표 2-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중인 지역 ····· 40

[표 3-1] 선행연구 농촌특화지구 관련 개념 및 유형 ····· 46
[표 3-2] 농촌특화지구 정의 및 개념 ····· 49
[표 3-3] 농촌특화지구 종류 및 정의 ····· 50
[표 3-4] 농촌특화지구 운영방향 ····· 51
[표 3-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중인 지역 ····· 52
[표 3-6] 순창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선정기준 ····· 53
[표 3-7] 순창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및 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 ····· 54
[표 3-8] 순창군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사업구성 ····· 56
[표 3-9] 나주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선정기준 ····· 57
[표 3-10] 나주시 농촌특화지구 지정 인센티브(안) ····· 59

[표 3-11] 나주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및 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 ····· 60
[표 3-12]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선정기준 ····· 62
[표 3-13]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및 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 ····· 63
[표 3-14] 당진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선정기준 및 프로세스 ····· 65
[표 3-15] 당진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및 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 ····· 66
[표 3-16] 부여군 농촌마을보호지구·산업관련 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프로세스 68
[표 3-17] 부여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을 위한 격자 및 입지적정성검토 기준 70
[표 3-18] 부여군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군 도출을 위한 격자 분석 기준 ····· 71
[표 3-19] 부여군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군 도출 프로세스 ····· 71
[표 3-20] 부여군 산업관련 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프로세스 ····· 73
[표 3-21] 시범수립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지침[별표3]에 따른 공간분석 수행 · 75
[표 3-22] 시범수립 시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과정 적용 현황 및 지표 · 76

[표 4-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성 ····· 80
[표 4-2] 농촌공간계획 수립 원칙_타 계획과의 조화 ····· 82
[표 4-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 83
[표 4-4] 농촌특화지구 별 지정가능 용도지구 ····· 84
[표 4-5] 농촌공간계획 수립 원칙_타 지역·지구와의 연계 ····· 85
[표 4-6] 샘플링 위치의 토지이용 규제현황 ····· 86
[표 4-7] 전라북도 마을 현황 ····· 87
[표 4-8]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방향 ····· 88
[표 4-9] 농촌마을 보호지구 지정 기준 ····· 90
[표 4-10] 정읍시 용도지역 별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90
[표 4-11] 자연취락지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91
[표 4-12] 농촌산업지구 지정 기준 ····· 92
[표 4-13] 농촌산업지구 설치 가능 시설 ····· 93
[표 4-14] 축산지구 지정 기준 ····· 94

[표 4-15] 축산지구 설치 가능 시설 ····· 95
[표 4-16]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기준 및 설치가능 시설 ····· 96
[표 4-17]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기준 및 설치가능 시설 ····· 97
[표 4-18] 경관농업지구 지정 기준 및 요건 ····· 98
[표 4-19] 농업유산지구 지정 기준 및 요건 ····· 99
[표 4-20]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본원칙 ····· 100

[표 5-1] 국내 농촌협약 선정 시군 현황 ····· 109
[표 5-2] 전북특별법에 따른 주요 특화지구 및 권한 이양 등의 특례 ····· 111
[표 5-3] 전북특별자치도 경관보전직접지불 사업지구 현황(2023) ····· 116
[표 5-4]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유산 현황 ····· 118
[표 5-5]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 119
[표 5-6]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지구 지정목적 및 내용 ····· 121
[표 5-7] 농생명산업지구 유형 및 범위 ····· 122
[표 5-8]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요건 ····· 122

그 림 차 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윤석열 정부의 농산어촌 관련 국정과제 ····· 3
[그림 1-2] 농촌공간정비 개념 ····· 4
[그림 1-3] 농촌공간계획 수립 체계도 ····· 6
[그림 1-4] 국토계획체계 상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여건 비교 ····· 7
[그림 1-5] 농촌지역 난개발 사회적 문제 사례 ····· 7
[그림 1-6] 농촌특화지구의 개념 ····· 9
[그림 1-7] 연구의 흐름 및 내용 ····· 13

[그림 2-1]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경과 ····· 18
[그림 2-2] '20~'21년 농촌협약 구상(안) ····· 19
[그림 2-3]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개념 ····· 19
[그림 2-4]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개념도 ····· 20
[그림 2-5] 거창군 농촌공간 정비계획 ····· 22
[그림 2-6]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국토계획 체계 ····· 23
[그림 2-7] 농촌공간정비사업 개념도 ····· 24
[그림 2-8] 농촌공간 계획체계 ····· 26
[그림 2-9] 농촌공간 계획의 내용 ····· 27
[그림 2-10] 농촌공간 계획 수립절차 ····· 28
[그림 2-11] 농촌공간 계획 추진 체계의 구성 ····· 29
[그림 2-12] 농촌공간 계획 추진 체계 ····· 29
[그림 2-13] 축산단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반대 ····· 31
[그림 2-14]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방침의 비전 및 전략 ····· 35
[그림 2-15] 농촌공간 기본방침 추진전략 1. 생활공간 재구조화 내용 ····· 36

[그림 3-1] 지구 및 완충구역 관리 개념도(여혜진 외) ····· 47
[그림 3-2] 토지이용 입지적정화(여혜진 외) ····· 47
[그림 3-3] 농촌특화지구의 개념 ····· 48
[그림 3-4] 농촌특화지구 개념도 ····· 50
[그림 3-5]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호보군 도출 과정 ····· 62
[그림 3-6]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시행·사업계획 수립 체계 ····· 74

[그림 4-1] 농촌공간계획 수립 체계 ····· 79
[그림 4-2]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 81
[그림 4-3] 도내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 84
[그림 4-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 사례 ····· 89

[그림 5-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비전체계 ····· 111
[그림 5-2]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수도 구상 ····· 112
[그림 5-3] 농생명산업지구 농업생산연계형 선정지역 ····· 123
[그림 5-4] 농생명산업지구의 형태 ····· 123
[그림 5-5] 농생명산업지구-농촌특화지구 연계 개념 및 효과 ····· 124
[그림 5-6] 친환경산악관광지구-농촌특화지구 연계 개념 및 효과 ····· 125
[그림 5-7] 입지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전북특례지구 적용 ····· 126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 추진

▌ 국정과제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재생 정책 추진

○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6대 국정목표와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당초 국정전략, 이하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설정(`22.7)국정을 운영중에 있음

- 농산어촌 관련 국정전략은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를 통해 4개의 국정과제를 설정함

[그림 1-1] 윤석열 정부의 농산어촌 관련 국정과제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 농촌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중에 있음(국정과제 70-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국정과제 70-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내용
ㅇ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등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400개소 지원, ~'31년)

○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과 시행령을 제정(`23.3.28) 시행(`24.3.29)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시행(`24.5.30)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률 제1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 · 일터 ·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 이용 · 보전하는 것(제2조(정의)의2)"으로 정의

- `농촌공간 재생`이란 "농촌공간의 정비와 함께 일자리 · 경제기반 창출, 주거 · 정주 환경정비, 교통 · 교육 · 문화 · 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촌의 삶터 · 일터 ·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제2조(정의)의3)" 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림 1-2] 농촌공간정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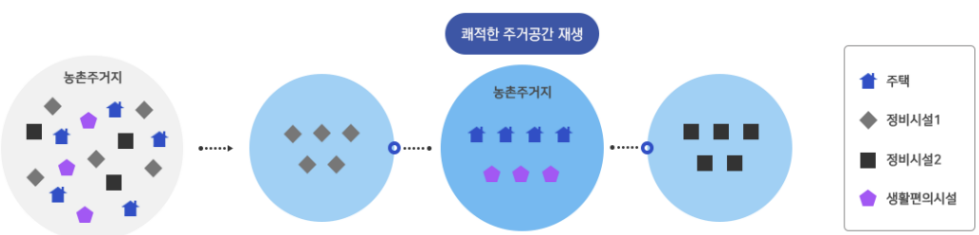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s://www.raise.go.kr/raise/geoInfoSystem/goMenu.json)

▌ 국정과제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재생 정책 추진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법령 제정이유를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이하 ”특화지구) 를 지정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함[1)]”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제정이유 내용을 정리하면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중장기 계획, 농촌특화지구`의 `실행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볼 수 있음

[표1-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 기본방침 : 국가차원 방향 제시, 10년 계획(5년 재검토) ○ 기본계획 : 중장기 전략 계획, 10년 계획(5년 재검토) ○ 시행계획 : 사업 세부 실행계획, 5년 계획
농촌특화지구	○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 ○ 유사 기능시설을 배치, 주민 거주지역 보호 및 산업 집적효과 유도 ○ 주민제안 및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통해 7개 유형의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협약	○ 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분담 비율을 농림축산식품부-시군 간 이행 약속 - 신청 : 시장·군수 - 공모사업 진행을 통한 선정 및 협약 체결
추진 체계	○ 심의회 (방침 및 계획 심의) -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 농식품부 구성, 기본방침 수립·변경, 국가 주요시책 심의 -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 시·도 구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시책 심의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 시·군 구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계획, 주요시책 심의 ○ 지원조직 (계획 수립·지원, 사업추진 협의) - 농촌공간중앙지원기과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 시·도지사 지정 -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 시장·군수 지정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제정·개정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농촌공간 중장기 계획은 국가계획인 기본방침을 최상위 계획으로 기본계획, 시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시행계획의 각 사업들은 사업시행자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함

[그림 1-3] 농촌공간계획 수립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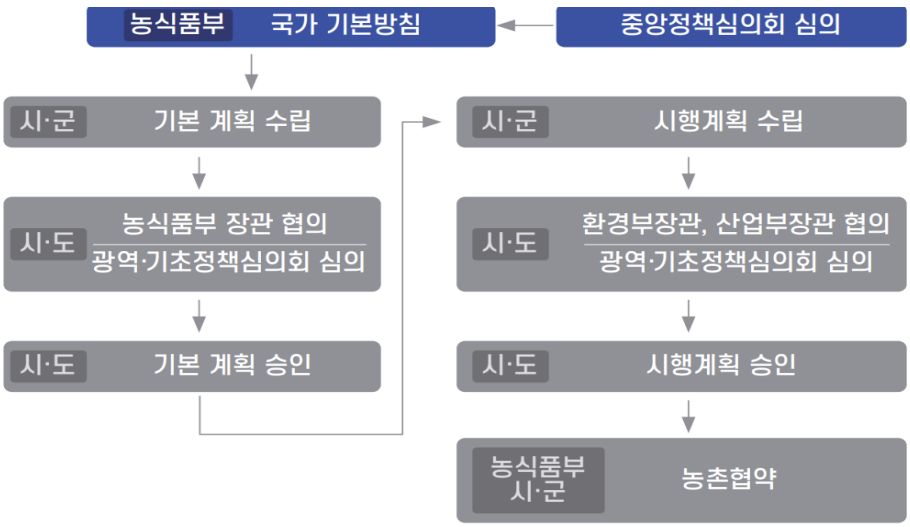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 농촌공간 정비를 위한 토지이용 체계 마련

▌농촌공간의 난개발

○ 우리나라 토지의 이용과 개발, 보전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지구와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짐

○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기반한 용도지역·지구는 도시개발의 압력에 따른 도시지역을 구획화(Zoning)하여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 도시민들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용도지역은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토지에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면, 비도시지역에 대해

서는 미개발지, 개발 보유지, 농림업·축산업 등을 위한 기반 성격으로 규정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도시지역 대비 입지제한에 있어 자유로움

[그림 1-4] 국토계획체계 상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여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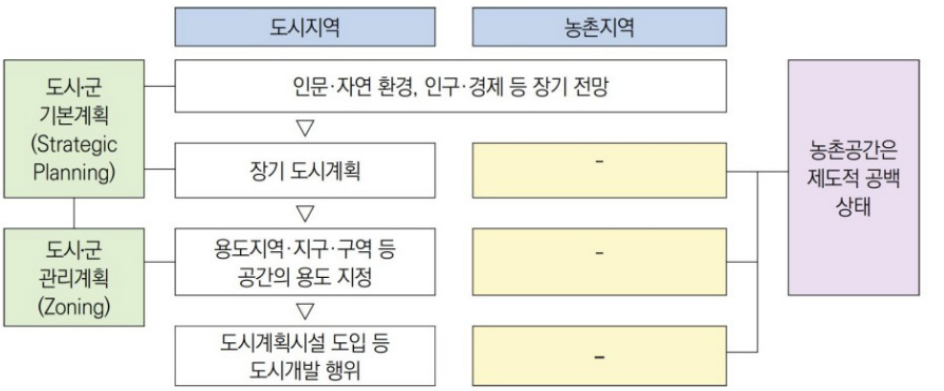

자료 : 농식품부 내부자료. 송미령 외 (2021) 재인용

- 단편적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 준주거 지역 3종으로 구분하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 지역은 제1종, 제2종 등 세분화하여 주거지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주요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은 위험물제조·저장·취급소, 동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주거환경에 영향이 큰 시설에 대한 입지도 허용하고 있음

- 이로인해 '19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사태와 같이 주거지 인근에 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야기

[그림 1-5] 농촌지역 난개발 사회적 문제 사례

자료 : 농축유통신문 (2020.07.01.), 이은용 기자,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56)

▌농촌특화지구의 도입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시행으로 농촌공간에 흩어져 있는 시설을 이전·집적화 하여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농촌특화지구` 제도가 시행됨

○ `농촌특화지구`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지정되며, 지정지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제완화 및 사업지원을 할 예정임

-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에서 수립한 목표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하여 여건 및 자원분석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후보군으로 개략적인 위치 등을 검토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후보군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지구에 대한 계획 및 사업실행방안을 수립

[표1-2] 농촌특화지구의 개념 및 성격

구분	내용
개념	- 농촌공간의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획, 용도지역 제도 보완 - 유사한 기능 시설들을 배치, 주거·정주 여건 보호, 산업집적, 농촌다움보전 및 활용을 위해 지정
성격	- (자율적 지정)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역의 자율로 지정하는 지구 - (연계 지정 고려)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와 연계 지정 - (지구별 특성) 개별입지적토지이용을 유사한 목적의 이용용도로유형화, 집적화하여관리 ① 농촌마을보호지구 : 쾌적한 마을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마을 입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지구 ②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 토지이용을 재배치·집적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구 ③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 농촌다운(경관, 생태자원, 전통농업자원)토지이용 특성을 보전, 육성, 관리하기 위한 지구 - (규제완화 및 지원) 주거·생활·산업 등의 기능적 분리를 통한 토지이용 관리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주민 생활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들의 입지를 유도
운용	① 기본계획 : 중장기 목표·추진전략 토대, 농촌특화지구 지정·관리할 후보군 검토 ① 시행계획 : 구체적인 지구의 지정 목적, 규모 및 경제 등 계획, 실행방안 수립

○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 유형으로 분류

[표1-3] 농촌특화지구 종류 및 내용

종류	내 용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경관농업지구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그림 1-6] 농촌특화지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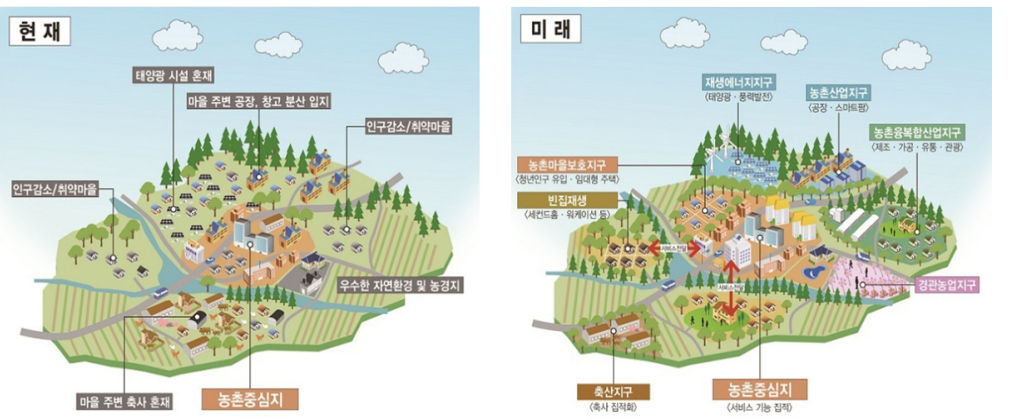

나. 연구의 목적

▌ 전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

○ 이 연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농촌특화지구 제도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24년 시행되는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 사업지원을 위한 공간적 범위의 설정과 함께 기존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와 강화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에 따라 향후 이로 인한 전북자치도 농촌공간의 개발과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첫째,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고려할 사항과 구체적인 방법 등 시군의 일선 현장에서서의 정책 적용 및 집행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

- 현재, 농림축산식품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정책설명 자료들이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에 일 정부분 계획 수립권자의 자율성을 허용

○ 둘째,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시설의 신규 입지에 대한 제한사항과 지정지구로의 시설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사업과의 연계 필요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수단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지구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특례사항 들을 검토, 농촌특화지구에 적용방안 모색

○ 이 연구는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로, 정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사례 시군의 계획 내용 분석을 통해 도내 13개 시군 및 도 차원에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계획수립 단계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가.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13개 농촌 시·군 : 농촌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대상이 되는 지자체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도농복합시의 경우 동지역은 재구조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농촌특화지구 지정 대상에는 제외되므로 본 연구과제의 검토 범위는 농촌 시·군의 읍·면지역으로 한정

▌내용적 범위

○ 농촌공간 관련 정책동향 및 제도 분석

- 농촌공간 정책 동향, 농촌재구조화법 제정·시행 관련 동향, 계획수립 시범사업 동향 등 분석
- 농촌특화지구 7개 유형별 도입 취지 및 특성, 적용 범위 검토

○ 전북자치도 농촌공간 계획 수립 관련 현황 검토

- 전북자치도 농촌공간 농촌특화지구 지정 관련 여건 및 현황 검토

○ 전북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관리방안

- 전북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지정·운영 방안 제안
-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연계사업 검토 및 발굴

나. 연구의 수행방법

▌ 농촌공간 관련 정부 정책 동향 분석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 관련 동향과 함께 농촌공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취지 및 추진 방향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함

-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 자료 및 추진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효성 제고 도모

▌ 농촌특화지구 정책 및 사례 분석

○ 농식품부의 정책 자료를 기준으로 농촌공간정책 핵심 수단인 농촌특화지구의 도입 배경과 목적, 운영의 기본 원칙 대한 내용 분석

○ 농촌공간계획 시범 시군(5개)의 계획 내용에 제시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구 결과에 반영

▌ 농촌특화지구 지정 방안 제시

○ 농촌공간계획 내에서 농촌특화지구가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을 검토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절차와 기준, 타 계획·제도와의 관계 등 지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제시

○ 7개 유형별 농촌특화지구의 도입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각 유형별 지정 기준과 방법 등 실무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방안

○ 농촌특화지구 적용과 관련하여 각 시군의 역량과 추진 체계 등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 및 추진 체계 등 전북자치도의 전반적인 정책 대응 태세 점검

○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등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 농촌특화지구 정책을 연계한 전북형 농촌특화지구 추진 방안 제시

○ 농촌특화지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향과 함께 농촌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 계획수립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 과제를 제시

[그림 1-7] 연구의 흐름 및 내용

1ST	정부 정책 동향 분석	1. 정부정책 동향 분석 2. 관련 법령 및 계획 동향 분석
2ND	농촌특화지구 정책 및 사례 분석	1. 농촌특화지구 정책 내용 분석 2. 농촌특화지구 적용 사례 분석
3RD	농촌특화지구 지정 방안	1.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와 고려 사항 2.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 및 방법
4TH	농촌특화지구 운영·관리 방향	1. 농촌특화지구 적용 여건 검토 2. 농촌특화지구 운영 방향 및 과제
5TH	전북형 농촌특화지구 적용 방안	1. 전북특별법 특례지구 검토 2. 농생명산업지구 등 유형별 연계 방안

제 2 장

농촌공간 정책 동향 분석

1. 농촌공간 정책의 변화
2. 농촌공간 정책·제도의 동향
3. 농촌공간계획 관련 동향

제2장 농촌공간 정책 동향 분석

1. 농촌공간 정책의 변화

▌농촌공간 정책의 시작

○ 우리나라 농촌공간 정책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농촌재건을 위한 1958년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대학 교육을 이수한 지도원을 통한 농경지 개간, 농사기술 개량과 함께 마을 도로·소규모 교량·제방·수리 시설 등 농업생산성 확대를 목표로 하였으며[2], 1971년부터 추진된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편입됨

○ 1962년부터 시작된 공업화 중심 경제개발의 결과로 도·농간 발전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0년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의 추진과 농업생산성 증대와 마을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됨

-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가의 지붕이 초가에서 슬레이트 및 기와지붕으로 교체되기 시작하였으며 마을 길 넓히기, 소하천 정비, 마을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어 옴

○ 1980년대에 이르러 `권역`, `생활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의 상호 관계성을 강화하는 도농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농촌공간 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음

▌생활권 계획의 수립

○ 농어촌정주생권에 대한 고민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로 계승되어 농촌 발전거점으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1·2계층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참여정부)-마을종합개발사업(이명박정부)-읍면소재지정비사업(박근혜정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박근혜정부)의 유형과 1·2계층 외 읍면지역의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소도읍육성사업(참여

2) 농식품부, 한국농정50년사, 1999

정부)-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명박정부)-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문재인정부) 유형으로 추진되어 옴

○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과 함께 농촌공간사업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20년 지방분권 실행 일환으로 마을만들기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등은 지방이양이 진행됨에 따라 현재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3개 사업이 시행 중임

[그림 2-1]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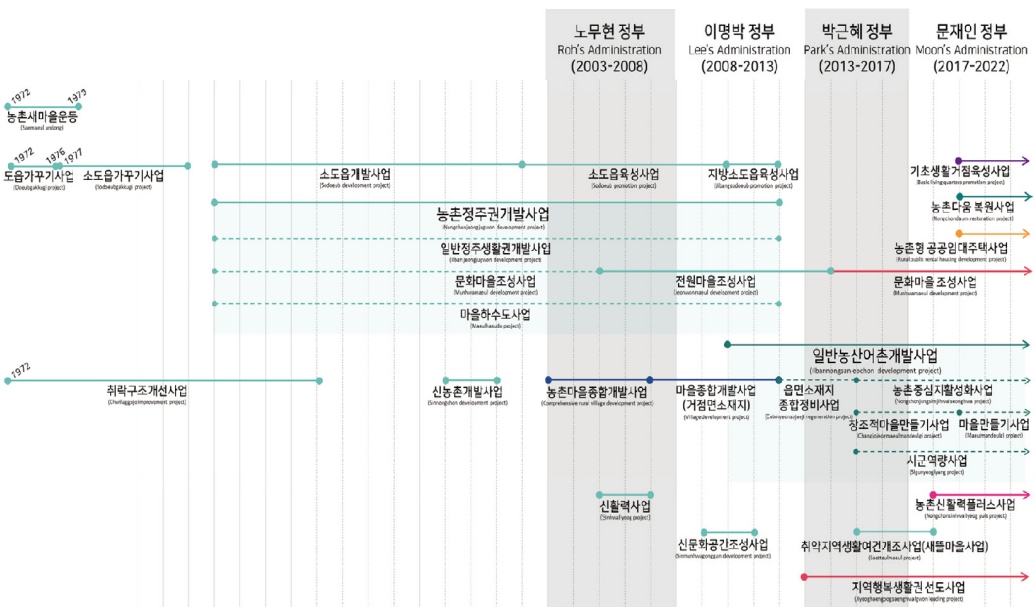

출처 : 김솔희 외(2020), 정부별 국정운영 방향과 농촌지역개발사업 변화 분석. 농촌계획학회지 26(1), p.131

▌농촌협약과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귀농·귀촌에 국민적인 농촌에서의 거주·여가와 베이비부머세데의 은퇴, 반농반X 청년 세대 증가 등 새로운 정주형태의 수요증가, 익산 장점마을 사태 발생 등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난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로 인해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되었으며, 2019년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으로 인

한 농촌공간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중앙정부-지자체간 공통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을 도입(`21년 시행사업)함

[그림 2-2] `20~`21년 농촌협약 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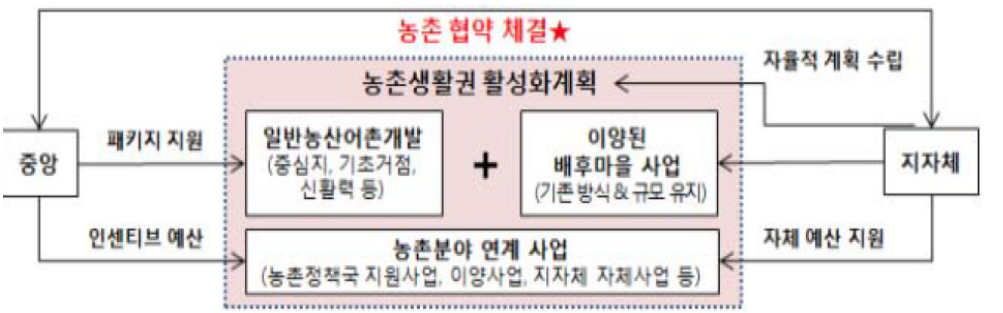

출처 : 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패러다임) `농촌협약` 본격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6.25

○ 농촌협약과 함께 도입된 농촌공간계획은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계획(20년)인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공간전략계획에서 설정한 생활권을 대상으로하는 하부 시행계획(5년)으로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체계를 구축함

[그림 2-3]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개념

○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조건은 ①농발계획 수립, ②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③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농촌협약 위원회, 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④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을 연계 추진임

○ 또한 토지이용 혼재와 난개발로 인한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개선하고자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시범지구사업)을 신설함

- 전국 축사 약 31만1천개 중 6만6천개(21%)가 농촌 주거지 내 또는 100m 이내에 위치, 농촌에 개별 입지한 유해물질배출공장은 18천개소에 이르며, 주거지 내 또는 100m 이내에 5,211개소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의 농촌재생뉴딜사업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 이전·집적화, 마을 정비, 경관 정비 등 농촌공간의 재생을 위하여 구획화(zonig)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1년 계획수립 비용 지원을 시작으로 `21년 시범지구 4개(괴산, 상주, 영동, 김해) 지구를 시작함

[그림 2-4]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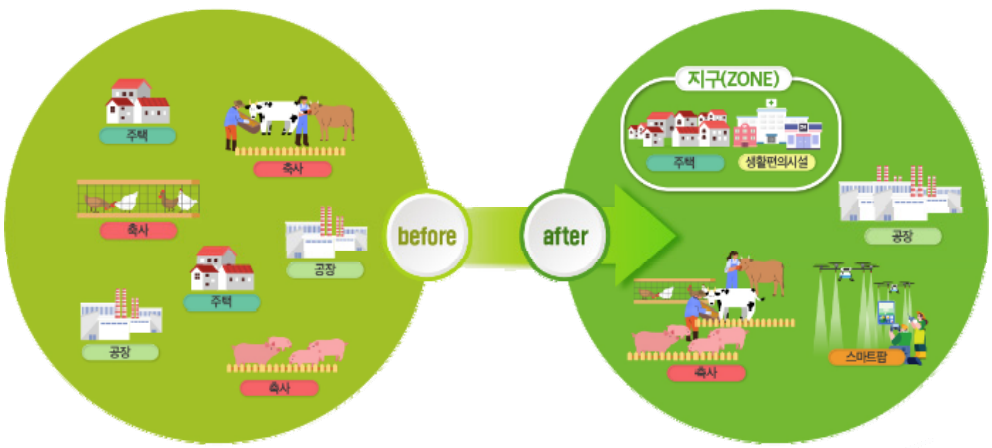

○ `23년 농촌재생뉴딜사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를 당초 개소당 10억원에서 개소당 50억~180억으로 확대하여 시행함

- `23년까지 전국 69개 지구에 걸쳐 추진중이며, `24년에도 10개소가 선정되어 계획을 수립 중

농촌공간정비사업 2024년도 사업계획

○ 사업 목적 및 방향
-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 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 지원내용 : 정비지역 내 유해성이 입증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철거·이전), 정비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 사업기간 : 5개년
○ 지원규모 : 개소당 50억원 ~ 180억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구 분			예산항목	지원한도
부문	사업	세부사업		
1 정비지구	① 정비사업	가. 철거	철거 비용 등	실소요비용
		나. 보상	부지 매입비 (지자체가 공공사업 추진시)	총사업비의 30% 이하
			지장물 보상비	실소요비용
			영업손실 보상비 * 이전시에만 지급, 폐업시 미지원	실소요비용
			폐업 보상비	미지원
		다. 빈집철거	주택 철거비 (3등급, 빈집정비시스템 등록)	5백만원/호 한도
	② 재생사업	가. 공간재생	부지정비비, 건축비 등 * 주민수요, 지역내 필요성 등 타당성 확보시 지원	실소요비용
		나.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붕건축)	9백만원/호 한도(자부담)
			30년 이상 주택 수리	실소요비용 (자부담)
			(슬레이트 지붕) 지원대상 / 자부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 - 20년이상 주택 일반 / 30 20년미만 주택 일반 / 50 (30년 이상 주택) 지원대상 / 자부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 - 일반계층 / 50 *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사업 활용	
		다. 유휴시설 정비	유휴시설 리모델링비(폐교, 빈집 등) * 지자체가 소유권 확보 또는 최소 10년간 사용계약 체결한 경우	실소요비용
2 이전지구	① 부지정비	가. 부지정비	부지정비비	실소요비용
			부지매입비(지자체가 임대형 생산시설로 활용시)	총사업비의 30% 이하
		나. 인프라조성	진입로, 배수로, 상하수도 등	실소요비용
	②생산 시설 구축		건축비, 시설·장비비	미지원
3 역량강화			주민회의 및 교육, 선진지견학, 전문가 컨설팅 등	총 사업비의 2% 이하
4 부대비용			계획수립비,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인허가 등	실소요비용

[그림 2-5] 거창군 농촌공간 정비계획

자료 : 거창군 농촌공간정비(예비)계획. 2022. 10. 거창군.

2. 농촌공간 정책·제도의 동향

가. 농촌공간 관련 정부 정책 동향

○ 2019년부터 시작된 농촌지역의 난개발확산과 저개발 심화, 농촌에 대한 시대적 수요 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됨

○ 농촌지역의 공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는 과거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령 및 계획수립 지침 등이 마련된 지금에서도 국토계획에서의 위상정립, 실행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농촌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은 "국내 농촌공간의 토지이용이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른 국토·도시계획 체계인 도시군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토 관리체계가 전 국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지만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등 관리체계 안에서 농촌지역의 느슨한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가 주요 핵심임

[그림 2-6]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국토계획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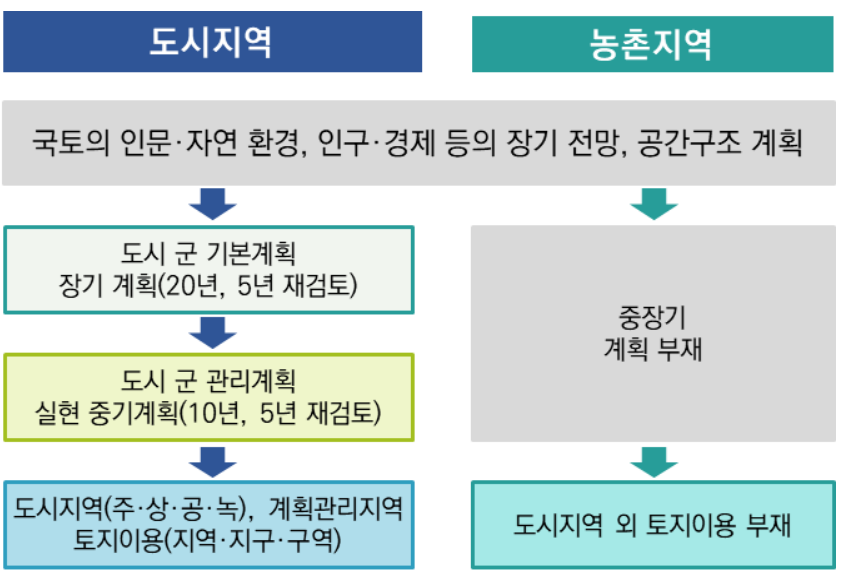

○ 기존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분석과 농촌공간계획 제도, 농촌지역의 위해시설 이전 및 집적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의 도입 등의 노력은 `23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정(2023.3.28.)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공간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 계획·관리체계의 정립과 전환이 시작됨

[그림 2-7] 농촌공간정비사업 개념도

출처 :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10문 10답, 농림축산식품부, 2023

○ 정부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생활서비스 공급부족 등 지역 간 불균형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과 생활권 구성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최근 12년간 약 11조4천억원의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음[3)]

-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도시의 생활서비스 및 정주여건에 대한 불균형 심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를 넘어선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3) 송미령외,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p.36; 농림축산식품부, 2021.

○ 농촌공간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는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사회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한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부족 등의 저개발과 농촌공간의 느슨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주거와 축사, 공장 등의 복합적인 입지로 인한 난개발임

- 농촌공간을 일반적으로 산림, 하천 등 자연공간에 주택, 상점 등 생활공간과 전, 답, 과수원, 농기계 창고, 축산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등 생산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생활시설과 생산시설이 혼용되어 있는 직주일체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빈집 증가와 사회서비스 부족에 대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복잡 다양한 건축물의 입지로 인한 읍면 중심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와 정책수단은 전무한 실정임

○ 농촌공간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따라 토지의 이용과 활용의 방법과 규제가 정해지고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느슨한 토지이용 규제로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농촌은 국토계획법상 비도시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읍지역 중심지에 한하여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표 2-1] 용도지역 현황

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17,792	16.75	27,304	25.70	49,244	46.36	11,871	11.17
전북특별자치도	885	10.88	2,574	31.67	3,987	49.05	682	8.39

나. 농촌공간 관련 법령 관련 동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3년 제정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함께 「농촌공간재구조법 시행령」이 `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됨

- 법과 시행령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관리체계의 정립과 농촌협약에 대한 내용 명시

- 계획수립 체계 : ① 국가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 기본방침),

  ② 시·군 행정구역 단위의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 제시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농촌공간 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분리 · 이전 · 재배치하고 주거 · 정주 환경, 일자리 · 경제기반, 교통 · 교육 · 문화 · 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 성격을 가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농촌공간 시행계획)으로 구성

[그림 2-8] 농촌공간 계획체계

	농촌공간 기본방침	농촌공간 기본계획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권자	농림축산식품부	시 ·군	시 ·군
수립주기	10년 단위 / 5년 재검토	10년 단위 / 5년 재검토	5년 단위
의견수렴	자치단체의 장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심 의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농촌협약으로 인한 시행계획 변경승인 시, 생략가능
승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내용 및 절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중앙정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시·군 전체를 공간범위로 설정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3단계로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수립함

○ 농촌공간 계획 중 시·군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이 주요 사업시행과 국가 기본방침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임

- 농촌공간 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은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도농복합 57개, 군 82개)으로 시·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후,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함

○ 기본계획에서는 시·군의 전체 행정구역의 현황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수립함

- 기본계획에서는 시군의 특성 분석을 통해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며 농촌특화지구, 위해시설, 정주여건·생활설비스 시설 등의 방향을 설정함

○ 시행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지정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짐

[그림 2-9] 농촌공간 계획의 내용

농촌공간 기본방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 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등 농촌 미래상
- 농촌특화지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 생활서비스시설 확충과 위해시설 정비
-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농촌주민의 정주 및 주거여건 개선
- 농촌생활서비스 공급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작성

농촌공간 기본계획

-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
- 기본계획의 방향, 목표, 인구분석
-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
-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 농촌 위해시설 현황, 이전, 철거, 정비
-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
-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본 활성화
-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전, 관리

농촌공간 시행계획

- 계획의 개요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 구상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 사업추진방식
- 투자계획
- 기대효과

○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은 중앙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기본계획은 시·군 기초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가 구성하는 광역정책심의회 심의 이후, 도지사가 승인하게 된다. 시행계획은 공청회 및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시·군 기초정책심의회 심의와 광역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도지사 승인을 통해 확정됨

[그림 2-10] 농촌공간 계획 수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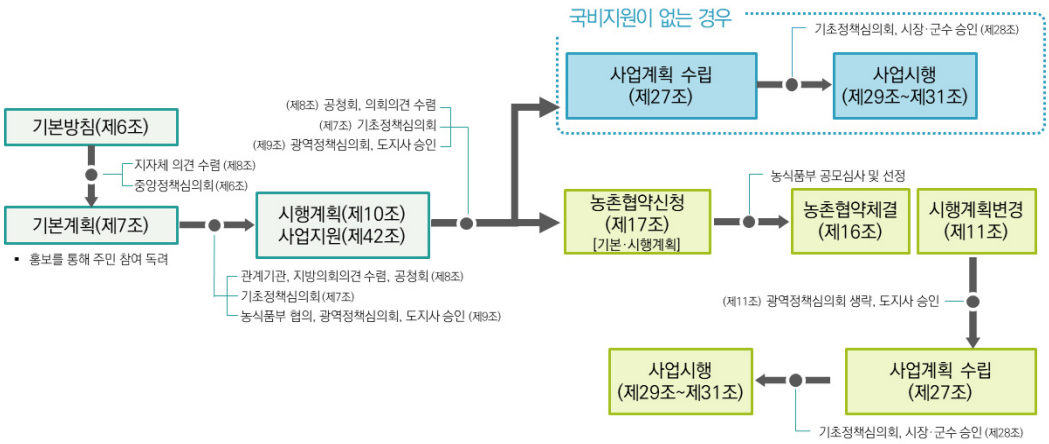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추진 체계

○ 농촌공간 계획은 크게 정책심의회, 지원기관, 현장조직·주민협의회의 3개 유형의 협력을 통해 추진됨

- 정책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광역지자체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초지자체의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가 구성되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국가 기본방침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광역 및 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함

-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제외)는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는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및 계획수립을 지원함

○ 농촌공간 계획은 그간 농촌공간계획이 하향식 또는 공모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에서의 농촌공간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향식 계획을 수립코자 함

○ 이를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다양한 현장 조직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사업 구성 시, 주민협정 및 주민제안 등의 지역 내부의 소통과 협업을 주문하고 있음

[그림 2-11] 농촌공간 계획 추진 체계의 구성

중앙부처
- ○기본방침 수립
- ○기본계획 협의
- ○농촌협약 체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시·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시·군

□전담 조직(최소 팀 단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농촌협약 체결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 ○주민 제안 검토·반영

□행정 협의회
-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계부서 협의(기획부서 총괄)

다양한 현장 조직
- ○주민 의견수렴 및 역량강화, 사업 모니터링
- ○민관 거버넌스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타사업 기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 액션그룹 등
- ※ 민간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지역 대학·연구소 등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 ○기본방침 심의
- ○농촌공간 관련 국가 주요 시책 심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 ○농촌공간 관련 지역 주요 시책 심의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 ○농촌공간 관련 지역 주요 시책 심의

지역 주민 및 주민협의회
- ○농촌공간계획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 ※기획주민협의체(기획단) 등을 구성하여 참여 활성화
- ○주민협정 체결(농촌특화지구 지정·관리 등)
- ○주민 제안(지구지정, 필요사업 제안)
- * 기존 구성된 주민협의기구와 연계 · 통합 고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 ○농촌공간정책 관련 조사·연구
- ○농촌공간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 ○현황 등 조사,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현장 전문가 교육
- ※중장기적으로 광역 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여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 육성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사업 점검·평가 지원

[그림 2-12] 농촌공간 계획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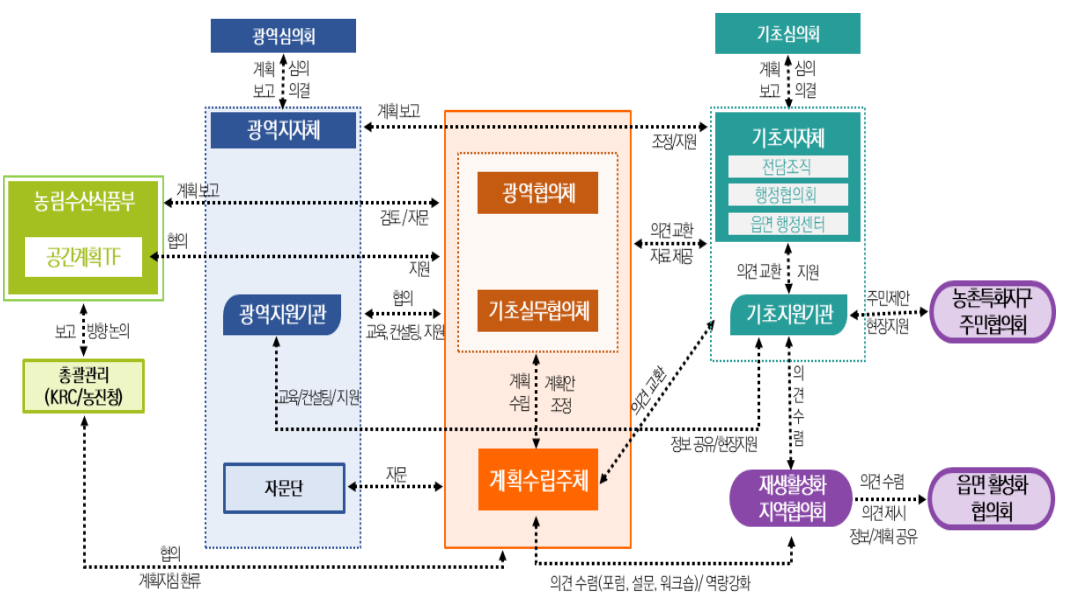

[표 2-2] 농촌공간재구조 관련 법령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

구분	수립 절차	내용
기본방침	1. 기초조사 2.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의견 청취 : 지방자치단체 3. 심의 : 중앙심의회 4. 공고 : 전년도 12월31일 까지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2. 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등 농촌 미래상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사항 5.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위해시설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6.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농촌주민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1. 수립 : 시장·군수 2. 의견 청취 : 주민, 지방의회 3. 심의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4. 검토·협의 : 시·도지사 - 농식품부 협의 4. 심의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5. 승인 : 시·도지사 6. 공고 : 시장·군수	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8.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농촌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1. 수립 : 시장·군수 2. 협의 : 농식품부(농촌특화지구) 3. 의견 청취 : 주민, 지방의회 4. 심의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5. 검토·협의 : 시·도지사 - 산업부, 환경부 협의(시·도지사) 6. 심의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7. 승인 : 시·도지사 8. 공고 : 시장·군수	1. 시행계획의 개요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주요 사업내용, 과제별 투자계획)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6.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8.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9. 사업추진 방식 10. 투자계획 11. 기대효과
사업계획	1. 수립 : 사업시행자 2. 협의 : 관계 행정기관 3. 의견 청취 : 지방의회 4. 심의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5. 승인 : 시장·군수 6. 공고 : 시장·군수 7. 보고 : 시·도지사 보고(시장·군수)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효과 9. 세부설계도서 10.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 토지 등의 명세서

▌ 시행규칙 및 지침 마련

○ `24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10호)와 함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을 제정, `24년 5월 30일 시행규칙이 시행됨

○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에 따라 `농촌위해시설`에 대한 정의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대가 제기됨에 따라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안)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됨

- 시행규칙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농촌위해시설`에 대한 정의로 시행규칙 제3조의 내용으로 악취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배출시설을 비롯하여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민원을 제기하는 유사 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정의하여 이전 및 철거·정비 대상이 된다는 것임

[그림 2-13] 축산단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반대

"축산업 규제 대상으로 여기는 '농촌재구조화법' 반대"

입력 : 2024-01-31 19:54

축산단체, 관련 의견서 제출
사실상 축사 위해시설에 포함
민원만으로 철거 등 정비 가능
"시행규칙 독소조항 삭제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남 함양에 있는 한 축사 모습. 농민신문DB

출처 : "축산업 규제 대상으로 여기는 `농촌재구조화법` 반대", 이민우 기자, 농민신문(2024.01.31.)

[표 2-3]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시행 법령 비교

입법예고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3조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악취 · 소음 · 오폐수 · 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 · 철거 · 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경관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이 농촌 경관 및 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

↓

시행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 · 철거 · 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은 제외**하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 · 처리시설 · 공공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농촌 위해시설`을 `농촌 환경관리시설`로 변경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한하여 이전·철거·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 수정·반영이 이루어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하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전문가 및 지자체,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 `24.07.29, `24.05.31 공고, 수립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게 됨

[표 2-4]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상 계획 내용

농촌재구조화 기본계획	농촌재구조화 시행계획
(1) 지역적 여건 및 특성 (2) 계획의 방향·목표와 지표 설정 (3) 인구분석 (4) 농촌공간구조 설정 및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변경 (5) 농촌토지이용 현황 및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6) 농촌 주거·정주여건 개선 (7) 악취, 환경오염물질,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여 주민 건강 또는 농촌의 환경·경관에피해를 주고 있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하 "농촌환경관리시설"이라 한다) 의현황과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 (8)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 및 배치 (9)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육성 (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11) 농촌 환경·경관의 보존·관리 (12) 계획의 실행	(1) 계획의 개요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여건) 및 전망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계획수립 방향(기본구상 포함)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 계획(투자계획 포함) (5)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 관련 내용 포함) (6)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7)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8) 기대효과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2-1-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2-1-1)

○ 현재 공고된 수립지침에 따르면 시·군은 농촌환경관리서설 및 농촌위해시설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으나, 농촌환경관리시설로 `축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 군수가 농촌위해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와 수정이 필요함

[표 2-5] 수립 지침 상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 관련 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3-2-2. 기초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한다. (9) 시·군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 현황 * 개별입지공장, 폐기물 처리시설, 축사, 태양광시설 등 농촌의 환경·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설 ** 농촌환경관리시설 중 시장·군수가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에서의 공장, 창고, 축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토지이용에 대한 농촌지역에서의 느슨한 규제로 인해 발상한 난개발을 정비하여 정주여건과 생산공간으로서의 기능, 농촌공간의 쾌적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농촌주민들에게는 일정부분 토지이용의 규제강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규칙 및 수립 지침 등 관련 법령체계의 정리가 필요함

3. 농촌공간계획 관련 동향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방침

○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4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에 따라 농촌공간 기본방침 발표

- 기본방침의 시간적 범위는 2024년~2033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139개 시·군

○ 기본방침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 토지 이용 및 주거, 생활 서비스, 일자리·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현황 진단과 농촌의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 새로운 농촌에 대한 비전 및 전략, 방향을 비롯하여 농촌특화지구, 농촌공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

[표 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농촌 현황 진단 내용

1. 인구	○ 도시 인구집중, 고령화 등에 따른 농촌소멸 및 공동화 가능성 증대 - 농촌인구비율 1970년 59%, 2022년 18.6%로 감소 - 면 지역과 인구 규모가 작은 읍지역 주로 감소 - 고령인구 비율 `00년 14.7%, `22년 25%로 증가 - 면 지역 고령화 `00년 18.1%, `22년 32.4%로 심화
2. 토지 이용 및 주거	○ 농업 외 토지 개발·이용이 증가하나, 비계획적 입지 등 난개발 발생 * 익산 장점마을 : 마을 인접지(500m)에 비료공장 입지, 주민 22명 암발생 - 개발행위허가 증가, 관리·농림지역 높은 비중 차지 - 농·산지 전용면적의 90%이상 비농업 용도 전용 - 아파트, 다세대주택 증가, 빈집·노후주택 증가 - 주거지 500m내 악취·소음·분진 등 발생시설 과반수 분포
3. 생활 서비스	○ 인구감소는 생활 서비스 인프라 감소로 이어지고, 일생생활 불편은 다시 인구 유입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발생 - 1천명 이하 읍·면 대부분 서비스 시설 부재 - 읍·면지역 동지역 대비 의료·보육·문화시설까지 접근성 불리 - 농촌 주민 정주 만족도(5.6점), 도시(6.3)보다 낮음
4. 일자리·경제활동 여건	○ 쾌적한 환경, 새로운 기회 발견 등으로 농촌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기회 제공이 관건 * 저임금 일자리, 미스매칭 등으로 경제·일자리 분야 주민 만족도 저조(5.2/10점) - 농촌지역 신규창업 지속 증가 (`10)14.3%→(`15)17.1%→(`21)20.1% - 농가인구·경지면적·청년 경영자 지속감소, 휴경농지·유경류 지속 증가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종사자 및 매출액 지속 증가, 첨단산업, 스마트팜 증가

○ 농촌공간 기본방침은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

[그림 2-14]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방침의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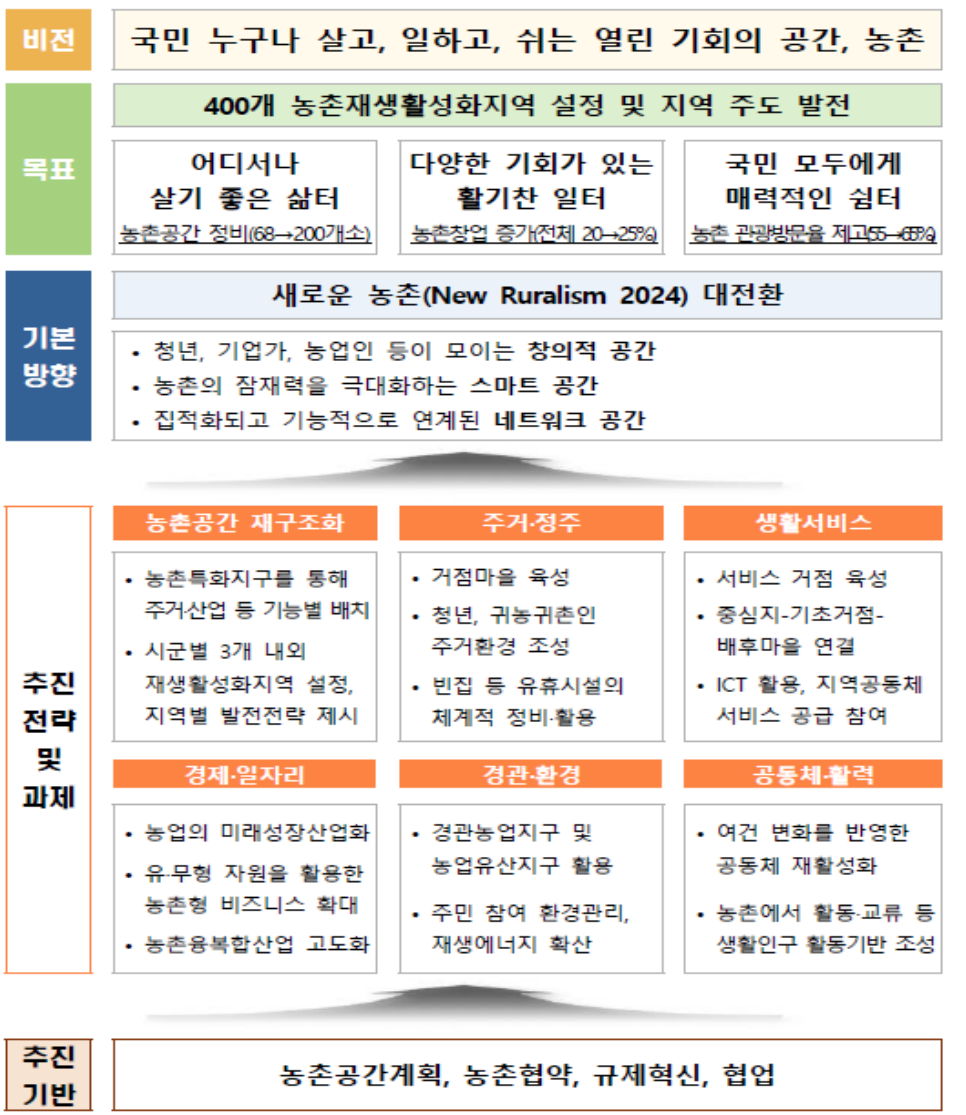

○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

-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

[그림 2-15] 농촌공간 기본방침 추진전략 1. 생활공간 재구조화 내용

○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하여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

-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 구축

○ 생활서비스 거점 육성과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 확산

-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서비스 공급

- 행정·복지·교육·문화 등 시설을 복합단지화하여 주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에 맞춰 입지 규제 완화 등 기존 제도 정비
- 경관·생태·문화 등 농업 이외에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기업가 대상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 구축
- 기존 개별업체 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 단위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등까지 정책 지원 대상 확대

○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 보전 및 매력성 제고

-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 구축
-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하여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 생활인구 활동 기반 확충 등 농촌 활력 제고

- 인구감소·공동화 등 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리 단위에 한정하지 않는 유연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 지금까지 귀농·귀촌인 거주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4도 3촌, 워케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까지 정책 범위 확대
-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체류·교류를 희망하는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 조성

○ 기본방침에서의 6개 추진전략 중 4개전략(①농촌공간 재구조화 ② 농촌 주거·정주 여건 개선, ⑤ 농촌의 고유한 가치 보전)을 실행방안으로 설정, 향후 10년간의 농촌공간 구상에 농촌특화지구를 적극 추진·활용할 계획으로 특화지구를 활용한 전북자치도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이 필요함

-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인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 지원은 '23년 68개소에서 '33년 200개소로 확대,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빈집 재생 실행을 위한 사업구상 필요
- 청년농의 축산지구 및 농촌산업지구를 활용한 친환경·스마트 축산, 스마트 농업, 수직농장 창업 유도
- 시·군별 1개 이상의 경관농업·농업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대상 지역에 대한 검토와 농촌 경관의 6차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

[표 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내 농촌특화지구 관련 내용

추진전략	과제 및 내용
1.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특화지구**) 농촌공간을 주거, 축산, 공장, 융복합산업 등 7개 기능별로 구획·집적화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육성 기반 강화 ㅇ 규제 완화(농·산지 등), 관련 사업 집중 지원으로 시설 집적 유도
2.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 지원 : ('23) 68개소 → ('33) 200 □ (기존 마을) 농촌 인구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여 장래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들에 대해 인프라 투자 강화 ㅇ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유해시설 입지를 예방하고, 보건·교육 등 주민생활 필수 시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입 활성화 ㅇ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재생 지원
4.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신규창업 중 농촌지역 비중 : ('21) 20% → ('33) 25% □ (농업)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로 수급불안·고령화 대응 및 혁신 동력 제고 ㅇ 청년농의 진입·성장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 등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여 농업 생산 디지털 전환 - **축산지구** 조성 및 시설 개선 등 사업 연계로 친환경·스마트 축산 육성 ㅇ 농업기술 혁신에 따른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에 맞춰 기존 제도 정비(입지규제 완화* 등), 특례 제공 등 지원 강화 * 스마트농업지구(스마트농업법), **농촌산업지구** 등을 활용하여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5. 농촌 경관 및 환경의 보존·관리	□ (경관) **경관농업지구**를 활용하여 동종·유사 경관작물 집단화 유도 ㅇ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 원칙을 마을 정비, 신축시설 건립 시 적용 * 주민 의견수렴, 자율 규제 등을 거쳐 건물 형태·소재, 지붕 색깔 등 통일 □ (농업유산)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 외에 지역 차원의 특색있는 농업유산을 신규 발굴하고, **농업유산지구**를 통해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ㅇ 조사, 보전·관리, 관광 활용 등 지역주민·청년의 전 주기 참여체계 구축 □ (생태·환경) 주민 참여 생태·환경 관리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확산 촉진 ㅇ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대상·활동 확대·개편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주민제안 등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고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 유도 ㅇ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시설 지원으로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2024.04. 농림축산식품부.

나. 관련 정책 동향

▌ 윤석열 정부 제 27차 민생토론회(`24.7.17)

○ 농식품부는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을 주제로 하여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는 만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임을 발표함

○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지구를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 권한을 확대, 현장 수요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수직농장·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가와 청년·혁신기업 등의 유입을 촉진을 유도할 계획임

○ 민생토론회의 주요 논의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농촌공간 성공사례로 이끌어 갈 계획으로 스마트 농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농의 창업활성화에 대한 모색이 정부정책 지원의 논거가 될것으로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모색이 필요함

▌ 규제혁신전략회의

○ 국무총리실은 중앙부처와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최근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농촌공간에서의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임

[표 2-8]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실) 중 농촌관련 내용

농림지역에서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의 입지 허용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 상한 삭제
인구감소지역 내 특례지구를 지정을 통해 농지규제 완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
작물(농지)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허용
농촌 체류형쉼터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인정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중복지정 현황을 조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마을주민, 방문객 등 일반인 대상 농수산물 등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가능
농지전용허가 권한 조정 : 시장·군수 3천㎡미만→5천㎡미만으로 확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스마트육성지구에 수직농장 설치시 농지전용 없이 설치

다. 농촌공간 계획 수립 동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역

○ 농촌공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 139개 시군 중,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계약을 진행중인 지자체는 35개로 시범계획 수립 대상인 5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이후 불과 30개 지자체에서 농촌공간 및 농촌특화지구 관련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래 표는 `24년 11월 기준으로 조사된 내용으로 농촌공간계획의 일반적 과업기간은 12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25년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일 것임

○ 과업의 구성 내용에 따라 ①기본계획 수립, ②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 ③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④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농촌특화지구와 관련하여 ① 유형은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선정, ② 유형은 농촌특화지구 사업발굴, ③·④ 유형은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수행함

[표 2-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중인 지역

지역	시·군	구성	수립 시기
전북(6)	순창(시범)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23.11
	고창	기본계획	`24.07
	남원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	`24.08
	장수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	`24.09
	진안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	`24.10
	임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11
강원(3)	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08
	평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09
	삼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10
경남(7)	함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05
	거창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	`24.08
	양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08
	합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09
	의령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10
	함안	기본계획	`24.11
	산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12

지역	시·군	구성	수립 시기
경북(3)	문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07
	성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10
	상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12
전남(7)	나주(시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3.12
	신안(시범)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23.12
	장흥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	`24.05
	곡성	기본계획	`24.08
	해남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24.09
	함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09
	여수	기본계획	`24.12
충남(3)	서산	기본계획	`24.10
	부여(시범)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24.01
	당진(시범)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23.12
충북(6)	음성	기본계획	`24.08
	영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09
	진천	기본계획	`24.09
	옥천	기본계획 농촌특화지구 발굴	`24.11.
	청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12
	제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4.11

자료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입찰공고 내용을 발췌, 정리함

○ 전북자치도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순창군을 비롯,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등 6개 시군에서 기본계획수립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준비중에 있음

- 전북자치도의 수립대상 시군 중 46%(6/13, 수립중/수립대상)가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중으로, 충북 55%(6/11), 경남 39%(7/18), 전남 33%(7/21), 충남·강원 20%(3/15), 경기 0%(0/15)

-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경기도에서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제3장

농촌특화지구 정책 및 사례 분석

1. 농촌특화지구의 도입 배경 및 목적
2. 농촌특화지구의 개념과 운영 방향
3. 농촌특화지구 사례 분석

제3장 농촌특화지구 정책 및 사례 분석

1. 농촌특화지구의 도입 배경 및 목적

가. 농촌특화지구의 도입 배경

○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도입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과거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령 및 계획수립 지침 등이 마련된 지금에서도 국토계획에서의 위상정립, 실행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국내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0년 이후 다수의 심화 연구과정을 거쳐 현재 관련 법령 및 수립지침 수립을 통한 농촌특화지구의 도입이 이루어짐

▌농촌특화지구 관련 선행 연구

○ (심재헌 외, 2019)[4]는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등에 따라 관리되는 농촌 내 용도지역이 도시에 비해 치밀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현행 용도지역 구분 체계인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을 중심(도시)지역과 배후(농촌)지역 중심의 용도지역제도의 개선(안)을 제안

- 또한, 용도지역 체계변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전 연구 부족 등 사회적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조례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농촌에 맞게 세분·신설하는 것을 제안

- 농촌 재활성화를 위한 농촌 재생지구, 전통유산보호를 위한 마을보호지구, 공익형 친환경농업지구, 농업의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산업지구,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쉼터를 담당하는 농촌관광지구, 악취 및 전염병 방지를 위한 축산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제안

○ (김승종 외, 2020)[5]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완화로 인한 공장, 축사 및 부속

4) 심재헌, 송미령, 한이철, 서형주. (2019.12,).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국토연구원. (2020).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시설 등의 입지로 인한 토지이용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수단인 용도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지구(취락지구) 등이 관리수단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을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 또한 농촌형 용도지구로 마을보호지구(농어촌정비법 개정), 농촌경관지구(마을경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어촌정비법 개정), 친환경농업지구(농지법 개정)를 제안하였으며, 친환경축산지구, 농산업진흥지구, 신재생에너지지구 등의 유형을 검토함

- 친환경축산지구의 경우, 인근 주민 반대 우려 및 가축전염병 발생시 집단폐사 우려, 농산업진흥지구는 농산업시설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지가상승에 따른 입지 가능성 저하 우려, 신재생에너지지구는 토지소유자 및 인근지역 주민 반대, 특혜시비 우려로 인해 지원사업 등을 통한 시설유도 필요

○ (송미령 외, 2020)[6]는 농촌 토지이용제도 정비 방안으로 ① 「국토계획법」개정(관리지역의 규제강화 및 세분화와 자연취락지구의 개편 또는 신규 용도지구 신설), ② 신규 법률 도입·적용을 통한 도시지역과 이원화된 토지이용 관리체계마련, ③ 조례 기반 지자체별 농촌 토지 용도 지정 등을 제안함

[표 3-1] 선행연구 농촌특화지구 관련 개념 및 유형

구 분	개념
심재헌 외 (농촌형 용도지구)	농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전·정비 및 개발·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는 수단 (시·도 조례를 통한 농촌형 용도지구 세분·신설)
김승종 외 (농촌형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나 밀도를 규제함으로써 토지이용 관리 (관계 법령 개정 및 도시·군계획 조례를 통한 용도지구 신설)
송미령 외 (농촌계획 지구)	합리적인 토지이용 관리 및 계획시설 배치, 주민협정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시군 조례를 통한 용도지구 신설
여혜진 외	규제형 지구의 역할을 가지며, 용도 및 거리 규제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의 분리 지구-완충구역으로 구성되는 이중적 공간구조 완충구역의 조건부 입지허용 및 최소 이격거리를 통한 완충구역 내 주거 정주성 보호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6) 송미령, 성주인, 심재헌, 한이철, 서형주, 민경찬. (2020).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입법 검토 과정과 함께 (여혜진&모용원, 2022)[7]은 기존 연구들의 수렴과 GIS입지평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마을의 생활·생산·자연공간이 혼합되고 일체화된 여건에서 혼재하는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 기본개념을 제시함

- 여혜진 외는 농촌특화지구의 대해 ① 규제형 지구의 역할을 가지며, 용도 및 거리 규제, ②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의 분리, ③ 지구-완충구역으로 구성되는 이중적 공간구조, ④ 완충구역의 조건부 입지허용 및 최소 이격거리를 통한 완충구역 내 주거 정주성 보호 4가지의 개념을 정리함

[그림 3-1] 지구 및 완충구역 관리 개념도(여혜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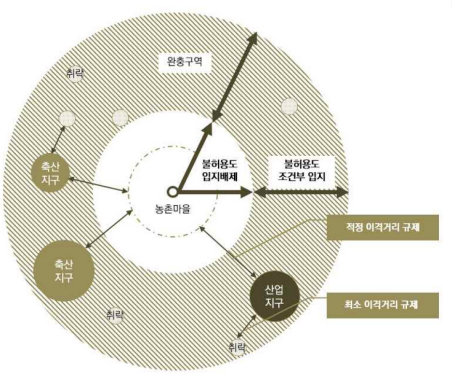

[그림 3-2] 토지이용 입지적정화(여혜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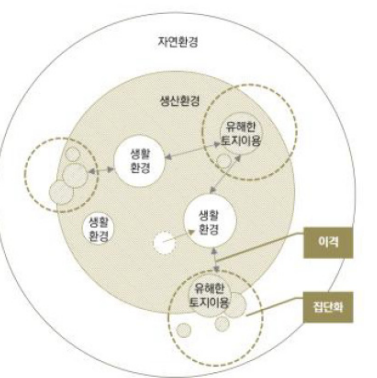

나. 농촌특화지구의 목적

○ 현재 농촌마을은 주거지와 공업, 축산업을 비롯 각종 시설들이 난립하고 있어 농촌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농촌공간을 전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주거지의 보호와 농촌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화를 목적으로 함

-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법」 등 그간 농촌공간의 활용 및 보전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농촌공간의 개발과 보전에 소극적으로 규제와 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용도혼재를 야기함에 따른 보완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에 혼재되어 있는 시설들을 각 특화지구로 이전·집적화를 통해 농촌마을 거주민들의 거주성을 확보하고 집적화된 시설들에 정책적 지원 및 규모화를 통한 산업화를 도모하고자 함

7) 여혜진, 모용원. (2022.10.), 농촌 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의 거주성 확보와 농촌환경 보호를 위해 각 특화지구의 지정은 기존 마을과의 지역 자연자원과의 이격거리를 바탕으로 한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규제성 토지이용 관리제도임

○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개발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정 또는 주민자치회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향식 토지이용 관리 제도임

- 시·군 자체적인 지구지정을 추진할 수 있으나,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은 토지이용 규제를 통한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농촌다움을 복원하고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지구지정이 필요한 지역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동의가 필수적임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각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구·지정 등과 연계를 통한 규제완화 및 사업지원을 하기 위한 농촌공간 활용의 공간적 범위설정의 제안적 성격을 가짐

- 농촌특화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사업 및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관련 계획 및 법령의 개정 및 의제화 등을 통해 다 부처 정책사업에 적용 가능

○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농촌특화지구는 현재 토지이용 규제의 보완, 농촌의 거주성 확보를 위한 규제, 주민합의를 통한 상향식, 향후 농촌공간 정책 추진을 위한 범위의 설정 등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

[그림 3-3] 농촌특화지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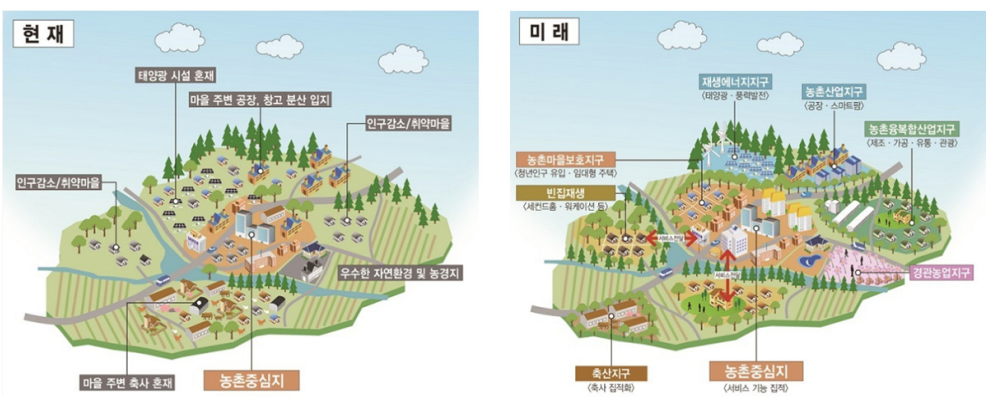

2. 농촌특화지구의 개념과 운영 방향

가. 농촌특화지구의 정의

○ 농촌특화지구의 정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2조제10호에 의거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임

○ 기본방침에서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고 기능을 재생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기능별로 구획화(zoning)하는 것(농림축산식품부, 2024)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3-2] 농촌특화지구 정의 및 개념

법 령	정의 및 개념
법 제2조(정의)	10.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법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본방침	(개념)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고 기능을 재생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기능별로 구획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개념)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자료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농식품부, 20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 농촌특화지구는 ①농촌마을보호지구, ②농촌산업지구, ③축산지구, ④농촌융복합산업지구, ⑤재생에너지지구, ⑥경관농업지구, ⑦농업유산지구의 7개 유형으로 구성

- 농촌특화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첩하여 지정하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 지정(농촌공간 전체가 농촌특화지구로 채워지지는 않음)(농림축산식품부, 2024)

[표 3-3] 농촌특화지구 종류 및 정의

구 분	정 의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경관농업지구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그림 3-4] 농촌특화지구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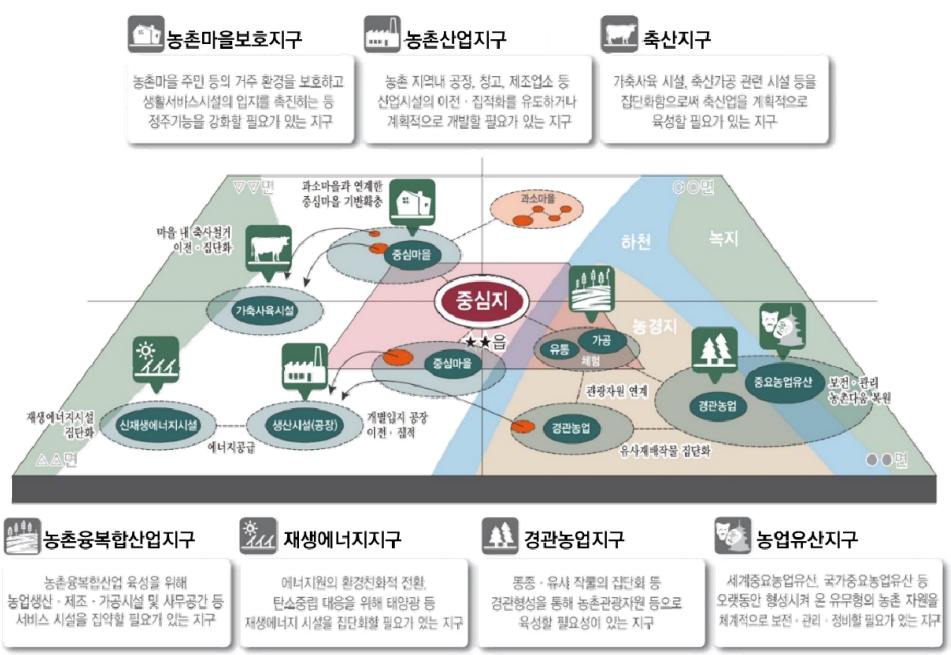

나. 농촌특화지구의 운영 방향

○ 농촌특화지구는 크게 농촌마을 정주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장, 축사 등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의 생산과 관련된 시설의 집단화를 위한 `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 지구`, 농촌의 경관과 농업유산 보호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정주여건 개선, 시설의 집단화, 경관·유산 보호의 3가지 성격을 가짐

[표 3-4] 농촌특화지구 운영방향

종류	주요 내용
농촌마을보호지구	(목 적) 거주 환경 보호 및 생활서비스시설 입지 촉진 등 농촌마을 정주기능 강화 (지정범위) 난개발이 문제 되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보호가 필요한 마을 경계에서 일정 거리의 완충영역을 설정하여 농촌주민의 거주 여건 개선 (성 격) 거주 환경 보호를 위해 공장, 축사 등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①규제 측면과 생활서비스시설 지원 등 ②사업 시행 측면을 동시에 가짐 ① (규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가칭 '보전취락지구' 신설계획)에 의제하여 정주여건 침해하는 건축 행위 제한* 등 *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등 ②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집중 지원으로 지구내 생활여건 개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성 격) 계획입지·시설집적을 위한 사업 시행적 성격을 가지며 지구별 관련 시설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입지, 규모 등 자율적으로 설정 (입지시설) ① 농촌산업 :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 ② 축산 :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 ③ 농촌융복합산업 :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서비스 시설 ④ 재생에너지 : 태양광 등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시설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성격) 농산지 경관보전, 농업 유산보호가 필요한 입지, 규모 등을 지정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 토지자원을 관리하는 성격 (경관)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해 농촌관광자원 등 육성 (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

자료 : 자자체 공무원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10문 10답. (2024). 농림축산식품부.

3. 농촌특화지구 사례 분석

가. 농촌공간계획 및 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사례 검토

▌사례 검토 개요

○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시행에 앞서 `23년 9월 시범계획 수립 시군을 선정하여 농식품부 TF실무지원단, 지자체, 용역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음

- 선정 시군은 순창군, 나주시, 신안군, 부여군, 당진시 5개 지자체로 `23년 11월 계획수립을 시작하여, 현재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음

[표 3-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중인 지역

시·군	계획수립 내용	수립 시작시기	추정가격(억원)
순창군(전북)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23.11	3.70
나주시(전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3.12	4.33
신안군(전남)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23.12	4.36
부여군(충남)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24.01	4.55
당진시(충남)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23.12	4.55

자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발췌, 정리함

○ 4장에서는 중간보고회 기준, 시범 시군의 계획 내용을 살펴보고 농촌특화지구 지정의 흐름과 지표의 적용, 사업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할 지구들에 있어 고려 필요 사항에 대한 제안과 방법론 공유를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정의 논리 구조를 살펴보고자함

○ 이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있어 기본계획의 방향설정과의 정합성, 특화지구와 사업과의 연계·실행방안 등을 분석하여 특화지구 지정에 대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계획수립팀(용역사), 중간조직 등의 향후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 사업 구성에 대한 단초들을 제공하자고 함

▌순창군 농촌특화지구 도출

○ 농촌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는 ① 현황 및 법령 분석, ② 특화지구 우선순위 선정, ③

특화지구 방향성 설정, ④ 분석 항목·지표 설정, ⑤ 면단위 공간재편 방향 및 계획 수립 ⑥ 지표에 따른 후보지역 검토 ⑦ 후보지역 현황 및 특성 분석 ⑧ 주요 시설 및 연계·예정 사업 검토, ⑨ 후보지역 내 농촌특화지구 경계설정 및 사업구상의 9개 단계로 이루어짐

○ 순창군의 경우, 수립지침 [별표3]에 따른 공간데이터를 활용한 격자분석을 활용하지 않고, 분석에 필요한 지표들을 설정하여 현황자료를 활용,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도출함

○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을 위한 지표로서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중심 거점마을, 장래 정주공간 역할 수행 예상, 농촌마을 가치·자산을 항목으로 설정, 인구, 생산가능인구(중위값), 미래 인구증가 여부 등을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주택단지의 유·무와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였음

○ 또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에 순창10경, 주요관광지 및 문화재 등을 활용하였으며 축산지구 설정을 위해 농촌환경관리시설 `개수` 분포 값이 아닌, 축사 `규모`(사육두수, 상위 30%이상)를 지표로 활용함

[표 3-6] 순창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선정기준

농촌특화지구 유형	분석 항목 및 지표	세부 지표
농촌마을 보호지구	중심지 거점마을	읍·면소재지 여부, 생활서비스 시설 집중
	장래 정주공간 역할 수행 예상	인구(중위값), 생산가능인구(중위값), 미래 인구증가
	농촌마을 가치·자산	순창10경, 주요관광지, 문화재(문화·자연·무형), 주택단지 보유·예정
경관농업지구	농업·농촌경관 자원화	경관보전직불지역, 환경적특성(산림, 수자원)
농촌산업지구	개별공장, 창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업관련 제조·가공·체험	체험휴양마을, 6차산업인증, 연구·교육, 가공·유통
	농공단지 수	
	지역특구 수	
재생에너지지구	재생에너지관련시설	태양광사업자 현황(개소)
축산지구	퇴비공장	
	축사 규모 상위지역(30%이상)	돈사, 우사, 계사, 주거인접(300m)

[표 3-7] 순창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및 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

읍면단위 공간재편 방향 및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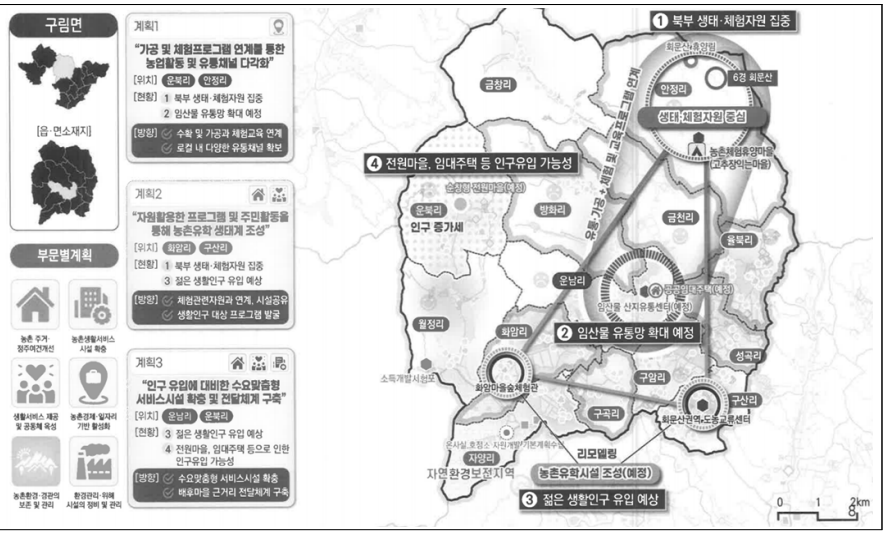

▽

지표에 따른 후보지역 검토

법정리	1. 농촌마을 보호지구									6. 경관농업지구			2 농촌산업지구		
	1-1 중심지·거점마을		1-2 장래 정주공간 역할 수행 예상			1-3 농촌마을 가치·자산				농업·농촌경관 자원화			개별공장	*참고	치유
	읍·면 소재지	생활 서비스 시설 집중	인구 중위값 이상 (119명)	생산가능인구 비율 중위값 이상 (50%)	-미래 예상- 인구증가 여부	순창 10경	주요 관광지	문화재 (문화·자연·무형 유산)	주택단지 보유/예정 (전원·임대)	경관보전 직불지역	환경적특성 산림	수자원			
운남리	●	●	372 ●	41.9%	-	-	-	-	-	공공임대주택 예정	-	-	치천	-	25	
구암리	-	-	165 ●	54.5%	●	-	-	-	-	-	-	-	-	1 임대주택	3	

▽

후보지역 현황 및 공간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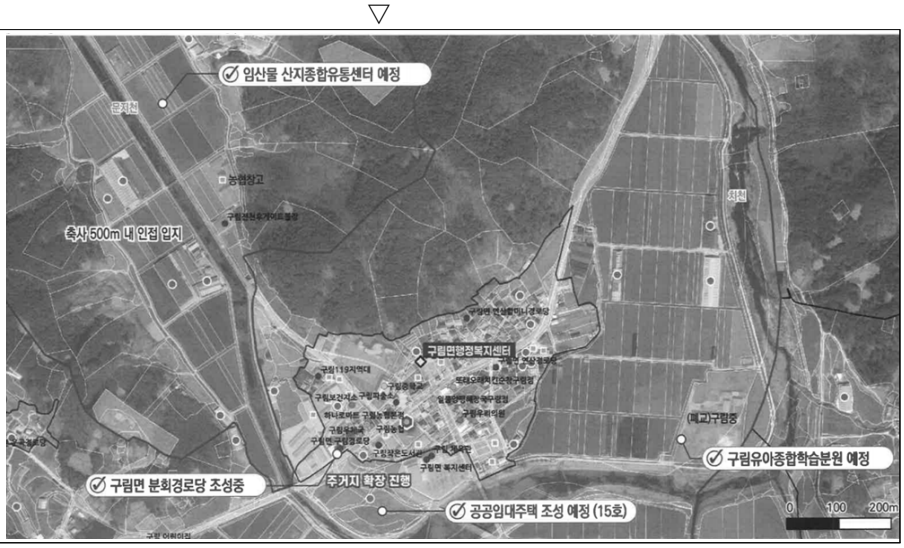

▽

▽

후보지역 주요시설 및 예정 ·연계 사업 검토	

▽

특화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구역계 설정	

자료 : 순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표 3-8] 순창군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사업구성

유형	목표	사업	비고
□ 후보지 1			
농촌마을보호지구 (362,700㎡)	기존 정주공간 생활여건 개선	(HW)휴업·폐업 축사 철거 (HW)빈집정비를 통한 귀농귀촌인 임시주거 (HW)농후주택 리모델링 (HW)가로환경정비	거점
	미활용 공간 재생	(HW)(구)구림시장 공간 재생 (SW)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귀농귀촌귀향인 교류) (SW)복합공간활용(농업생산물 플리마켓·소규모행사)	
	전달서비스 기능 보완	(HW)서비스전달시설 보완(공유주방, 세탁실) (SW)주민 코디네이터 양성	
	환경관리시설 이격	(HW)축사 이전 및 철거(지구내 4, 지구외3)	
	정주환경 제공	(HW)하천숲 산책로	공공임대주택 조성 예정
경관농업지구 (52,300㎡)	정주환경 가치 향상	(HW)녹비작물경작, 농업체험학습장 -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연계 - 기존 경작확동 및 경관농업 병행	구림유아종합 학습분원 예정
농촌산업지구 (37,700㎡)	유통·가공/창고 등 농촌산업시설 집적화	(HW)임산물 전처리시설 (SW)친환경 임산물 인증 및 브랜딩	임산물 산지종합유통 센터 예정
□ 후보지 2			
농촌마을보호지구 (381,600㎡)	배후마을 소거점 조성 및 마을 풍경 자원화	(HW)주민소통회관(보건진료소 리모델링) - 소규모 마을 분산 기능 집적화 (SW)배후마을 주민 협력 프로그램 - 마을발전 및 방문객 교류활동, 마을풍경 가꾸기 (HW)마을모정 등 외부공간 정비	거점
	체험·레저 시설 및 프로그램 리뉴얼	(HW)충댕이마을 정비 지원 - 트랜드 대응 특화사업, 특산품, 먹거리 개발지원	기존 농촌체험휴양 마을 연계
	마을-자원 간 단절 개선	(HW)전봉준 풍결길 - 가로수·관목 활용 유도식재, 보행여건 개선 - 주민참여 풍경길 가꾸기 프로그램	
	노후 시설 재생 및 활용 증진	(HW)농촌 웨케이션(녹두장군전봉준관 리모델링) (HW)방문객-주민 교류프로그램 - 문화해설자, 특산물 홍보 및 판매연계	노후 공공시설
경관농업지구 (25,900㎡)	공간 연계 및 농촌경관 가치 향상	(HW)녹비작물 경작 - 동선 연계성 확보, 기존 경작·경관농업 병행	
농촌융복합산업지구 (33,860㎡)	6차산업 경영체 육성	(HW)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부지 임대 (SW)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교류 프로그램	6차산업 인증 2개소 연계

자료 :순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나주시 농촌특화지구 도출

○ 나주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법령 및 지침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수행하였으며, [별첨3]의 격자 공간분석은 수행하지 아니함

○ 지정 프로세스는 ①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적용기준 설정, ② 각 특화지구 별 운영방향 및 유형 분류 ③ 유형별 지정기준 설정 ④ 나주시 전체 지역의 유형별 후보군 도출, ⑤ 후보군 공간적 현황 분석, ⑥ 농촌특화지구 경계설정 및 사업구상 순서임

○ 후보군 도출을 기준은 기본계획수립 지침을 적용하였으며, 특화지구 별 유형화를 통해 유형에 따른 지정방향과 기준을 선정함

[표 3-9] 나주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선정기준

기준 유형	유형	지정기준
농촌마을보호지구	비시가화지역(중심지·기초거점)	1) 중심지(1~2계층), 기초거점(3~4) 읍면소재지 2) 도지지역 미지정 소재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위치 마을
	배후마을(연계형, 지속형)	1) 연계형 : 농촌특화지구 연계를 통해 주민 등의 거주환경 보호, 정주기능 강화 지역 2) 지속형 : 주민 거주, 40호 이상 주택 밀집
	신규마을	1) 나주시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조성한 신규마을
농촌산업지구	계획관리지역 유형	1) 계획관리지역, 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이격된 공간에 한하여 지정
	산업 및 농공단지 인접 부지 유형	1) 산업·농공단지 조성(예정)지 인근 2) 산단 및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화, 인프라 공유
	읍·면 소재지 인근 유형	1) 읍면소재지 반경 300m이상 이격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2) 직주 통합거점 형성으로 읍면소재지 활력 증가
	최근 5년 개별입지공장 입지 비중 높은 지역	1) 최근 5년간 개별 공장 입지 비중 10% 이상 읍면 2) 개별 공장 입지로 난개발 우려되는 지역
축산지구	단기형(우사, 계사, 기타 축사)	1) 나주시 조례 이격거리 반영 이전지구 조성 2) 마을 내 위치한 소규모 축사시설 이전·집적화 3) 일구밀도가 낮고 경지정리 대규모 농지 분포, 기존 시설 이전 고려

기준 유형	유형	지정기준
	장기형(돈사)	1) 돈사 집중 분포구역 지정,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악취 저감시설 지원(이전지구 확보 불가 시)
	장기형(빛가람동 인근)	1) 빛가람동 반경 2km내 위치 축사 규모 확대 제한, 이전지구 집적화 유도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농촌융복합 전략 육성 지역	1) 나주시 스마트팜 전략 유성 지역 2) 나주시 6차산업 인증 사업자 전략 유치 지역 3) 농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정 지역 4) 나주시 융복합산업 전략 육성 지역
	경관농업지구 연계형	1) 경관작물 활용 제품 가공, 유통, 관광 등 연계를 위한 인접공간 또는 공간 중첩
	농업유산지구 연계형	1) 농업유산 활용, 체험, 체류형 관광 등 관련사업 연계를 위한 인접공간 또는 공간 중첩
재생에너지지구	나주시 RE100 에너지 정책사업	1) 관련 조례 반영 에너지 정책 수립중 2) 친환경 발전 시설 밀집 조성 예정 지역
	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계획	1) 한국농어촌공사 민간투자 사업
	한전 판매망 우선 연결 지역	1) 판매망 형성 지역 주변
경관농업지구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역	1) 최소 5년 이상 장기 운영 지구
	농촌특화지구 완충지역	1) 농촌마을보호지구 인접 공간 활용 가치 증진 2) 농촌산업지구 인접 방풍림 등 완충구역 형성
농업유산지구	국가유산 지정 기준	1) 국가유산 지정기준 6개 중 1개 이상 충족

자료 :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 나주시는 설정된 기준에 따라 후보군들의 상호교차로 유형별 연계방안과 특화지구 별 제공가능한 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특화지구지정으로 인한 규제추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감감소와 수요확대를 도모함

[표 3-10] 나주시 농촌특화지구 지정 인센티브(안)

구 분	특화지구 지정 인센티브(안)
농촌마을보호지구	에너지 자립마을, 귀촌인 마을 지원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우선 추진
농촌산업지구	농공단지 입주기업 동일 혜택 제공(수의계약 구매,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
축산지구	단기형 : 시설 개보수, 분뇨처리시설 추가 시 축산지구 우선 지정 장기형(돈사) : 조례 개정을 통한 축산지구특례지역 지정 장기형(빛가람동 인근) : 악취문제 해소 및 체계적 방역 시스템 제공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림지구 내 특화지구 종사자를 위한 주거목적 공동주택 허용 농식품부 원예단지 관련 공모 우선 지원, 사업 범위 확대(지역 전략산업)
재생에너지지구	토지 무상 이대 대가 지급, 재생에너지 공동체 인센티브 도모
경관농업지구	경관 재배 작물 유통 경로 확보, 융복합산업지구 연계 부가가치 증진 여건 마련 개화율 등에 따른 직불금 추가 제공(+10%), 환경시설 인접 작물 재배시 인센티브 추가
농업유산지구	농업유산 활용을 위한 마을 축제·인력 양성·공간 정비 사업 추진

자료 :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 농촌특화지구 지정 후보군은 읍·면을 기준 단위로 하여 유형별 후보군 개수로 정리하였으며, 타 유형의 농촌특화지구와 인접 후보지역들에 대해서는 후보군과의 연계방안을 구상함

[표 3-11] 나주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및 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

유형화 ↓ 유형별 지정기준 설정 ↓ 인센티브 제시

구분	적용기준
필수요건 (법 지침)	•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 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계는 도로·지형·지물을 고려하여 설정 • 농촌마을 분할 지양 • 신규 주거지 수요 및 농촌위해시설의 근거리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 가장 외곽 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완충 영역을 포함하여 설정
지정기준	**제외 시가화지역(중심지 · 기초거점)** •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의 경우 농촌마을 보호지구 지정 후보군에서 제외 • 인구 스프롤 현상 방지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화 지역 중 녹지지역에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방안 제외 **유형1 비시가화지역(중심지 · 기초거점)** • 계층구조 분석 시 1~2계층(중심지), 3~4계층(기초거점)에 해당되는 나주시 읍·면별 소재지 •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소재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마을 **유형2 배후마을** • 연계형 : 농촌특화지구와 연계를 통해 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 지속형 : 주민이 거주하고있으며, 40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 **유형3 신규마을** • 나주시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조성한 신규마을 지역
인센티브	•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귀촌인 마을 지원 사업 등 나주시 자체 사업 우선 배정 •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시 최소 사업 요건 50억원을 완화하여 마을 내 위해시설 이전 및 철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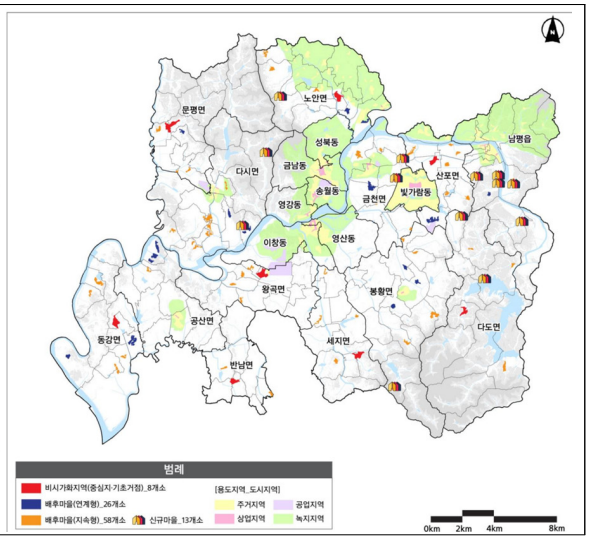

▽

지표에 따른 후보지역 도출

세부유형			개소수	남평읍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합계			148	14	11	8	4	10	15	16	6	13	15	12	10	14
농촌마을 보호지구	소계		105	10	6	5	3	5	12	14	5	9	10	10	7	9
	비시가화지역(중심지, 기초거점)		8	–	1	1	1		1		1	1	–	1	1	
	배후마을 (연계형)	농촌산업지구	19	3	–	–	–	1	4	1	1	3	–	2	1	3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	–	–	–	1	–	1	–	–	–	–	–	–
		경관농업지구	2	–	–	–	–	2	–	–	–	–	–	–	–	–
		농업유산지구	3	–	–	–	–	–	1	1	–	–	1	–	–	–
	배후마을(지속형)		58	2	5	4	2	1	6	9	3	4	8	6	3	5
	신규마을		13	5	–	–	–	–	–	2	–	1	1	1	2	1
농촌산업 지구	소계		24	4	1	2	0	1	1	1	1	3	2	2	2	4
	계획관리지역 유형		9	2	–	–	–	–	–	–	–	2	1	–	1	3
	산업 및 농공단지 인접 부지 유형		5	1	–	1	–	–	–	–	–	1	–	1	–	1
	읍·면 소재지 인근 유형		10	1	1	1	–	1	1	1	1	–	1	1	1	–
축산지구	소계		6	–	3	–	1	–	–	–	–	1	1	–	–	–
	단기형(우사, 계사, 기타 축사 등)		4	–	3	–	1	–	–	–	–	–	–	–	–	–
	장기형(돈사)		1	–	–	–	–	–	–	–	–	1	–	–	–	–
	장기형(빛가람동 경계 범위 2km 이내 지역)		1	–	–	–	–	–	–	–	–	–	1	–	–	–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소계		6	–	–	1	–	3	–	–	–	–	1	–	–	1
	나주시 농촌융복합 전략 육성 지역		2	–	–	–	–	–	–	–	–	–	1	–	–	1
	경관농업지구 연계형		1	–	–	–	–	1	–	–	–	–	–	–	–	–
	농업유산지구 연계형		3	–	–	1	–	2	–	–	–	–	–	–	–	–
재생 에너지 지구	소계		2	–	–	–	–	–	1	–	–	–	–	–	1	–
	나주시 RE100 에너지 정책사업		1	–	–	–	–	–	1	–	–	–	–	–	–	–
	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계획		1	–	–	–	–	–	–	–	–	–	–	–	1	–
경관농업 지구	소계		2	–	1	–	–	1	–	–	–	–	–	–	–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역		1	–	–	–	–	1	–	–	–	–	–	–	–	–
	농촌특화지구 완충지역		1	–	1	–	–	–	–	–	–	–	–	–	–	–
농업유산 지구	소계		3	–	–	–	–	–	1	1	–	–	1	–	–	–

▽

지표에 따른 후보지역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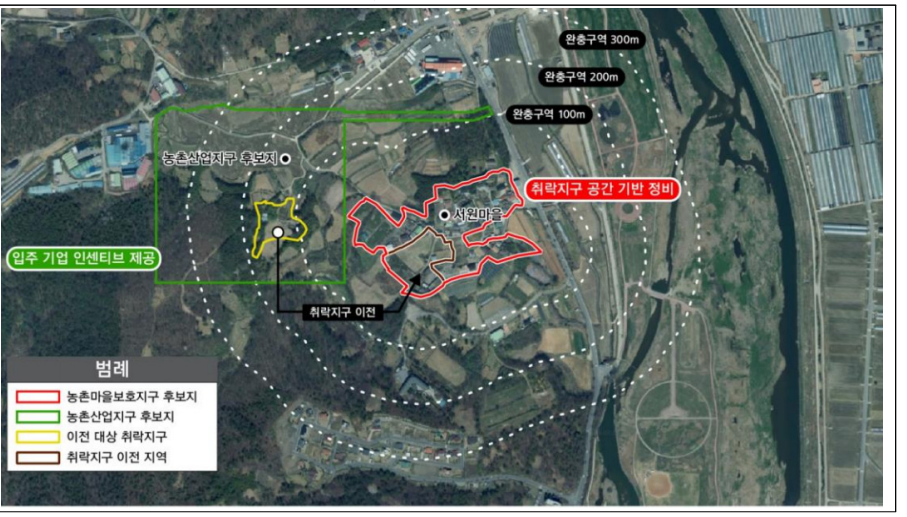

▽

후보지역 현황 및 공간특성 분석 ↓ 특화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구역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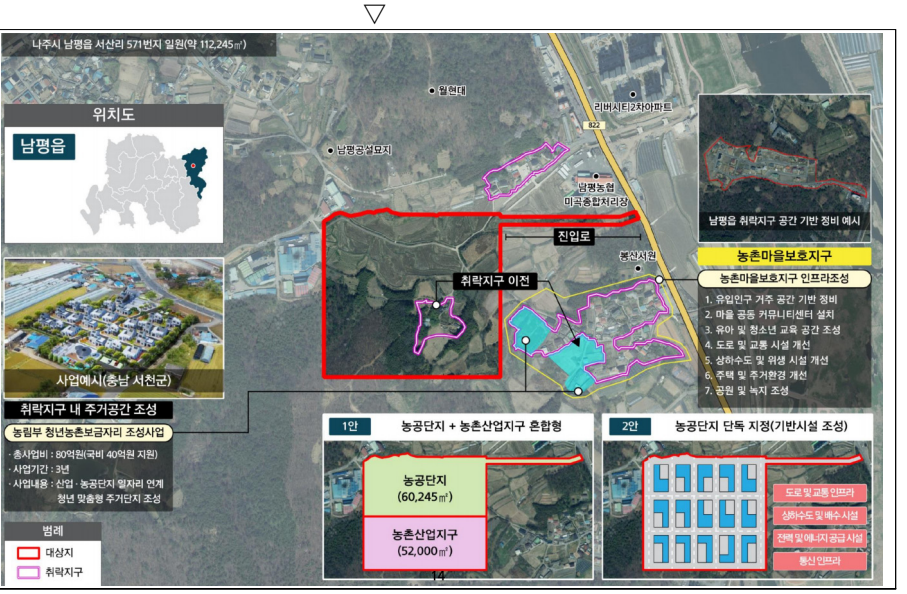

자료 :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도출

○ 신안군의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수립지침에 따른 지정기준을 중심으로 거점마을 역할을 수행할 행정리의 검토와 지역수요를 추가 검토함

- 거점마을 : 읍·면소재지 이외의 마을단위에서 특정한 서비스 기능 또는 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이 이용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등 일정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지역)

○ 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는 ①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적용기준 설정, ② 추가 적용 지정기준 설정 ③ 신안군 전체 지역의 후보군 도출, ④ 추가 적용 기준 반영 후보군 도출, ⑤ 특화지구 지정 우선순위 기준 설정, ⑥ 우선 후보지역 현황 공간 및 분석, ⑦ 농촌특화지구 경계설정 및 사업구상 순서임

[표 3-12]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선정기준

구 분	선정 기준	지정기준
수립지침 [별표3]	생산가능인구 변화율	최근 10년간 생산가능인구 변화율(중위값)
	공시지가 변화율	최근 10년간 공시지가 변화율(중위값)
	주택수	주택 수 30호 이상
거점마을 선정 기준	청년인구 수	19~34세 청년인구 수 평균
	핵심 서비스 기능 집적	농협, 하나로마트, 보건지소 등 의료복지
지역수요	정책수요	지자체 및 읍면 정책수요

자료 : 신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그림 3-5]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호보군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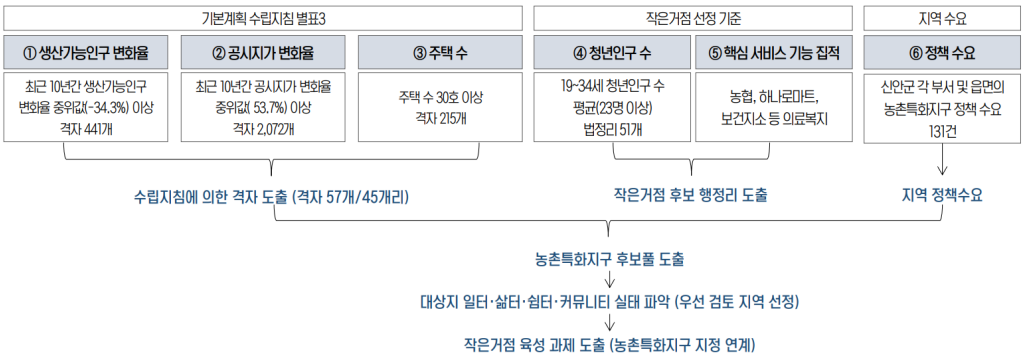

○ 우선 국토지리정보원 500mX500m 격자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가능인구, 공시지가, 주택 수 등을 격자분석 하였으며, 거점마을과 지역수요는 법정리 단위의 레이어를 생성하여 중첩 분석을 통해 후보군을 도출함

[표 3-13]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및 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

수립지침 격자분석

기본계획 수립지침(⊿생산가능 인구, ⊿공시지가, 주택 수)에 의한 후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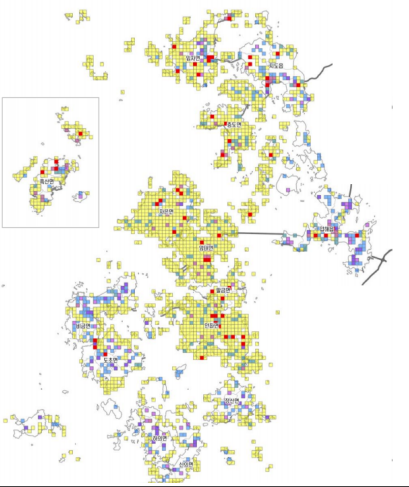

기본계획 수립지침 별표3

생산가능인구 변화율 | 공시지가 변화율 | 주택 수 = 총 57개 격자

구분	격자수	해당지역		
		읍면소재지	법정리명	작은섬
신안군	57	8개리(15)	32개리(37)	5개리(5)
지도읍	6	읍내리(2)	내양리(1), 감정리(2), 자동리(1)	
압해읍	5	학교리(1)	동서리(2), 대천리(1), 분매리(1)	
증도면	5	증동리(1)	방축리(1), 대초리(1), 우전리(1)	병풍리(1)
임자면	8	진리(3)	도찬리(1), 이흑암리(1), 광산리(1), 삼두리(2)	
자은면	6	-	한운리(1), 송산리(1), 유천리(1), 유각리(1), 고장리(2)	
비금면	1	-	수대리(1)	
도초면	2	수항리(1)	발매리(1)	
흑산면	5	진리(2)	비리(1)	수리(1), 홍도리(1)
하의면	-	-	-	
신의면	-	-	-	
장산면	-	-	-	
안좌면	10	읍동리(3)	산두리(1), 대리(1), 향목리(1), 여흘리(1), 대척리(1), 창마리(1)	반월리(1)
팔금면	3	-	대심리(1), 원산리(1), 이목리(1)	
암태면	6	단고리(2)	기동리(2), 신석리(1)	

▽

거점마을 분석 ↓ 정책수요 분석 (법정리)

작은거점(청년인구 수, 핵심 서비스 기능시설 입지)에 의한 후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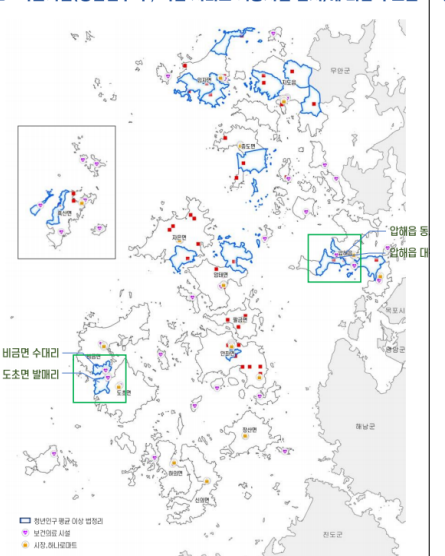

농촌특화지구 정책 수요 131건

- 1차 (107건) : 귀촌지원과, 투자유치과, 섬발전진흥과, 작은섬정원과,
- 2차(24건) : 14개 읍면 중 10개 읍면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비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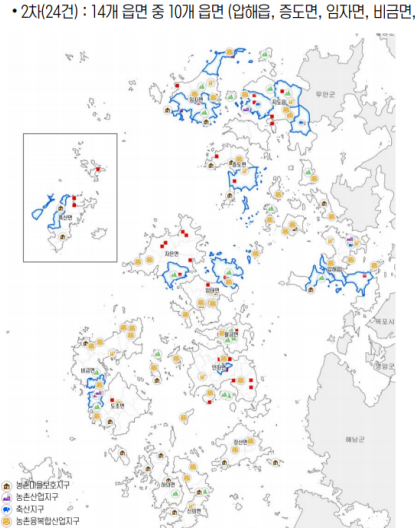

▽

후보군 도출 ↓ 우선순위 기준 설정 ↓ 우선 지정 지역 설정

특화지구 후보군 32개리 중 비금면 수대리&도초면 발매리를 통합하여 총 31개 후보군 도출

구분	읍면명		마을명	우선순위 기준
1순위 (2)	비금면 수대리, 도초면 발매리		송치마을, 화도마을, 월포마을 일대	수립지침 격차 ∩ 작은거점(청년인구, 핵심 서비스시설) ∩ 신안군 제안 후보리스트
	압해읍 대천리		대천(조천)마을, 광림마을 일대	
2순위 (9)	지도읍	내양리	송항마을 일대	수립지침 격차 ∩ 작은거점(청년인구) ∩ 신안군 제안 후보리스트
		감정리	금출마을, 조비마을 일대	
		지동리	효자마을 일대	
	증도면	대초리	장고마을 일대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마을 일대	
		이흑암리	이흑암마을, 육암마을 일대	
	자은면	유각리	유각마을 일대	
	흑산면	비리	비리마을 일대	
	암태면	신석리	신석마을 일대	
3순위 (2)	압해읍	동서리	동서마을 일대	수립지침 격차 ∩ 작은거점(청년인구, 핵심 서비스시설)
4순위 (3)	압해읍	분매리	숭의마을 일대	수립지침 격차 ∩ 작은거점(청년인구)
	임자면	삼두리	삼두마을, 부동마을 일대	
	안좌면	창매리	창매마을 일대	
5순위 (16)	증도면	방촌리	원방촌마을 일대	수립지침 격차 ∩ 읍면 소재지 이외
		우전리	우전마을 일대	
	임자면	광산리	하우마을 일대	
	자은면	한운리	둔장마을 일대	
		송산리	송산마을 일대	
		유전리	유전마을 일대	
		고장리	고장마을, 외기마을 일대	
	안좌면	산두리	산두마을 일대	
		대리	대리마을 일대	
		항목리	항하마을 일대	

▽

후보지역 현황 및 공간특성 분석

▽

특화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구역계 설정

자료 : 신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당진시 농촌특화지구 도출

○ 당진시는 ① 행정리별 인구특성(인구분포, 행정리별 인구특성) 분석, ② 공간특성(공간구조, 토지이용, 자연환경 보전) 분석, ③ 중점관리영역을 도출, ④ 중점관리영역에 대한 현황 및 공간분석, ⑤ 토지이용 현황, 입지적정성 및 법적 규제사항 종합 검토, ⑥ 농촌특화지구 경계설정 및 사업구상의 프로세스를 거침

- 당진시에서는 농촌특화지구 상위개념으로 활성화지역이 아닌 중점관리영역을 도입, 유형화를 통해 중점관리영역에 대한 공간관리 방향과 농촌특화지구 지정 방안을 검토

○ 인구특성 및 공간특성 분석(100mX100m 격자와 위해시설을 포인트화 오버랩)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복수 행정리가 포함되는 중점관리영역을 도출하고 중점관리영역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촌특화지구 계획을 수립함

[표 3-14] 당진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선정기준 및 프로세스

구 분		선정 기준	지정기준
인구특성 (행정리)		인구분포	100mX100m격자 활용 인구밀집지역 도출
		행정리 별 인구특성	20년간 인구증감률, 생산가능인구, 청년인구, 학령인구, 고령화율, 행정리 단위 마을소멸지수
공간 특성	공간 구조	시가화 건조지역 변화추이	시가화건조지역 분포 및 확장 축 검토
		지역 공간구조 특성	용도지역, 교통체계, 농업기반시설, 생활SOC, 개발 추진/예정 사업대상지
	토지이용	개발압력 및 농촌환경관리시설 분포	공시지가 증감률, 건축허가, 농지전용/산지전용 추이, 개발행위허가 추이, 농촌환경관리시설 입지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 및 생태보전 지역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친환경농업인증 농가, 농촌경관지역

▽

중점관리영역 특징 유형별 내용	
특징1	시가화건조지역 배후지역 ∩ 인구규모↑ ∩ 개발압력↑
특징2	시가화건조지역 이원화
특징3	농업기반·관광시설 입지 ∩ 인구규모↓ ∩ 개발압력↑
특징4	농촌환경관리시설입지 ∩ 인구규모↑ ∩ 개발압력↑
특징5	농업진흥지역 ∩ 친환경농업인증 농가↑ ∩ 인구규모↓
특징6	보존자원 본포 ∩ 인구규모↓

자료 :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표 3-15] 당진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및 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

중점관리 영역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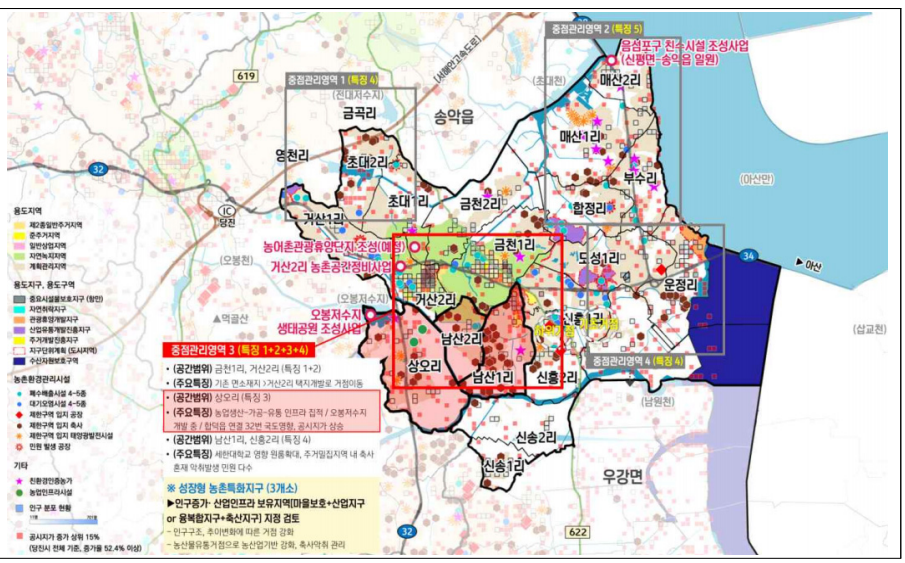
환경관리 대상시설 · 토지이용 현황 · 법적규제 · 입지적정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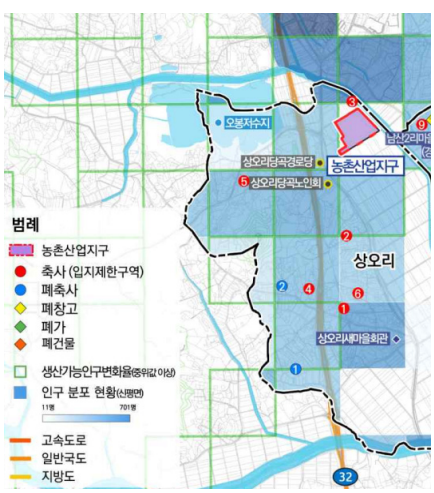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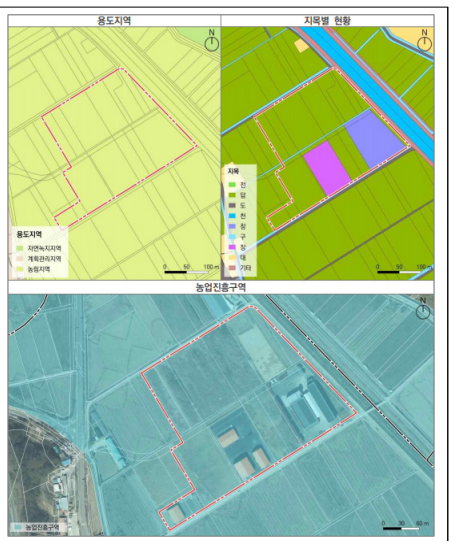 • 지정기준 및 법검토 결과 구분 / 분석 기준 / 검토결과 ① 입지적정성 등급 평가 / · 기본계획 수립지침 기준 필지별 입지적정성 등급 / 2~3등급 필지 혼합 ※ 2등급(입지조정)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가능여부 결정 ② 지구지정 요건검토 / · 용도지역 – 전용공업 · 일반공업 · 녹지 · 관리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소규모 공장시설 집적화 건축 가능지역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시설 ·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 남산1리 지정 검토 中 · 주변 정주여건(농지 · 하천 등) 훼손 최소지역 / 하천구역 미포함, 휴경지 활용

특화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구역계 설정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계획(안)

구분	시설		세부내용	규모	운영 · 관리 주체
가공	가공시설, 창고		유제품 가공, 보관	1,270㎡	낙농축산업 협동조합
체험교육	낙농 테마 전시관	체험관	치즈, 피자 등 유제품 만들기 체험	330㎡	
		교육관	낙농 역사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00㎡	
		카페	유제품 및 로컬푸드 판매	330㎡	당진포2리, 신성대학교, 당나루물꽃마을
	체험농장		착유 및 먹이주기 체험	3,000㎡	
	낙농테마공원		낙농테마 어린이 놀이터	2,000㎡	

구분	계획규모	사업비	비고
총 사업비		**14,918.9**	-
1) 건축비		7.734.2	-
가공시설	1,270㎡	2,243.2	-
낙농테마전시관	1,060㎡	2,941.5	
체험농장	3,000㎡	1,865.4	
낙농테마공원	2,000㎡	684.1	
2) 기반시설 공사비		6,271.6	-
기반시설 공사비		6,271.6	-
토목 (부지정비)	36,867㎡	3,170.9	
조경 및 외부 주차장	28,000㎡	3,100.7	
3) 제경비		913.0	-
제경비	-	913.0	-
설계용역비	-	769.0	
감리비	-	144.0	

자료 :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부여군 농촌특화지구 도출

○ 부여군의 농촌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는 ① 기본계획 수립, ② 문제점 및 발전계획에과 지침에 따른 격자분석 기반 유형별 농촌특화지구 지정 가능지역·입지적정성 검토, ③ 특화지구 연계 검토, ④ 의견수렴·협의, ⑤ 각 유형별 후보군 및 우선순위 설정, ⑥ 특화지구 중장기 방향·계획 수립으로 진행되었음

[표 3-16] 부여군 농촌마을보호지구·산업관련 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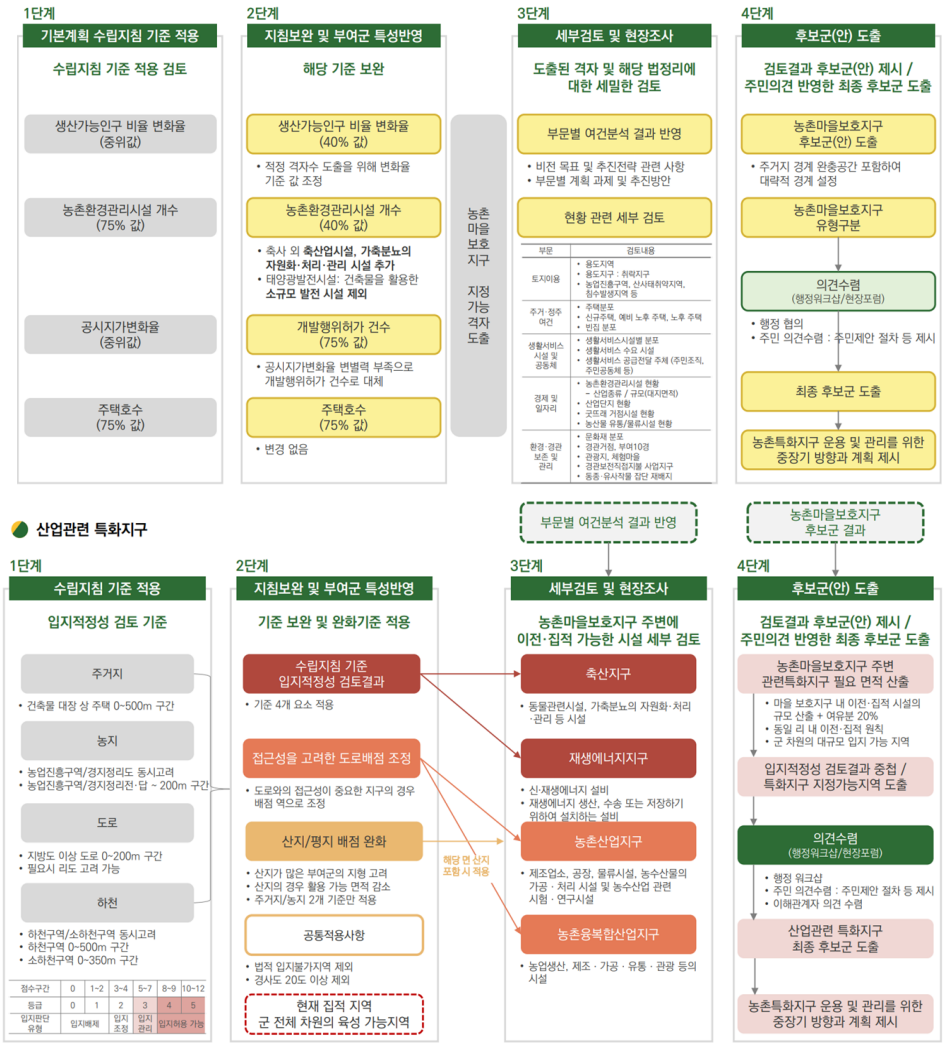

○ 기본계획 수립지침 [별표3]에 따라 ①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군 선정→산업특화지구 연계 후보군 검토, ② 산업관련 특화지구 후보군 선정 → 마을보호지구 연계 후보군 검토의 투트랙으로 후보군을 도출함

○ 산업관련 특화지구들은 입지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지구 유형별 지정기준을 정하여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군과 마을보호지구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함

[표 3-17] 부여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을 위한 격자 및 입지적정성검토 기준

기준 유형	격자 도출기준
산업관련 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 기준	주거지 : 건축물 대장상 주택 0~500m구간
	농지 : 농업진흥구역/경지정리(전·답) 0~200m구간
	도로 : 지방도 이상 도로 0~200m구간[8]
	하천 : 하천구역 0~500m, 소하천 : 0~350m
	산지·평지 : 산지 완화, 경사도 20도 이하(개발행위 허가기준)
▽	
특화지구 유형	**지정기준**
농촌산업지구	1) 전략적 지정 : 군기본계획 경제·산업 계획/부여군 전략산업 육성 지역 2) 타지구 연계 : 기존 산업단지 인접지역 혹은 중복지정, 개별 입지 공장 밀집지역 포함 지정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 전략적 지정 : 6차산업 인증 사업자 유치,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정지역 2) 타지구 연계 : 농업유산, 백제문화 체험, 체류형 관광 등 관련 산업 연계 인접지 혹은 중복 지정
축산지구	1) 군전체 : 시설 현대화 2) 지역적 : 농촌마을보호지구 포함 법정리 내에서 이전지구 조성 집적화 ※ 인센티브 : 악취 저감 시설 현대화 지원, 특화지구 지정시 이전(조례 개정)
재생에너지지구	1) 정책 및 사업에 따라 밀집 조성 예정지 2) 관련부처 연계 가능 사업 3) 영농형 태양광 가능지(비우량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4) 친환경 에너지 산업 생태계 연계 고려 ※ 인센티브 : 지구지정 시 판매망 우선연결
경관농업지구	1) 전략적 지정 : 경관작물 재배 농경지 및 주변, 직접지불 지역 2) 타지구 연계 : 직접지불 지역 인근(마을보호지구 연계), 집단화 가능 지역
농업유산지구	1) 전략적 지정 : 국가등록유산 보유 지역, 역사문화자원 보유 마을 2) 타지구 연계 : 백제문화복합단지 및 백제문화체험마을 연계(마을보호지구 연계)

자료 : 부여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 농촌마을보호지구는 ① 입지가능지역 격자 분석 결과를 활용, 행정리 단위의 후보군 도출, ② 유형화(성장형, 유지형, 보전/관리형)와 유형별 관리방향 설정, ③ 면단위 현황 분석,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도로와 이격거리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구간을 제시하였으나, 부여군에서는 산업관련 특화단지의 지정 시, 도로와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격거리가 낮은 수록 높은 점수구간을 설정함

④ 마을보호지구 범위 설정 및 여건 검토, ⑤ 농촌환경관리시설 면적 산출 검토, ⑥ 현장 확인 및 보완, ⑦ 마을보호지구 연계 산업관련 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과정을 거침

[표 3-18] 부여군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군 도출을 위한 격자 분석 기준

기준 유형	격자 분석 기준
농촌마을보호지구 입지가능지역 격자도출	생산가능인구 비율 변화율(40% 이상)
	농촌환경관리시설 (40% 이상) : 농촌환경관리시설 개수(축사, 축산업·가축분뇨시설), 태양광발전시설(건축물 활용 소규모 제외)
	개발행위 허가 건수(75% 이상)
	주택 호수(75% 이상)

자료 : 부여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표 3-19] 부여군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군 도출 프로세스

격자분석 후보군 도출 및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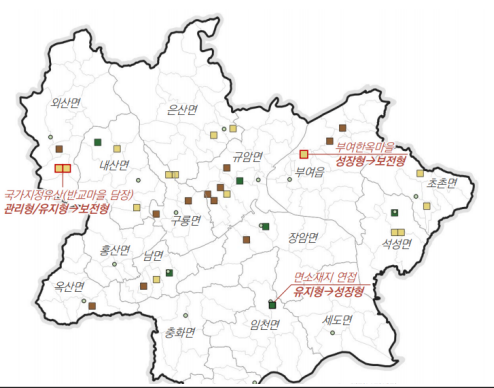

구 분	성장형	유지형	보전/관리형
생산가능인구	상위 20% 이상, 면소재지 (44명 이상)	상위 20%미만 50% 이상 (32명~44명)	상위 50% 미만 (32명 미만)
주거 밀집도	상위 20% 이상, 면소재지 (49호 이상)	상위 20%미만 50% 이상 (31호~49호)	상위 50% 미만 (31호 미만)
관리방향	중심지 및 거점지 기능 강화	정주인구 유지 생활서비스 연계	역사문화보전 인구소멸 대응
	주거공급	사업연계	생활인구 확대

* 후보군 중 국가지정유산 및 역사문화 관련 마을은 보전형으로 별도 구분함

구분	전체	성장형	유지형	관리형	보전형	비고
부여군	33	6	12	12	3	
부여읍	3	-	가중리, 자왕리	-	쌍북리	
규암면	6	반산리	나복리, 합송리, 노화리(2)	합송리	-	
은산면	2	-	-	은산리, 신대리	-	
외산면	3	-	갈산리	-	반교리(2)	
내산면	3	온해리	-	저동리, 묘원리	-	
구룡면	4	-	죽절리, 금사리	현암리(2)	-	
홍산면	-	-	-	-	-	
옥산면	1	-	내대리	-	-	
남면	3	회동리	신흥리	내곡리	-	
충화면	-	-	-	-	-	

▽

면단위 연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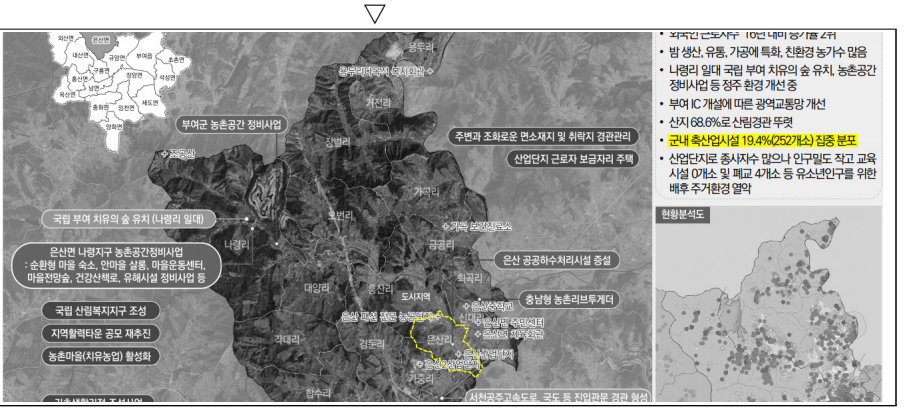

▽

농촌환경 관리시설 면적산출

축산업시설

범례	구분	개소	대지면적 합계(㎡)	*필요 면적 (㎡)
	돈사	5	27,033	86,218
	우사	14	44,098	
	가축인공수정소	1	313	
	사료제조업	1	404	

태양광발전시설

범례	구분	개소	대지면적 합계(㎡)	*필요 면적 (㎡)
	태양광발전시설	9	17,931	56,899
	태양광발전시설 (현황 추가)	17	29,485	

개별입지공장

범례	구분	개소	대지면적 합계(㎡)	*필요 면적 (㎡)
	개별입지공장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제외)	19	107,762	129,314

농촌환경관리시설 대지면적 합계	227,026 ㎡
+ 대지면적 (잉여분 20%)	45,405 ㎡
농촌환경관리시설 필요 대지면적 합계	272,4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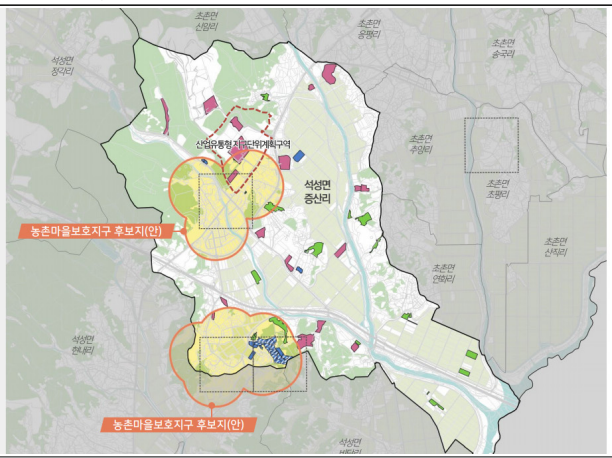

▽

현장확인 · 보완

현장 확인 및 보완

면장(주민) 면담 결과

[경제 및 일자리]
- 양송이 관련 1차산업 위주 → 가공공장 등 필요
- 정각리 양송이 버섯산업 연구소와 양송이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등 연계 버섯산업 생태계 형성 필요
- 재배후 부산물 처리센터 필요
- 외국인 근로자 군내 1위 → 외국인 근로자 숙소 필요
- 관 외 재배자 다수

[활용 가능 자원]
- 6차산업 양송이 체험마을(농림부 우수사례) 입지
- 정각천변 방치된 정미소 활용 의견
- 석성중학교 앞 교차로변 방치된 임대아파트 부지(군 매입 필요)

[주민협의체]
- 안건별 사업별 주민협의체 조직 양호
- 사업 참여에 적극적 협의체
- 협의체 리더 열정 강함

[관련사업]

▽

농촌마을 보호지구 ↕ 산업관련 특화지구 연계 후보군 도출

현황분석 및 진단 결과 종합

[면단위 연계 검토]
- 행정복지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으로 생활서비스 제공 활성화 예상
-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
- 농산물 유통시설 (2개소), 양송이버섯 관련시설 활용 산업 활성화 가능
- 태양광발전시설 및 공장시설 집중 분포로 이전 및 직접 필요

[농촌마을보호지구 여건 · 농촌환경관리시설 면적 검토]
-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위치, 생활서비스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생활서비스 인프라 활용 가능
- 빈집 활용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주거시설 도입 가능
- 산업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연접하여 있어 주거환경 보호 필요
- 농촌환경관리시설 이전 및 집적 필요

[현장확인 및 면장(주민) 면담 결과]
- 유휴부지 활용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 또는 주거시설 도입 가능
- 퇴비적치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안) 계획 방향

1. **농촌마을보호지구(성장형) 지정**
   - 행정복지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 용부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중심기능활성화
   - 빈집,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시설 허용용도 변경 및 계획을 통해 주거환경 보호
2. **산업관련특화지구 지정**
   - 증산리 내 산재되어 있는 농촌환경관리시설 이전 및 집단화
3. **양송이 버섯 산업관련시설 연계를 통한 산업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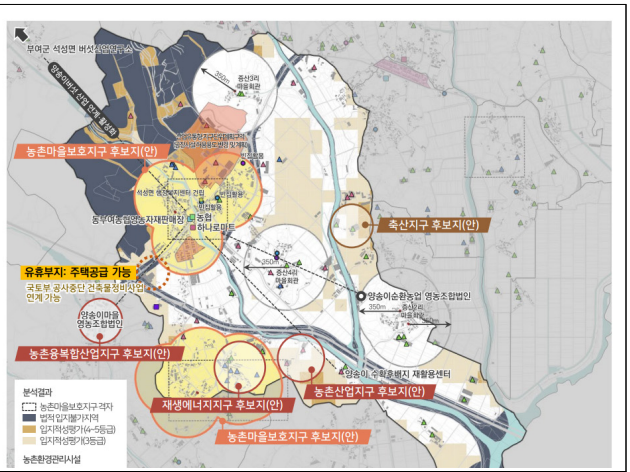

[표 3-20] 부여군 산업관련 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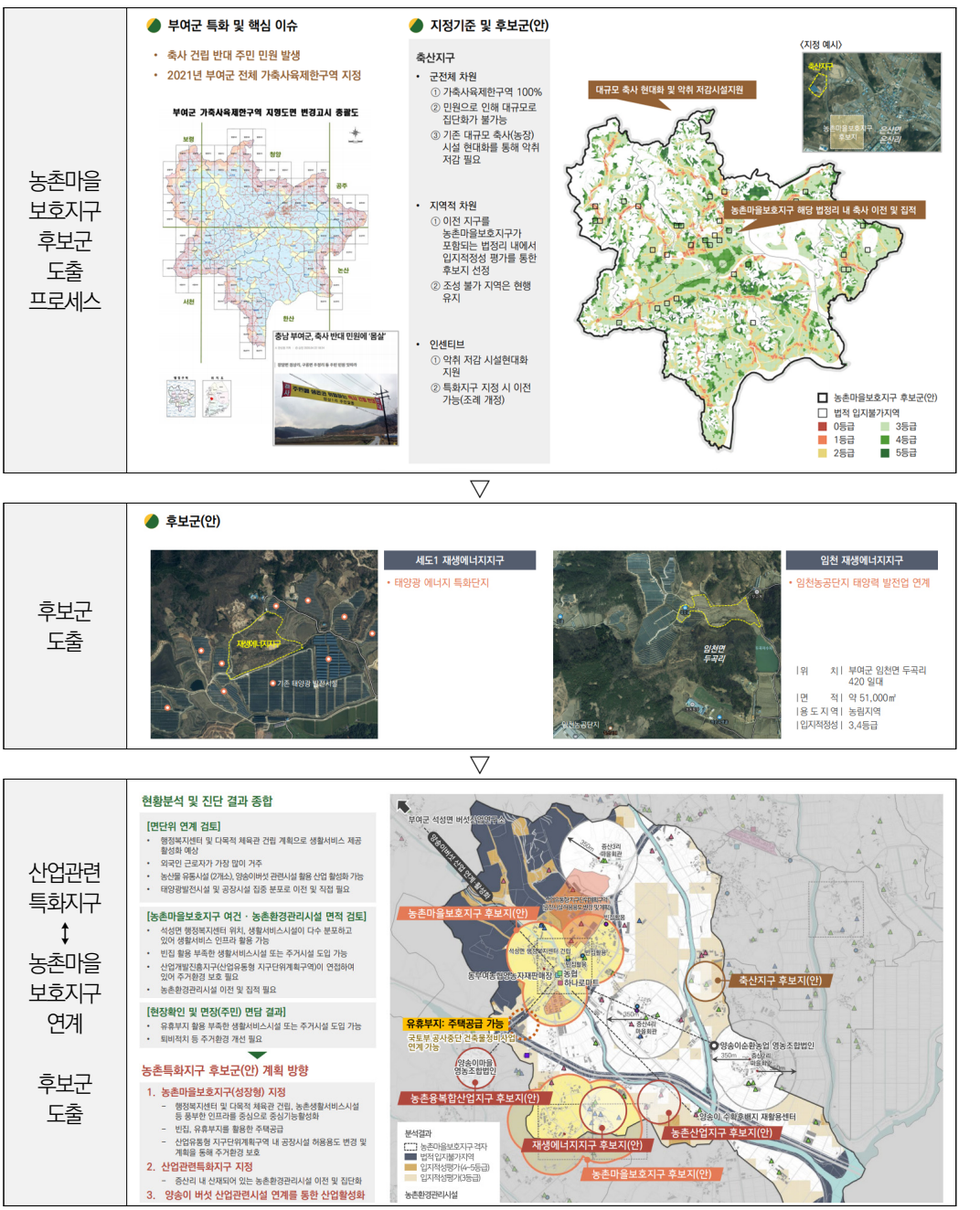

자료 : 부여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중간보고 자료

나. 사례 분석

1)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 지정 절차 분석

○ 5개 시범수립지역들에서의 농촌특화지구 지정 체계는 수립지침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었음.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나, 시범수립지역 들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농식품부의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 단계를 포함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함

[그림 3-6]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시행·사업계획 수립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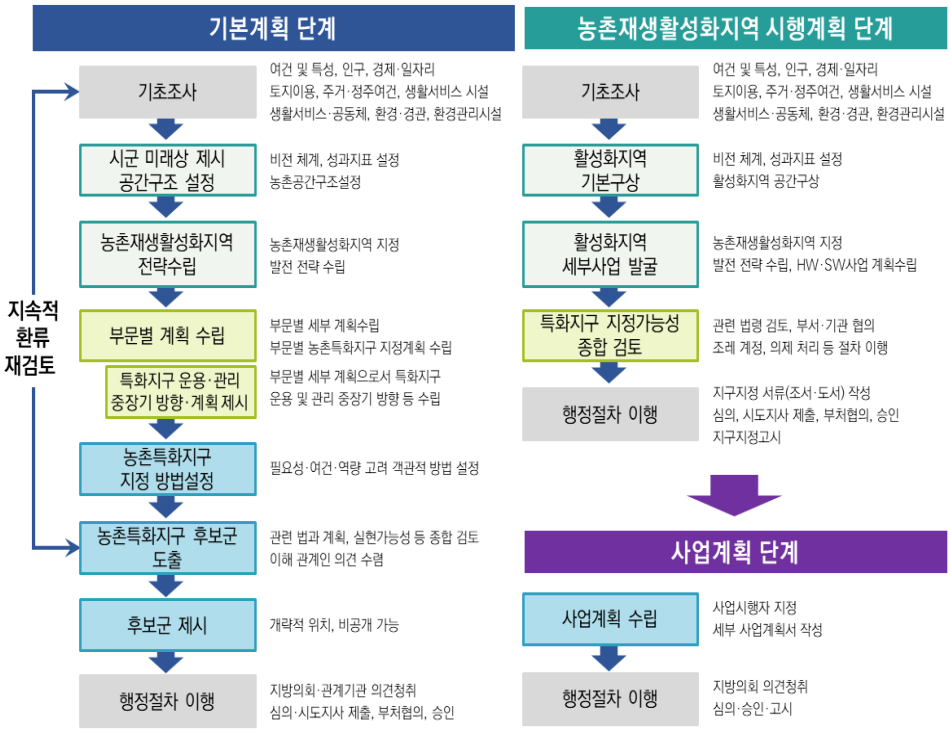

○ 5개 시범사업 모두 객관적 지표들을 설정하여 공간분석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도출하였으며 지역자원과 사업수요, 관련 사업계획,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을 위한 구역계와 사업계획을 제안함

○ 그러나, 5개 시범수립 시군의 지표설정과 공간분석의 방법에서 GIS를 활용한 격자분석의 유무, 특화지구 지정 검토 대상 공간적 범위의 설정 방법, 특화지구 지정을 위한 법령 검토의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순창, 나주는 GIS공간분석이 아닌 각 지표들을 지도에 오버랩하여 후보지역을 도출, 신안 당진은 마을보호지구 지정 가능지역 검토에 한정하여 수행하였으며, 부여군은 마을보호지구, 산업 관련 지구 모두에서 GIS공간분석을 수행함

[표 3-21] 시범수립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지침[별표3]에 따른 공간분석 수행

시·군	수행 유무	기준 격자	마을보호지구 활용 지표	산업관련 지구 활용 지표
순창군(전북)	X			
나주시(전남)	X			
신안군(전남)	△	500mX500m	생산가능인구, 공시지가, 주택수	X
당진시(충남)	△	100mX100m	생산가능인구, 인구 분포, 공시지가	X
부여군(충남)	O	500mX500m	생산가능인구, 농촌환경관리시설, 개발행위허가, 주택호수	주거지, 농지, 도로, 하천, 관련법령 입지불가 지역

○ GIS 공간데이터를 활용한 격자 및 중첩분석은 기본계획 수립지침 상, 계획수립권자가 객관적 분석방법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무적 수행사항은 아니나, 시범사업 또는 그 이후의 특화지구 관련 공모사업 시, 해당 분석에 대한 유무로 인한 객관성 확보에 대한 가점 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적정한 수준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해보임

▌분석 지표

○ 5개 시범사업 시군의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위해 검토된 지표들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인구와 관련하여, 인구·청년인구·학령인구·고령화율·생산가능인구·미래 인구증가 수요 등 6개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음

○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기초조사, 성과지표 설정, 부문별 계획수립 단계에서 다방면의 지표들을 검토하고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유의미한 지표들을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제를 반복하여 유의마한 결과값의 도출이 필요함

○ 현재,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지표들에 대한 검증이 시범수립 시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중인 시군은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특화지구 후보군 도출에 활용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지표를 제안, 결과 도출에 어려운 지표들은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계획 수립초기에 오류들을 검증, 개선해 나갈 수 있을것임

[표 3-22] 시범수립 시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과정 적용 현황 및 지표

농촌특화지구 유형	적용된 현황 및 지표
농촌마을보호지구	읍·면소재지 여부, 생활서비스 시설 집중, 인구, 청년인구, 학령인구, 고령화율, 생산가능인구, 미래 인구증가 예상, 마을소멸지수, 공시지가, 개발행위 허가, 주택단지 보유·예정, 주택수, 신규마을 조성, 농촌환경시설(개수, 규모), 시군10경, 관광지, 문화재(문화·자연·무형), 지역수요
농촌산업지구	개별공장, 창고, 산업·농공단지 조성(예정)지 연계, 읍면소재지로부터 거리, 최근 5년간 개별 공장 입지, 지역수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체험휴양마을, 6차산업인증, 연구·교육, 가공·유통, 농공·단지 수, 지역특구 수, 정책계획, 농어촌체험마을, 전략산업 육성 지역, 인근 특화지구와 연계 가능성(경관농업지구 : 가공·유통·관광, 농업유산지구 : 체험, 체류 등 관련사업), 지역수요
재생에너지지구	태양광사업자 현황, 정책계획, 조성 예정지역, 판매망 형성 지역, 영농형 태양광 가능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역수요, 소규모 건축물 활용 재생에너지
축산지구	퇴비공장, 축사 규모(돈사, 우사, 계사), 관련법령 규제사항,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 인구밀도, 대규모 농지분포, 축사 집중 분포, 특정지역으로부터 거리, 지역수요
경관농업지구	경관보전직불제 지역·운영기간, 환경적특성(산림, 수자원), 인근 특화지구와 연계 가능성(농촌마을보호지구 : 정주성 확보, 농촌산업지구 : 오염완화), 지역수요
농업유산지구	국가유산, 국가유산 일부 충족, 역사문화자원, 지역수요

제4장

농촌특화지구 지정 방안

1.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
2.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및 고려 사항
3.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 및 방법

제4장 농촌특화지구 지정 방안

1.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

▌농공간계획 수립 체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계획은 10년단위의 시·군 관할구역 단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며,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활성화 지역에 대한 중단기 계획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법정계획임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활성화지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군의 비전 및 목표, 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각 부문별 발전계획, 특화지구 후보군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지역 내에서 구체화와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함

[그림 4-1] 농촌공간계획 수립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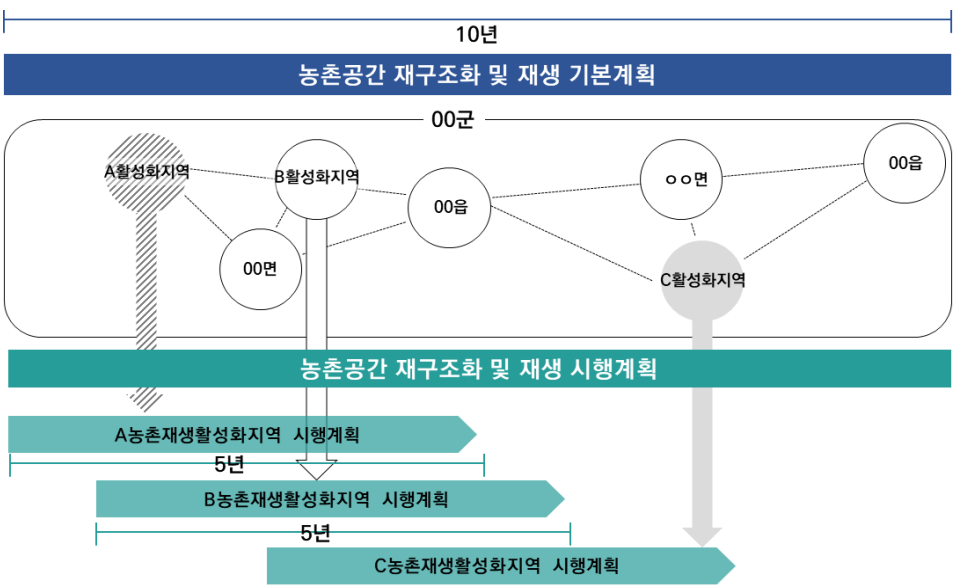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의 핵심 유형인 농촌협약 체결은 시행계획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국내 농촌계획 수립 대상 139개 지자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계획수립 대상 시·군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임

▌농촌공간계획에서의 농촌특화지구

○ 아래 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계획 수립내용으로 기본계획에서는 농촌특화지구(이하 "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시행계획에서는 특화지구 경계 설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

[표 4-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성

기본계획	시행계획
1. 기초조사 및 실태분석	1. 기초조사 및 실태분석
지역적 여건 및 특성, 인구 현황(인구구조), 경제 및 일자리, 토지이용, 주거·정주여건, 생활서비스 시설,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환경·경관 보존 및 관리,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	공간적 위치 및 특성, 인구, 경제 및 일자리, 토지 이용, 주거·정주 여건, 생활서비스 시설, 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환경·경관 보존 및 관리,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 실태 종합분석 및 중점과제 도출
2. 계획수립 방향	2. 기본구상
비전 및 목표, 전략 및 과제 설정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 설정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설정
농촌구조 설정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 전략	3. 세부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HW 사업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발전 전략 제시	SW 사업
4. 부문별 계획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농촌 주거·정주여건 개선	4.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농촌특화지구 검토 및 경계설정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육성	주민제안,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농촌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도서 등의 작성
농촌 환경·경관의 보존 및 관리	5.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의 정비·관리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
5.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재정 및 투자계획
농촌특화지구 지정·관리 방안, 후보군 검토	성과관리 계획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방향	기대효과
6.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	
재정 및 투자계획	
성과관리 계획	

2.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및 고려 사항

가.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절차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서 나뉘어 진행되며, 기본계획에서는 후보군을 선정하고 시행계획에서는 사업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수행하게 됨

○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일률적 흐름에 따른 단계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 아닌 후보군 및 지구설정을 위한 행정과 지역주민의 수요, 관련계획 및 정책 시행에 대한 대응, 시·군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부문별 계획과의 조화, 이해관계인의 의견·동의 등의 과정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재검토를 필요로 함

-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정책적 방향과 관련 사업계획,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공간분석, 우선순위 검토를 거쳐 후보군을 선정하게 됨

- 시행계획에서는 기본계획단계에서의 추진체계를 해당 활성화지역으로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아닌 동의에 이르기까지 특화지구의 사업계획 수립·경계를 확정하고 도서작성을 통해 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됨으로써 농촌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

[그림 4-2]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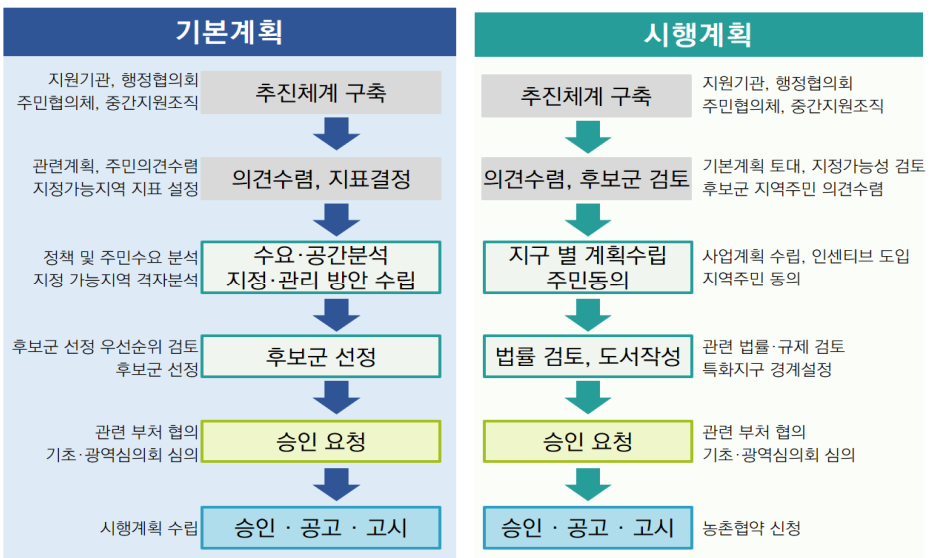

○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의 변경, 나아가서는 모법인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현재 시점(`24년 11월)에서 승인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와 계획수립 대상 13개 시·군의 행정·주민 등 각 주체들의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써 각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검토·제안하고자 함

나.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고려 사항

▌타 계획과의 조화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방침과 조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은 농촌공간의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와 보전, 규제의 강화와 완화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시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발전축 설정,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 용도지역·지구의 설정 등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성이 있음

[표 4-2] 농촌공간계획 수립 원칙_타 계획과의 조화

구 분	조항
타 계획과의 조화	[농촌공간재구화법] 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농촌공간재구화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지침 6-3-1. 주요고려사항) (1)(도시·군 계획 연계) 도시 · 군관리계획에서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정비 또는 보전 방향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대비하는 종합계획으로 시군의 미래상과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토지이용 기본골격에 대한 구체화(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설치·정비,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가 이루어짐에 따라 계획수립 주체인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참조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 4-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1. 기초조사 및 실태분석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지역적 여건 및 특성, 인구 현황(인구구조), 경제 및 일자리, 토지이용, 주거·정주여건, 생활서비스 시설,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환경·경관 보존 및 관리,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		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 연혁, 인구·경제·자연환경·생활환경 및 사회개발 현황, 분야별 문제점, 자원 발전 잠재력, 사회·환경 등의 세력권, 재해위험 요소, 범죄, 인구, 온실가스
2. 계획수립 방향		2. 계획의 목표와 지표
비전 및 목표, 전략 및 과제 설정		정책이슈 도출
성과지표 설정		시·군 미래상, 기본목표, 실천전략
농촌구조 설정		지표설정(인구, 경제, 환경)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 전략	↔	3. 공간구조 설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상호	공간구조의 진단, 개편방향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발전 전략 제시	교차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4. 부문별 계획	검토	4. 부문별 계획
농촌 주거·정주여건 개선	필요	토지이용계획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기반시설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육성		도심 및 주거환경
농촌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	환경의 보전과 관리
농촌 환경·경관의 보존 및 관리		경관 및 미관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의 정비·관리		공원·녹지
5.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방재·방범 및 안전
농촌특화지구 지정·관리 방안, 후보군 검토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방향		5. 계획의 실행
6.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재정계획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		투자계획
재정 및 투자계획		
성과관리 계획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 농촌특화지구는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 농촌의 기능재생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가치 있는 농촌 자원보전과 활용, 난개발문제 대응 등을 위한 `토지이용관리` 수단임(기본계획 수립지침)

○ 아래 표에서와 같이 농촌특화지구는 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능 용도지역이 제한되며 향후, 특화지구 지정에 따라 건축물의 입지 제한 및 규제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농촌특화지구지정에 도시군 기본계획·관리계획의 반영과 도시군 계획으로 환류되는 상호 교차 반영이 필요함

[표 4-4] 농촌특화지구 별 지정가능 용도지구

구 분	조항
농촌마을보호지구	도시지역(녹지지역 한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촌산업지구	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한정), 관리지역, 농림지역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도시지역(녹지지역 한정), 관리지역, 농림지역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도시지역(녹지지역 한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또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서는 향후 시행예정인 기반시설 사업, 비도시지역의 주거환경정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림 4-3] 도내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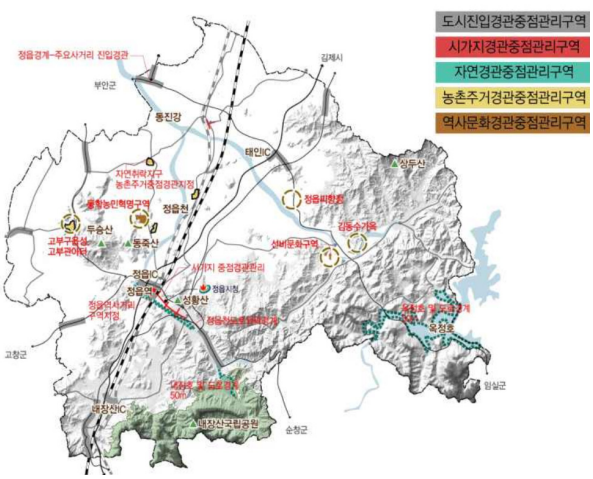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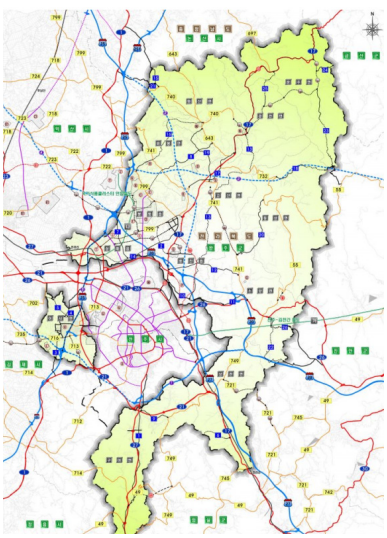

구분		사업명	연장 (km)	사업 기간	차로수 (양방향)	공사비 (억원)	비고
고속 국도	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54.3	'10~'20	4(신설)	18,444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
	②	논산~전주 고속도로 건설	27.40	'31~	4(신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③	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46.3	'31~	4(신설)	-	완주비전 2025 장기종합발전계획
	④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138.3	'18~'32	4~6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⑤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	18.3	'17~'23	4→6	2,322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
	⑥	용지~오아 국대도 건설	11.7	'13~'20	4(신설)	1,759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2011~2015)계획

자료 : 2030 정읍 도시기본계획, 2035 완주 도시기본계획

▌ 타 지역·지구와의 연계

○ 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지구의 중첩 시 각 지역·지구의 지정 목적에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기능적 연계가 가능할 경우에 특화지구의 지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농촌특화지구는 용도지역별 입지 제한, 건축물의 제한 및 허용 등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와의 중첩으로 인한 토지이용규제의 강화와 사업추진 지구와의 중첩지정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성격과 반대되는 규제를 적용될 수 있음

○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계획수립권자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한 지역·지구 지정현황에 대한 조사와 중첩 시, 각 지역·지구의 근본적 지정 기대효과 상실과 감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4-5] 농촌공간계획 수립 원칙_타 지역·지구와의 연계

구 분	조 항
타 지역·지구와의 연계	(기본계획 수립지침 6-3-1. 주요고려사항)(3) (기능적 연계) 다른 법의 지역·지구 등과 토지이용 관리 목적이 상충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경우 상호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현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는 338개(`24년 11월 기준, 기본법 별표 250개, 시행령 별표 34개, 국토부 장관 고시 5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지구 44개(시행령 별표2)로 382개의 지역·지구가 전 국토에 상호 중첩되어 지정되어 있음

○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위해 비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을 샘플링 한 결과, 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 등 5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 생산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용적률 제한(80% 이하)과 건폐율 제한(20%이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한 등에 더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한이 추가 되며, 축사 건축 시, 주택 부지와의 사육제한거리 확보가 필요함

○ 비도시지역의 농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의 3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 이로인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적률 80%이하와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제한과 함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축사의 입지제한, 농업진흥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 불가) 존재

[표 4-6] 샘플링 위치의 토지이용 규제현황

지역	토지이용 규제 현황	
비도시지역 주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등	생산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비도시지역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등	농림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적 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지구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63개 이외 농어촌 관련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공장 등 설립 제한지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마을정비구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비롯, 환경, 산림, 하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함

○ 토지이용규제와 함께 사업지구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재정지원사업 실행 검토와 농촌특화지구와 사업지구간의 연계를 통한 주거-산업 공간의 분리로 농촌공간의 난개발의 예방,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적 조화 도모가 필요함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방향

○ 농촌특화지구는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미래수요(중심지, 개발가능성)의 대응과 농촌특화지구 간 연계를 고려한 지정이 필요함

○ 수립지침 상, 농촌마을보호지구는 `향후 10년의 중심지 또는 거점 마을(기초거점, 하위거점 마을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은 `마을` 단위의 검토가 필요함

-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전라북도 농촌마을 기초통계 작성연구[9]도 내 자연마을은 6,896개임

[표 4-7] 전라북도 마을 현황

(단위 : 개, ㎢)

시군별	조례		개소 및 평균면적				
	법정리	행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평균 개수
			개수	평균면적	개수	평균면적	
합계	1,460	5,200	5,197	1.7	6,896	1.4	1.33
군산시	73	339	339	0.86	409	0.72	1.21
익산시	114	584	581	0.74	615	0.71	1.06
정읍시	141	555	555	1.03	670	0.85	1.21
남원시	157	341	342	2.04	426	1.64	1.25
김제시	121	539	543	0.86	734	0.64	1.35
완주군	106	533	529	1.54	682	1.20	1.29
진안군	77	309	309	2.55	389	2.03	1.26
무주군	48	150	150	4.20	281	2.24	1.87
장수군	73	206	206	2.58	278	3.81	1.35
임실군	131	259	257	2.32	451	1.32	1.75
순창군	131	308	308	1.62	396	1.26	1.29
고창군	189	564	565	1.09	991	0.62	1.75
부안군	99	513	513	0.95	574	0.85	1.12

자료 : 임승현, 이중섭, 황영모, 김수용. (2021). 전라북도 농촌마을 기초통계 작성 연구, 전북연구원

9) 임승현, 이중섭, 황영모, 김수용. (2021). 전라북도 농촌마을 기초통계 작성 연구, 전북연구원

○ 농촌특화지구 정책은 정주환경 개선, 가치 있는 농촌 자원보전과 활용, 난개발문제 대응 등 농촌마을보호지구 중심의 농촌공간계획의 입지검토를 우선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에 대한 검토의 선행이 필요하며, 경관농업·농업유산 지구는 마을보호지구와 중첩 지정, 산업관련 지구의 마을보호지구와의 이격거리 설정 등의 공간적 분리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표 4-8]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방향

구분	내용
운용 관리 방향	(1) 농촌마을보호지구는 향후 10년의 중심지 위상, 인구추이, 잠재력, 토지이용 수요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장, 유지, 보전, 회복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주민요구, 마을 정주환경 보전활동 등을 포함하여 전략을 제시한다. (2)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가능지역에 대해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 가능지역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을 제시한다.
공간적 관계	(1)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는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능적 분리 및 재배치, 농촌 토지이용의 효율성, 다양한 농촌특화지구 간 상호조화와 연계를 고려 (2)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공장, 농촌위해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지정한다. (3) 농촌특화지구는 5장의 부문별 계획 중 주거·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제공, 농촌환경관리시설 정비 부문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4)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유관사업의 사업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계획 실현	(1)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특정건축물의 입지제한이 발생할 경우,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시설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2) 농촌환경관리시설의 이전·집단화를 위해 국비를 활용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총사업비(매칭지방비 포함) 이외에 지방비(매칭지방비 제외)를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지침(안)

3.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 및 방법

가.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

1) 농촌마을보호지구

○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생활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중심지 또는 거점 마을(기초거점, 하위거점 마을 등)이나 장래에 정주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주민들이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마을을 우선으로 일정한 완충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함(농림축산식품부, 2024)

○ 현 법령체계에서 농촌마을지구 완충지역에 설정에 대한 방법과 거리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500m(조례에 따름) 완충지역 설정, 행위기준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지침에서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함에 따라 주택과 함께 대지의 경계를 완충지역의 시작점으로 설정 필요

[그림 4-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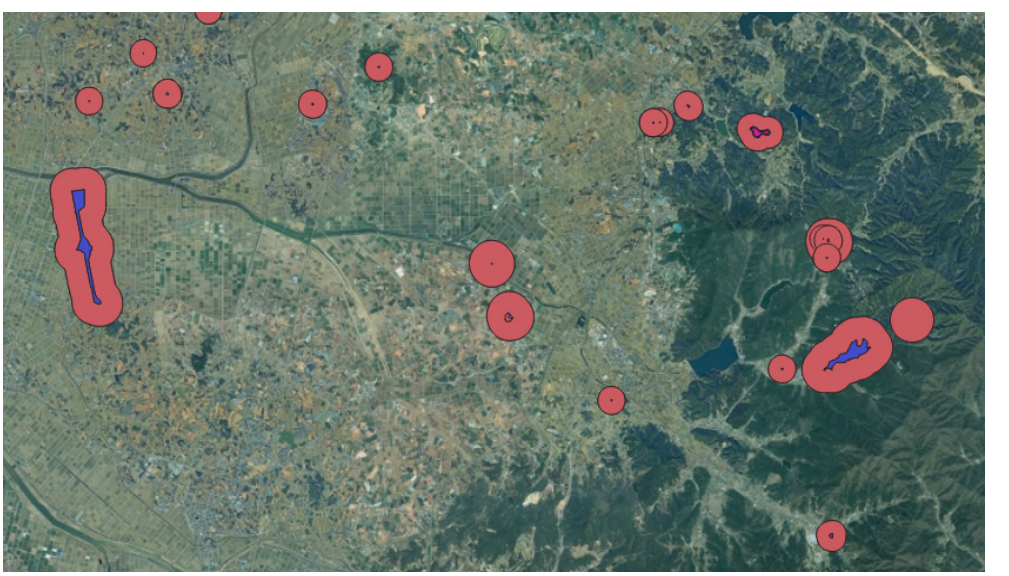

○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집단화된 주거지역으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가능

- 각 지자체 별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율과 건폐율 등에 차이가 있으며, 자연취락지구[10]·빈집우선정비구역[11] 등으로 지정된 경우, 용적율 및 건폐율에 완화가 적용됨으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표 4-9] 농촌마을 보호지구 지정 기준

종류	지정기준 및 요건,
시행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나. 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계는 도로·지형·지물(地物)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가급적 마을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 신규 주거지 수요와 농촌위해시설의 근거리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설정할 것
기본계획수립지침 지정 지역	①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으로 농촌위해시설, 난개발 시설의 입지를 예방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보건·교육 등) 및 도농교류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구 유입 등으로 장래 정주 기능을 유지하여 농촌공간 재생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②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특성을 지닌 농촌마을의 가치와 자산의 보호, 회복을 위해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 기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군수가 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기본계획수립지침 지정 요건 (모두 충족)	① 「국토계획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①)** ② **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②)** ③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계는 도로·지형·지물(地物)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가급적 마을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 신규 주거지 수요와 농촌위해시설의 근거리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설정할 것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지침(안)

[표 4-10] 정읍시 용도지역 별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구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계획		
용적률	80%이하	100%이하	100%이하	80%이하	80%이하	100%이하	80%이하	80%이하
건폐율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40%이하	20%이하	20%이하

10)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

11)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24. 7. 3.)으로 인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적용 가능

○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건축과 관련된 행위제한 규제는 현재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농촌마을마을보호지구와 성격이 유사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와 성격이 유사, 자연취락지구보다 강한 건축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 가능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입지 제한 등이 예상됨에 따라 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적용 필요

[표 4-11] 자연취락지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건축 가능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국계법 시행령	4층 이하 건축물, 조례를 통한 층수 추가 제한 가능 가.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 한정)은 제외한다] 라.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한정) 바.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제23호의2의 국방 · 군사시설 자.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제25호의 발전시설
자치단체 조례 (추가허용)	4층 이하 건축물, 조례를 통한 층수 추가 제한 가능 가.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나. 제4호아목 · 자목 ·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 한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제6호의 종교시설 마. 제7호의 판매시설 바.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 타.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농촌산업지구

○ 농촌산업지구는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임업용 시설 등 소규모 산업시설을 이전·집적화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산업 육성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함

-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농업(스마트농업시설, 수직농장 등)의 집단화로 주변 지역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농촌산업 육성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의 기반 마련이 가능한 지역

- 농촌산업지구는 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녹지지역(농업용시설로 한정)), 관리지역, 농림지역일 경우 지정가능하며 지정 최소면적은 30,000㎡ 이상

[표 4-12] 농촌산업지구 지정 기준

종류	지정기준 및 요건,
시행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 시설을 집적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 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이전(移轉) 및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기본계획수립지침 지정 지역	①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농업(스마트농업시설, 수직농장 등)의 집단화로 주변 지역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농촌산업 육성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의 기반 마련이 가능한 지역
기본계획수립지침 지정 요건 (모두 충족)	① 「국토계획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 시설을 집적화하는 경우로 한정 ②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 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이전(移轉) 및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③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④ **농촌산업지구는 30,000㎡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지침(안)

○ 농촌산업지구 내 입지 가능 건축물은 ①제조업소 등, ②공장, ③물류시설, ④판매시설, ⑤정부관리양공 가공·처리 시설임

[표 4-13] 농촌산업지구 설치 가능 시설

종류	설치 가능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너목 **① 제조업소 등**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② 공장**	「건축법」 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물류시설**	가. 화물의 운송 · 보관 · 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 · 보관 · 하역과 관련된 가공 · 조립 · 분류 · 수리 · 포장 · 상표부착 · 판매 ·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 ·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농지법」제32조 제1항 제1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업·연구시설**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 위임, 「농지법 시행령」제2항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①)**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②)**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④)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 · 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 · 선별 · 보관 및 가공 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 · 처리하는 시설(⑤)**로서 그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농수산업 관련 시험 · 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 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축산지구

○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고 농촌마을 인근의 축산시설로 인한 양호한 생활환경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전,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함

-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지정가능, 최소면적은 30,000㎡ 이상임
- 축산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이격거리 확보 필요

○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의 시설을 친환경 또는 현대적 시설로 개수·보수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축산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 토록 하여 농식품부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지구로서의 성격을 가짐

[표 4-14] 축산지구 지정 기준

종류	지정기준 및 요건,
시행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나.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축산물 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다만, 가축 사육시설 및 축산물 가공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의 시설을 친환경 또는 현대적 시설로 개수·보수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축산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기본계획수립지침 지정 요건 (모두 충족)	① 「국토계획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②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축산물 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다만, 가축 사육시설 및 축산물 가공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의 시설을 친환경 또는 현대적 시설로 개수·보수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축산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 ③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④ **축산지구는 30,000㎡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지침(안)

○ 축사 등으로 인해 오염 및 민원 발생지역에서 축사이전이 완료된 마을은 농촌마을 보호지구 지정하여 정주성 확보와 연계를 위한 농촌특화지구 연계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축산지구 입지 가능 시설은 ①축사, ②가축시설, ③도축장, ④도계장, ⑤동물원을 제외한 비슷한 시설, ⑥자원화시설, ⑦정화시설, ⑧처리시설과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입지가 가능함

○ 축산지구의 경우,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6차 산업화를 위한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향후 6차산업화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과 연계 검토가 필요함

[표 4-15] 축산지구 설치 가능 시설

종류	설치 가능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관련시설	가. **축사(①)**(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②)**[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③)** 라. **도계장(④)**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관리 등 시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⑥)**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⑦)**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⑧)**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⑨)**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지침(안) 및 관련 법령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을 집약적으로 조성하여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관광 확대 등을 위해 지정함

○ 설치 가능 시설은 ①농업생산, 제조·가공·유통·관광 등의 시설과 ②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①농업생산, 제조·가공·유통·관광 등의 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표 4-16]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기준 및 설치가능 시설

종류	지정기준 및 요건, 설치가능 시설
시행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나.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생산, 제조·가공 및 유통·관광 등의 시설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다. 제조·가공 공장 또는 농촌위해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기본계획수립지침 지정 요건 (모두 충족)	① 「국토계획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②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생산, 제조·가공 및 유통·관광 등의 시설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③ 제조·가공 공장 또는 농촌위해시설을 포함시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④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30,000㎡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설치 가능 시설	① 농업생산, 제조·가공·유통·관광 등의 시설 ②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지침(안)

5) 재생에너지지구

○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촌마을과 산지 인근에 재생에너지 관련시설이 소규모,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양호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 영농기반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전,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위해 지정함

[표 4-17]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기준 및 설치가능 시설

종류	지정기준 및 요건, 설치가능 시설
시행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일 것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기본계획수립지침 지정 요건 (모두 충족)	① 「국토계획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②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일 것 ③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④ <u>재생에너지지구는 50,000㎡ 이상의 면적</u>으로 지정
설치 가능 시설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② 재생에너지를 생산, 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③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지침(안)

6) 경관농업지구

○ 농촌의 농업생태, 지형, 경관, 환경적 특성 보전을 통한 농촌다움 가치 증진과 일상적 농촌경관 회복 등 농업·농촌 경관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지정함

○ 경관농업지구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농지의 우선적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 범위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수준의 범위와 규모를 가진 지역과 그 일대(농촌마을보호지구 포함)에 동종유사작물을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4-18] 경관농업지구 지정 기준 및 요건

종류	지정기준 및 요건,
시행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나. **경관작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을 말한다)**을 집단화하여 재배하는 농경지 및 그 주변 지역(①)**으로서 우수경관의 관리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일 것. 이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수립지침 지정 지역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의 대상지역에서 정하는 동종유사 작물의 범위 등 지정범위, 지정규모,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준하는 곳(②)** ② 경관보전직불지역 일대 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주변의 구릉, 수계 등을 포함한 농지로 지자체 또는 주민이 **동종유사작물 집단화에 따른 우수경관으로 관리·개선하고자 하는 곳(③)** ③ 주거지, 농지, 하천 등의 환경을 관리하여 농촌마을과 **농업경관을 연계하고 농촌다움을 향상시키고 가치를 증진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곳(④)**
기본계획수립지침 지정 요건 (모두 충족)	① 「국토계획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② 경관작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을 말한다)을 집단화하여 재배하는 농경지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우수경관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일 것. 이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정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지침(안)

7) 농업유산지구

○ 농업유산지구는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농업·생태·지식·문화·경관적 보전가치가 큰 농업유산의 집중적인 관리를 통한 농촌다움의 가치 증진을 위해 지정함

○ 지구지정 요건은 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②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③ 또는 그 밖에 농업적 · 생태적 · 지식적 · 문화적 ·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가능함

[표 4-19] 농업유산지구 지정 기준 및 요건

종류	지정기준 및 요건,
시행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①)**, **세계중요농업유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재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말한다] **지정지역(②)**, 또는 그 밖에 **농업적 · 생태적 · 지식적 · 문화적 ·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③)**일 것 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핵심자원이 분포한 지역 또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와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범위의 지역일 것
기본계획수립지침(안)	① 「국토계획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또는 그 밖에 농업적 · 생태적 · 지식적 · 문화적 · 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③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핵심자원이 분포한 지역 또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와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범위의 지역일 것 ④ **주거지, 농지, 하천 등의 환경을 관리하여 농촌마을과 농업유산을 연계하고 농촌다움을 향상시키고 가치를 증진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곳**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지침(안)

나. 농촌특화지구 지정 방법

▌ 기본 원칙

○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은 법과 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후보군을 제시하도록하고 있으며 필요성, 여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 방법을 활용토록 하고 있음

- 객관적 방법에 대한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별표를 통해 '지정 가능지역 검토'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별표에서 제안하고 있는 검토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이 수립될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별표3]은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비율 변화율, 농촌 환경관리시설 개수 분포, 공시지가 변화율, 주택호수를 기본으로 고령화율,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빈집, 건축물 노후도 등을 활용토록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강제적 조항이 아니며, 시군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 따라 적정지표를 검토·선정, 공간분석을 통한 지정 가능지역 도출이 필요함

- 예) 시군 기본계획 비전이 '청년 및 생활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춘 지역은 청년인구 및 생활인구 등을 선정기준으로 적용

[표 4-20]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본원칙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
6-3-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1) 시장·군수는 시·군의 농촌공간구조 재편 방향에 따라 이전·철거·집단화, 정비 또는 유지·보전이 필요한 공간관리 대상을 정하고 관련 법과 계획,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략적인 위치와 후보군을 정하여 제시한다. 다만, 후보군을 공개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에 따라 후보군을 정할 때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필요성, 지역 여건, 시군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3]을 참고하여 시·군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농촌특화지구 지정 후보군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정 필요성, 시급성, 지정 가능성, 현행 용도지역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토지이용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4) 주민협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토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가능 지역 검토 방법

○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가능지역 검토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주거지(주거용 건축물), 생산가능인구, 농촌위해시설, 토지이용(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현황, 공시지가 자료를 DB화하여 GIS 프로그램을 활용 격자 데이터 생성·분석을 통해 지정 가능지역을 도출함

○ 농촌마을보호지구는 ①생산가능인구비율 변화율, ②농촌환경관리시설 개수, ③토지이용 변화율에 대한 격자 데이터를 중첩하여 겹치는 격자를 도출, 후보지역을 선정함

- 추가기준으로 가구수, 고령화율,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빈집, 건축물 노후도 등을 검토하여 지정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 가능지역 검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별표3〕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 가능지역 검토

1. 농촌마을보호지구

◇ 시·군의 농촌지역을 격자(100×100m~500×500m)로 나누어, 시·군의 특성에 맞는 선정기준값(생산가능인구비율 변화율, 농촌환경관리시설 개수 분포값, 공시지가 변화율, 주택호수)을 격자에 표시 후 모두 해당되는 지역을 최종 후보군(지정가능지역)으로 도출

(1) 시·군 전체 또는 시·군의 농촌지역에 대해 격자정보(100×100m~500×500m)를 구축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시·군 전체에 대한 격자정보를 구축하여 활용해도 된다.

(2) 시·군의 농촌지역을 대상(시·군 전체도 무관)으로 선정기준(생산가능인구비율 변화율, 농촌환경관리시설 개수 분포, 공시지가 변화율, 주택호수)별 평균값, 중위값, 최대값, 최소값, 25%값, 50%값, 75%값, 개수 등을 도출한 후 읍·면 간 편차와 격자별 특성을 파악한다.

(3) 시·군의 특성에 맞게 후보군 도출에 적합한 기준(예: 생산가능인구비율 변화율 중위값, 농촌환경관리시설 개수 75%값 이상, 공시지가 변화율 중위값 이상, 주택호수 등)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을 추가(예: 고령화율 등)할 수 있다.

〈 선정기준 〉

① 생산가능인구비율변화율 : 최근 일정기간(예: 최근 10년)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변화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격자

*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시·군 전체 또는 읍·면 인구(최근 10년)

※ 생산가능인구만으로 정보의 왜곡이 심한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전체 인구수, 고령화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인구비율변화율 등으로 선정기준 대체 가능

② 농촌환경관리시설 개수 분포값 : 시·군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 전체의 개수를 파악한 후 100개 구간으로 배분(관리시설 1개~전체 개수까지) 후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분포값(예: 평균값,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 가능지역 검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별표3〕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 가능지역 검토

중위값, 75%값)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선정기준 이상인 격자를 모두 추출한 것으로 농촌환경관리시설이 많이 분포하는 격자

③ 공시지가 변화율 : 최근 10년간 공시지가 변화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격자, 필요한 경우 기타 토지이용 변화율 지표(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건수 등)를 추가 분석 가능

※ 시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토지이용 분석결과를 활용 가능

④ 주택호수 : 농촌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마을의 최소 주택호수(예: 30호이상)

⑤ 추가기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고령화율,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빈집, 건축물 노후도 등

(4) 4개의 선정기준(①+②+③+④)이 겹치는 격자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가능지역으로 도출, 필요시 ⑤와 같은 추가기준을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의 후보군을 도출한다. 단,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5)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가능지역은 인구, 농촌환경관리시설,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정주여건 보호를 위해 토지이용 재배치와 관리가 시급한 농촌마을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6)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규모를 설정할 때에는 주변 여건,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접하는 격자는 연계하여 지구의 규모를 설정한다.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 가능지역 도출 예시

(1)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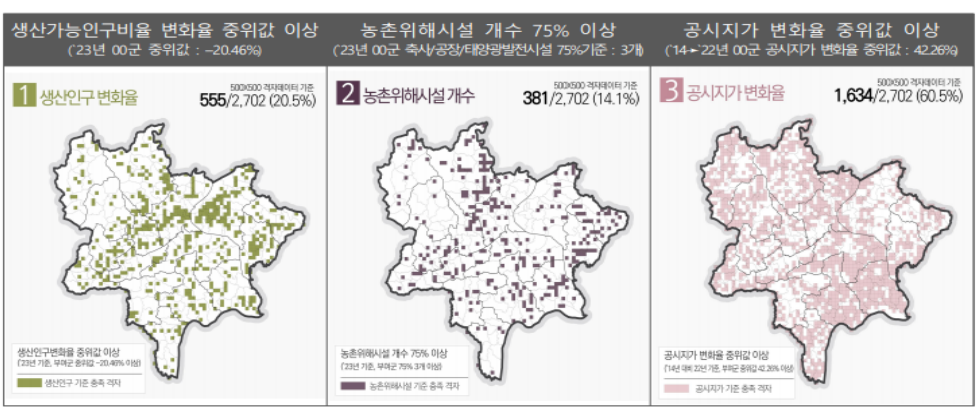

(2)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군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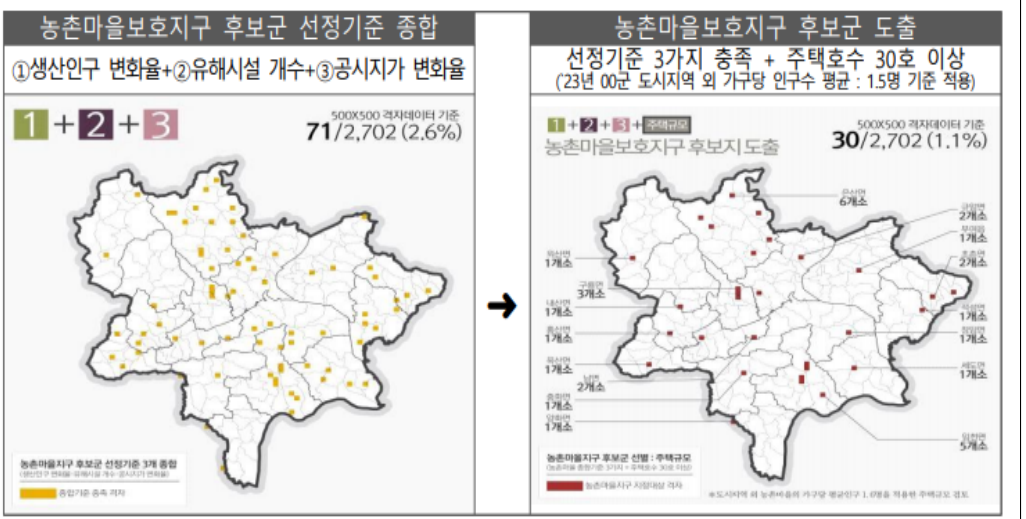

(3)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가능지역(안)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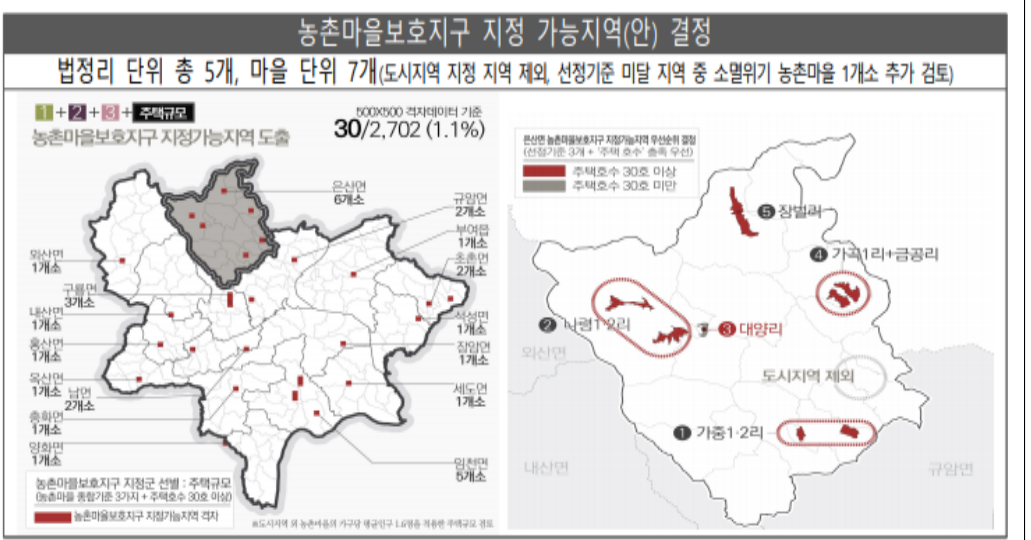

▌ 입지적정성 검토 :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 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가능지역 검토는 각 지자체의 주거지(주거용 건축물), 도로, 하천, 농지, 위해시설, 법적 입지불가지역(녹지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익용산지, 생태자연도 1등급, 시군조례로 정한 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를 DB화 GIS를 통한 중첩분석이 필요함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검토 가능지역 검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별표3〕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 가능지역 검토

◇ 지정가능 후보군 도출을 위해 입지적정성*을 검토하여 보호요소(주거지, 도로, 하천, 농지)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대해 등급화한 후 등급별로 입지가능 여부를 결정, 후보지 도출

* 입지적정성: 농촌마을 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이하 '농촌마을')의 정주성 보호를 위한 보호요소별로 특화지구와의 적정한 공간적 근접관계를 파악하여, 적정한 입지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정하는 것을 의미

(1) 시·군 전체 또는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아래 표에 따라 각 보호요소별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점수화한 후 합산점수를 구하여 등급화한다.

* ① 주거지: 건축물대장 상 주택의 외곽경계선 ② 농지: 농업진흥구역과 경지정리 전·답(토지피복 또는 팜맵에 따름)의 경계선, ③ 도로: 지방도 이상 도로 경계선 ④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과 「소하천법」의 소하천구역 경계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보호 요소	세부 요소	점수 0점	1점	2점	3점	비고
주거지	건축물대장상 주택	0~50m	50~350m	350~500m	500m~	
농지	①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0~100m	100~200m	200m~	①과②동시 고려
	② 경지정리도 (토지피복도 상)	경지정리 전·답				
도로	① 지방도 이상	0~30m	30~100m	100~200m	200m~	②는 필요시 고려 가능
	② 리도	-	0~100m			
하천	① 하천구역	하천구역	0~200m	200~500m	500m~	①과②동시 고려
	② 소하천구역	소하천구역	0~100m	100~350m	350m~	
합산점수		0점	1~4점	1~4점	1~4점	

점수구간	0	1~2	3~4	5~7	8~9	10~12
등급	0	1	2	3	4	5
입지판단 유형	입지배제		입지조정	입지관리	입지허용 가능	

※ 예) 주거지는 건축물대장 상 주택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0점은 0~50m 구간, 1점은 50~350m 구간, 2점은 350~500m 구간, 3점은 500m 이상으로 한다

(2) 보호요소별 합산점수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입지배제, 입지조정, 입지관리, 입지허용 가능으로 분류하고, 관련법과 조례로 정하는 법적 불허지역은 추가로 제외하고 검토한다.

등급	입지판단 유형	입지적정성 결정
0	입지배제	정주성 보호가 우선하는 지역으로 관리
1		
2	입지조정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가능여부를 결정
3	입지관리	지구 지정수요와 주민 및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토지이용의 입지를 허용
4	입지허용 가능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을 지정하기 위한 개발여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련시설의 토지이용을 허용
5		

(3) 지정가능지역을 검토할 때에는 입지적정성 결정 결과, 농촌마을과의 거리, 개발가능성, 진입로 개설 여건, 경작 활동 피해 여부, 주변 문화·관광·공공시설 등과의 이격 정도,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등과 아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① 농촌 주민들이 생활활동 및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을 고려

② 규모는 농촌마을로부터 해당 시설의 이전·재배치 수요 등에 따른 이전시설의 규모와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정하고, 지구 경계에 최소 완충영역 설정가능

(4) (1)에 따른 검토에서 해당 지구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부족한 경우 지역여건, 토지이용 관리 필요성, 예외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요소, 거리구간, 0~1등급 이외의 등급 점수, 가중치 적용, 입지배제 이외의 입지판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서에 충분한 사유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다.

○ 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가능지역 검토는 각 지자체의 주거지(주거용 건축물), 도로, 하천, 농지, 위해시설, 법적 입지불가지역(녹지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익용산지, 생태자연도 1등급, 시군조례로 정한 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를 DB화 GIS를 통한 중첩분석 실행 후, 점수에 따른 등급분류를 수행함

- 입지가능 지역검토 이후 각 지구의 특성 및 기존 지역의 여건, 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 사업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거점 및 배후지, 산업, 문화·생태자원, 관광(체험, 휴양, 숙박, 6차산업 등), 교통에 대한 지역현황과 축산, 재생에너지 등의 위해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 가능지역 도출 예시

1. 입지적정성 검토기준(기본형)을 적용하고 법적 입지불가지역 제외

보호요소를 기준으로 입지적정성 등급화
(보호요소: 주거지, 농지, 도로,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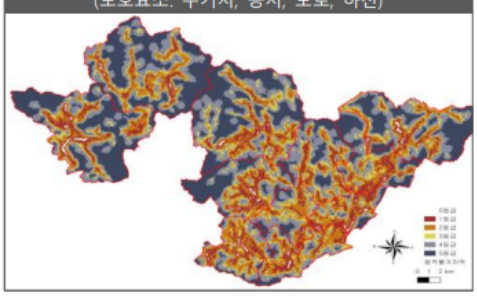

법적 입지불가 조건 제외
(녹지 외 도시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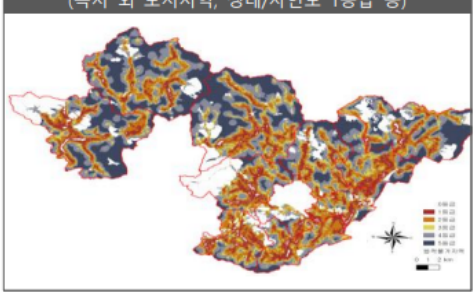

①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기본형의 보호요소, 거리구간, 점수 및 등급을 원용하여 시군 전체 적용을 통해 입지적정성을 등급화하고, 법적 입지불가지역(녹지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익용산지, 생태자연도 1등급 등)을 제거하여 0~5등급별 개략적인 면적(아래)을 파악, 읍·면 간 편차 등, 보완할 사항을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을 유연화하여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기준을 정한다.

읍/면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법적불가	총면적
00면	0.38	6.40	13.31	9.69	25.97	29.41	6.50	78.66
00면	0.39	5.35	8.96	4.03	6.26	2.56	2.97	24.59
00면	0.46	3.89	9.92	6.01	16.35	20.49	8.84	48.28
00면	0.85	7.08	10.43	6.43	19.01	30.03	13.43	60.40
00읍	0.07	2.41	5.62	3.83	6.60	2.71	13.52	7.72
00면	0.29	4.28	11.99	7.08	23.65	31.71	4.89	74.11

② 등급별로 구분한 후 0~1등급은 입지배제, 2등급은 가급적 입지를 회피, 3등급은 농촌공간계획에서 결정하는 입지관리, 4~5등급은 입지허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시·군 조례로 정한 입지불가지역(예: 경사도 25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 및 토지소유주와 지구 후보군에 대한 합의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기준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2. 특화지구별 입지가능 등급 구분(예시)

입지적정성검토 기준(기본형+법적불가)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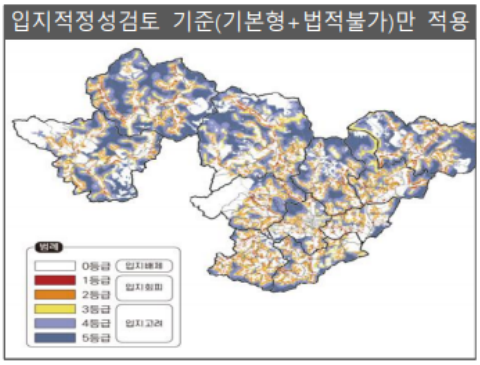

시군조례 입지제한 지역(경사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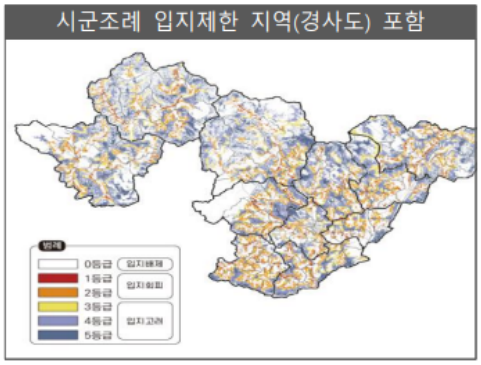

제 5 장

전북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방안

1. 농촌특화지구 적용 여건 검토
2. 농촌특화지구 운영 방향
3. 전북형 농촌특화지구 검토(안)
4.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5장 전북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방안

1. 농촌특화지구 적용 여건 검토

가. 시·군의 농촌공간정책 준비 태세

1) 계획 수립 역량

○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특화지구의 안착은 정책사업추진을 통한 지자체의 계획수립 필요성에 대한 수요 확대와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임

○ 그동안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들이 개별사업 별 공모방식을 취해왔으나 농촌의 종합적 개발과 보존을 위해 농촌협약을 체결을 통해 통합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농촌공간 사업의 주요 실행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 `24년까지 전북자치도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13개 시군이 1회 이상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한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초지자체의 협약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와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표 5-1] 국내 농촌협약 선정 시군 현황

구분	선정 시군
경기(5)	(`20)이천 (`21)안성 (`22)여주 (`23)양평 (`24)가평
강원(6)	(`20)원주, 영월 (`21)평창 (`22)양양 (`23)정선 (`24)횡성
충북(11)	(`20)영동, 괴산 (`21)제천, 음성 (`22)청주, 진천 (`23)보은, 옥천, 단양 (`24)충주, 증평
충남(10)	(`20)홍성 (`21)금산, 청양 (`22)아산, 서산, 부여, 예산 (`23)보령, 당진 (`24)천안
전북(13)	(`20)임실, 순창 (`21)김제, 진안, 무주 (`22)군산, 익산 (`23)남원, 고창, 부안 (`24)완주, 정읍, 장수
전남(14)	(`20)보성 (`21)나주, 화순, 장흥, 강진 (`22)순천, 구례, 해남, 함평 (`23)영암, 영광 (`24)장성, 광양, 담양
경북(21)	(`20)상주 (`21)군위, 청도, 고령, 봉화 (`22)영주, 칠곡, 예천, 울진 (`23)경주, 구미, 영천, 의성, 성주 (`24)포항, 김천, 안동, 경산, 청송, 영양, 영덕
경남(14)	(`20)김해, 밀양 (`21)고성, 산청, 합천 (`22)함안, 창녕, 거창 (`23)창원, 진주, 의령, 함양 (`24)하동, 사천
제주(2)	(`23)제주 (`24)서귀포

자료 : 농식품부 보도자료 및 사업지침서 참고, 연구진 작성

2) 추진 체계

○ 농촌협약 체결에 대한 경험을 통해 도내 시군은 농촌협약 및 공간계획 관련 전담공무원(전문관)제 운영과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계획지원단, 농촌협약지원센터, 농촌협약 추진단,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개조사업 등 개별사업 별 추진위원회, PM단 등이 조직되어 있음

○ 또한, 광역 및 기초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의 중간지원기관과 광역 및 기초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이 생생마을 만들기 및 농촌 관련 다수 사업을 수행, 농촌공간계획·사업 추진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전북자치도 및 지자체는 농촌중간지원조직으로 광역·기초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를 선정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지역협의체, 현장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임

3) 계획 수립 기반

○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의 기초적 전제조건은 농촌공간에서의 다양하고 세밀한 현황자료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현황 진단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현황 분석을 위한 내용, 범위, 분류, 시기 등의 현황조사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승인통계화를 통한 데이터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 전북자치도는 `20년 남원·임실을 시작으로 최소단위 행정구역 및 자연마을에 관한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를 구축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순창군, 무주군을 마지막으로 14개 시군에 대한 기초 공간정보 기반 마련 예정임(임승현,2024)

- 현재 농촌의 공간분석을 위한 DB의 형태와 갱신 주기 등이 상이함에 따라 활용가능한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의 확대를 농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DB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자료 생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DB제공 체계를 구축,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필요

나. 전북자치도의 정책 추진 여건

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 `24년 01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목표로 5대 핵심사업과 3대 기반 특례를 마련함

[그림 5-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비전체계

○ 「전북특별법」이 `24.12.27. 개정 시행예정으로 이에 따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산림복지지구, 핀테크 육성지구 등의 지구지정에 대한 권한과 및 특화발전을 지원할 계획임

[표 5-2] 전북특별법에 따른 주요 특화지구 및 권한 이양 등의 특례

특례	권한 이양 등의 특례 내용
농생명산업지구	지구 내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마을정비구역 지정,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에 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육성, 불이익 주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지정·지원 가능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 이양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보존산지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도립공원 지정 해제, 규모 축소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4대 지구(농생명, 문화산업, 산악관광, 산림복지단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2) 전북특별자도 농생명산업수도 구상

○ `23년 10월 전북자치도는 식품기업 매출액 7조원, 농가소득 6천만원대 진입을 목표로 하여 6대전략 16대 과제를 도출, `26년까지 7조 3,80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들을 추진중에 있음

- 전북자치도는 `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총 200개 사업에 1조 5,904억을 신청하였으며, `24년도에는 `25년 사업으로 1조 7,103억 규모 사업을 신청, 농림축산식품산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그림 5-2]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수도 구상

3) 전북 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추진

○ 전북자치도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소멸예방을 위한 종합적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의해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등을 통합하여 공동체 기반 지역역량 강화와 자립지원을 위한 `전북 농어촌활력재단`의 설립을 추진중으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과 기능강화를 통한 전국 최고의 중간지원조직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임

2. 농촌특화지구 운영 방향

가. 농촌마을보호지구

▌고려사항

○ 농촌마을보호지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국토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읍면 중심지 이외 지역인 2~4계층의 기초거점-배후마을 대상의 배후지역 정주성 확보를 위한 추가트랙으로써의 역할을 수행이 필요함

- 읍면소재지에 있어 농촌마을보호지구는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지 불허, 농촌지역의 압축개발에 대한 수요 증가 등 향후 농촌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제약할 수 있어, 중심지-기초거점-배후마을의 농촌체계에 중심지역은 제외하고 기초거점-배후마을 대상 우선 검토가 필요

- 이와 반대로 시가화 지역(중심지)에 인접해 있는 마을의 경우, 난개발 방지 목적의 활용 가능

- 중심지(1~2계층), 기초거점-배후마을(2~4계층)에서는 중심지역과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진 지역 중 개발행위 추세 등을 고려한 '정주권 보호'가 필요하며 전원마을·귀농귀촌인마을 조성사업 등 신규로 개발된 마을에 대한 '정주권 유지'에 대한 장치로 활용 가능

▌운영 방향

○ 농식품부는 `24년 7월 「농어촌정비법」개정을 통해 `농촌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에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특례를 부여하는 등 농촌특화지구를 농식품부 주요 사업의 특례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농촌특화지구 정책의 초기 단계로서 무분별한 지구지정은 향후 마련될 특례 및 완화, 추가규제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광역 및 기초 단체는 농촌특화지구의 적극적 지정보다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여 나가는 것을 제안함

○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은 기존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 계획·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취락지구 등 농촌마을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와 중복 지정되어 서로 상반되는 이중적 지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함

○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농촌마을의 정비와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사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며, 실행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이후 지구지정이 필요함

나. 산업 관련 지구

▌ 고려사항

○ 산업관련 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어네지지구)는 해당 지구 관련 산업의 밀집 현황, 주민들의 수요, 정책사업의 결정지역(단지·지구 등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이 예정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구 지정이 필요함

- 산업관련 지구의 지정목적은 관련시설의 이전·집적을 통한 농촌산업 육성과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으로 하며, 집단화를 통한 관련산업의 이익이 클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

○ 관련 시설의 입지에 대해 관련 개별법·조례 등을 통해 계획수립·입지 선정, 사업계획(실시, 관리), 관리계획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이루져, 기본계획 및 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지침 [별표3]입지적정성 검토 결과의 정합성, 산업 관련시설의 입지로 인한 주변 주거지, 농촌마을보호지구, 경관지구, 농업유산지구의 가치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운영 방향

○ (농촌산업지구) 국내 농촌산업관련 공간계획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① 기존 시설이 밀집 지역이나 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산업단지로 계획·지정·운영 하는 경우, 2가지 유형 분류가 필요함

- ① 기존 시설이 밀집 지역이나 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니 아니하는 경우 : 시설이 밀집된 공간에 인접 마을의 산업시설의 이전 또는 신규시설의 입지 유도 2가지 형태의 목적성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접 마을의 시설 이전에 대한 소유주 및 임차인의 동의, 신규시설 계획 및 수요 기반 지구지정 필요

- ② 산업단지로 계획·지정·운영 하는 경우 : 주변 마을의 산업시설의 이전 및 신규 수요 기반, 농촌특화지구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산업단지의 확대·재생과 연계,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확장 필요

○ 농촌산업지구 지정 요건은 최소 3만㎡로 설정되어 있어 산업단지의 지정 규모에 해당함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단계적으로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어, 관리지역에서의 입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3년까지 시행되었던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 지원사업(농식품부)`을 농촌특화지구로 도입, 기존 기반(생산, 영농, 축산, 관광자원)을 활용한 농촌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집약 조성`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지역자원 중심의 집적화 가능성과 기입주·입주예정 사업자가 공동체를 통한 운영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기존 공동체(경영체)의 운영현황에 대한 검토 필요

- 위해시설 포함 시, 농촌마을보호지구와의 이격여부를 검토해야하며, 위해시설(공장, 제조업체)집적화로 산업단지 지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외 농업생산과 자원을 기반으로 할 경우, 경관·농업유산지구 등과 동시 지정 검토

○ (축산지구) 현재 축산업계는 지자체의 가축사유제한구역의 확대로 인해 ICT단지, 스마트복합단지 등을 제외하면 신규 축산시설의 입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읍면 내 주거지 외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 내 축사를 이전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함

- 축산지구의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정하며,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를 확인하여 이격거리, 주민동의 등의 규제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군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공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완화 내용을 추가 검토 또한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주거지 외 기존 밀집지역 또는 사업계획 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고 주민 또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수요를 조사하여, 추가 수요를 반영한 재생에너지지구 운영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재생에너지지구에 대한 우선 사업 지원 등, 농촌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 산발적 설치 예방 성격의 운영이 필요함

다. 경관농업지구

▌ 고려사항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경관농업지구는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어, `농촌관광자원 육성`이 지구지정의 목표임

○ 최근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경관농업 계획 수립,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소 재배면적 규정(무주, 3ha), 재배작물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3년 기준 전북자치도 내 견광보전직접지불 사업지구는 304개소로 68.34㎢에 유채,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헤어리베치, 자운영, 호밀, 메밀, 사료작물 및 목초 등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음

[표 5-3] 전북특별자치도 경관보전직접지불 사업지구 현황(2023)

시군	지구	면적(㎢)	농가수	주요 경관작물
고창군	37개	12.5	945	유채,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헤어리베치
군산시	17개	5.7	536	자운영, 헤어리베치, 유채, 보리
김제시	26개	9.5	481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헤어리베치
부안군	111개	20.5	1,539	유채, 헤어리베치,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순창군	32개	5.5	706	자운영, 헤어리베치, 메밀, 유채,
익산시	77개	14.4	997	유채, 헤어리베치,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장수군	1개	0.05	1	사료작물 및 목초
정읍시	1개	0.04	2	유채, 메밀
진안군	2개	0.15	3	사료작물 및 목초

자료 :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경관보전직불 사업지구

○ 전북 내 경관보전직접지불 지구는 겨울철에 집중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군산시 십자뜰의 경우, 4,016,742㎡에 걸쳐 헤어리베치를 식재함

- 주로 동계작물 위주로 재배되고 있어, 4계절 농촌관광과을 위해서는 하계, 동계·하계 작물로의 경관작물의 확대 노력 필요

▌운영 방향

○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 상,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우선으로 하며 경관작물 집단 재배하는 농경지와 그 주변지역을 다음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지자체 내의 경관농업지구 지정이 필요함

○ 또한, 농촌관광 육성을 위해 특화지구와 연접하여 체험장, 체험농장, 농촌 체류형 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등의 관련 정책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함

○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이외의 대상(소득 수준, 경관작물이외 품종의 경작)을 통해 타 경관농업지구와의 차별성 마련이 필요하며 지원대상 확대(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한 경관농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의 경우 '경관보전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경관보전 특화단지를 선정 지원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경관농업지구 확대를 위해 특화단지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포함 제안

○ 선정기준 변경(안)

전북특별자치도 경관보전 특화단지 대상지구 선정기준

점검항목	배점비율	배 점 기 준	점수
계획성	10점	◇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계획에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농촌재구조화 관련 계획(추가)**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10점 5점 1점
우선선정대상	가점	◇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단위 지역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작물재배지구,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금·은·동상 수상마을 **농촌재구조화 시행계획에 따른 경관농업지구(추가)**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마을, 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마을	20점 10점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경관보전특화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라. 농업유산지구

▌ 고려사항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수립지침에 따라 농업유산지구는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유무형 농촌자원, 농업적·생태적·지식적·문화적·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보전·관리·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재, 국가생태탐방로, 생태관광지,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문학적 의미를 가지는 지역 등으로 확대 조사 필요

○ 전북자치도는 `20년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조사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과 지자체 조사 등을 통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

[표 5-4]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유산 현황

시군	유산 명칭
고창군	동림 저수지, 다랑이논(구들장, 고수면 은사리), 백합채위어엄, 인천강 뱀장어 독살어업
군산시	통수식 배수갑문(만경강 수리시설)
김제시	벽골제 (백제시대 저수지)
남원시	남원목기, 다랑이논, 남원 사직단
부안군	[지정]전통양잠업, [지정]곰소 천일염업, 걸대(백합, 바지락, 굴 등의 저장)
완주군	[지정]봉동생강(저장굴), 송화 백일주, 호남평야 전통관개 시스템
익산시	야생차 군락지, 대나무숲
임실군	필봉농악, 다랑이논, 임실치즈, 삼계 박사골 옛날쌀엿, 장제무림
정읍시	섬진강 상류계 수리시설(동진강 발원지), 만석보터(고부)
진안군	마을숲

자료 :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조사 및 관리 기본계획(2020) 및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참고.

○ 시범수립 지역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지정기준을 일부 충족하는 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반으로 검토함

○ 기본계획수립 지침 [별표 3]에 따라 후보군 우선순위 선정 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제시하고 있어, 도·시군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검토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여부 확인필요

[표 5-5]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항목	세부 기준
1. 국가중요농업유산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 · 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2. 국가중요어업유산	
식량생산 및 생계유지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보존·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것
지식체계	어업유산 관련 고유한 경험·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전통문화	어업유산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어업문화 및 사회조직을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경관형성	어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경관이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것
역사성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어업활동으로 현재에도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자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2]

▌ 운영 방향

○ 계획 수립 시, 지역 내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별도의 유무형에 걸친 농업적·생태적·지식적·문화적·경관적 유산을 지역주민 조사, 문헌조사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함

○ 농업유산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농업유산 인접 위해시설에 대해서는 타 산업 관련 농촌특화지구와의 연계를 통한 이전 및 관리 방안 강구 필요

마. 시행계획 수립 이외 지역 운영 방안

○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계획 수립 이외 지역은 농식품부의 농촌특화지구 사업(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한 농촌공간의 정비 도모가 필요함

○ 시군은 농촌특화지구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정책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수요, 사업을 연계하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관련 정책 시행 초기로 수시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내용 및 구성이 변경되고 있어, 시군은 중앙부처의 정책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및 사업계획 수립 필요

농촌특화지구사업(농촌공간정비사업) (안)

○ 유형 : 성장형특화지구(산업형지구+마을보호지구), 유지형특화지구(경관·유산지구+마을보호지구)
○ 지원내용 : 배후마을과 사업지구를 연계하여 기반조성 및 필수시설 지원
○ 규모 : 개소당 평균 50~180억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세부항목		지원사업(예시)	
기반 조성	①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소공원, 공간재구조화를 위한 부지매입 등	
	②공동이용시설	농촌마을보호지구	체류형 체험·관광·교육 시설, 고령친화·문화·예술·치유 등 농촌특화 요소 개발 및 설치, 마을보호시설 조성, 보건·교육 등 주민생활 필수시설 설치
		농촌산업지구 및 융복합산업지구	공동주차장, 제조판매체험 공동인프라, 공동연구시설, 공동 오폐수 처리장, 악취감소 처리장치
		축산지구	공동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 축사이전 이전 재배치 사업비, 공동이용 사육시설, 진입로 차량소독시설 및 출입통제시설 등
		재생에너지지구	위험차단시설(펜스), 통합관제, 도로정비, 산사태방지시설 등
		경관농업지구	산책로, 출입제한 시설 등
		농업유산지구	안내소, 공동 사업화(관광·유통 등)시설 등
역량 강화	① 교육 및 주민홍보	특화지구 육성과 농촌재구조화에 대한 교육,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② 협의체 운영	각종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각종협의체 운영비	
	③ 계획수립	의견수렴(자문, 컨설팅 등) 계획수립은 지방비를 선집행하고 특화계획 등 수립을 위해 소요된 비용 일부 지원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경관보전특화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3. 전북형 농촌특화지구 검토(안)

가. 「전북특별법」 특례지구 내용 검토

○ 「전북특별법」을 통해 지정 가능한 특례지구는 아래 표에서 와 같이 6개 지구이며, 이중 농촌특화지구와 연계 가능 특례지구는 농생명산업지구, 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4개 지구임

○ `24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는 각 특례지구 별 시행 및 지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 `25년 내 4개 유형의 특례지구를 선정할 계획임

[표 5-6]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지구 지정목적 및 내용

특례	지정목적 및 내용
농생명산업지구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 도모 -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마을정비구역 지정·농지전용허가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특례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공공주도 신재생에너 발잔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육성, 불이익 주변(반경 5km이내)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지정·지원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전북자치도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 활성화 - 보존산지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 산림복지지구 지정·해제 권한 이양, 도 특화사업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 · 연구개발 · 인력양성 · 공동제작 등을 장려·촉진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특례
핀테크육성지구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 · 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 집적
도립공원 지정 해제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규모 축소 권한 이양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특례	4대 지구(농생명, 복합단지, 문화산업, 산악관광)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북특별법 및 위임 법령 내용 참조.

나. 농생명산업지구 연계 방안

1) 농생명산업지구의 개요

○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례지구는 농생명산업지구로 후보군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 심사, 선정, 관계부처 협의 등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유형은 농업생산연계형, 혁신산업중심형 2가지의 유형으로 구성됨

[표 5-7] 농생명산업지구 유형 및 범위

유형	농업생산연계형	혁신산업중심형
지정목적	○ 농업생산 중심의 연관 산업 집적화 및 가치사슬 강화 ○ 농가소득, 시장경쟁력 제고	○ 농생명 신산업 선점·육성 ○ 연관 산업 및 인프라 집적 ○ 기업성장·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 일반 농산업 분야 - 식량·원예·축산 등 - 스마트농업, ICT축산, 약용작물, 농식품, 재생에너지 등	○ 그린바이오 산업분야 - 종자,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식품,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 곤충, 천연물 소재 등
	○ 일반 농산업 + 그린바이오 복합형태 가능 (중요도 고려 유형 선택)	
핵심대상	○ 농업생산 + 농업경영체	○ 혁신인프라 + 기업경영체
운영주체	○ 공동법인, 컨소시엄 등	○ 협의체(핵심주체:기존 운영기관)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2024).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추진계획

○ 농업생산연계형의 지정 요건은 농업생산기반 3십만㎡(스마트 원예·축산 3만㎡)이상 확보와 함께 농업경영체 30호 이상이 운영주체로 참여가 필요함

[표 5-8]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요건

구분			내용
정량적 요건	농업생산 연계형	생산기반	농업생산기반 30ha 이상 확보 (*스마트 원예·축산 3ha 이상)
		농업경영체	운영주체 참여 농업경영체 30호 이상
	혁신산업 중심형	기업 집적	관련 기업 5개소 이상 (*지구 운영기간 5년간 기업유치 계획 포함)
		혁신기반	연구·지원기능 대학, 연구소 등 2개소 이상
정성적 요건	공통	산학연관 협력	대학·연구소 및 기업 상호간 협의기구 존재
		사업·예산 지원	해당 분야 사업 및 투자 실적이 높은 지역
		기술력 확보	해당 분야에 경쟁력 있는 기술력 보유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2024).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추진계획

○ `25년 사업으로 농업생산연계형 4개 시군, 혁신산업중심형 3개 시군이 선정됨

- 농생명산업연계형 : 남원시(ECO스마트팜), 장수군(저탄소 한우), 임실군(치즈), 고창군(김치)

- 혁신산업중심형 : 익산시(동물의약품), 진안군(홍삼), 순창군(미생물)

[그림 5-3] 농생명산업지구 농업생산연계형 선정지역

남원시(ECO스마트팜)	임실군(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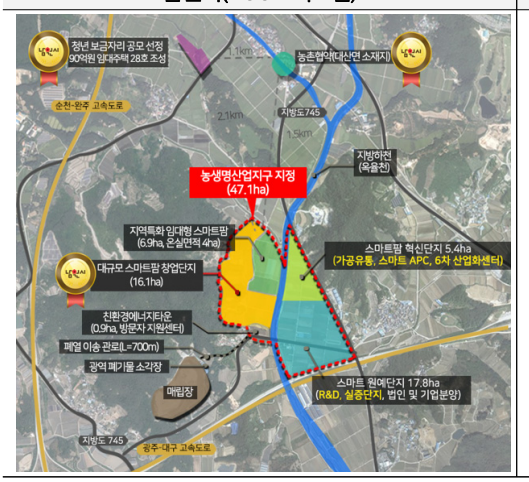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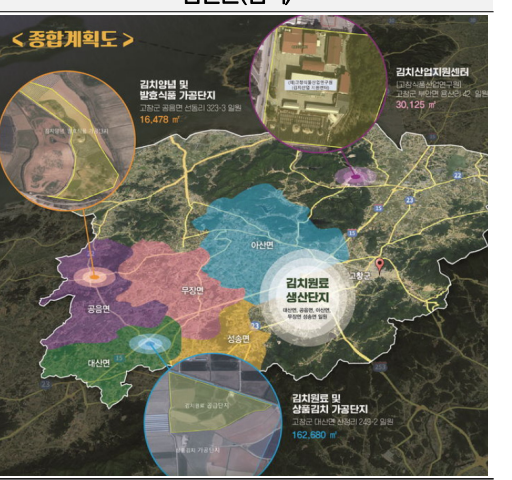

○ `24년 선정 시군의 공간적 범위는 시군단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지형(단일 거점), 연계형(복수 거점 연계)의 형태를 가짐

[그림 5-4] 농생명산업지구의 형태

단지형(해당 시·군 내 단일 거점 조성)	연계형(해당 시·군 내 복수의 거점 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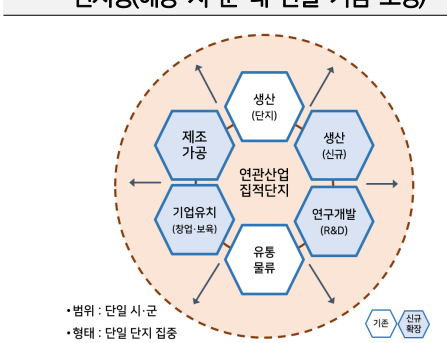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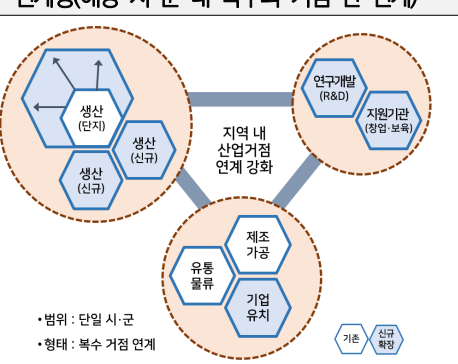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2024).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추진계획

2) 농생명산업지구의 농촌특화지구 연계 방안

○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은 단일 지구지정으로도 지자체의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마련을 마련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와 농촌특화지구의 연계를 통한 농촌특화지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촌특화지구 유형중 지구성격이 유사한 산업관련(산업, 융복합, 축산)지구와 연계 가능함

○ 농생명산업지구는 시군의 농촌공간에서 토지이용의 규제완화(농업진흥지역 해제·마을정비구역 지정·농지전용허가)와 도·시군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농촌특화지구는 농업, 산업단지, 6차산업활성화에 대한 토지이용의 규제완화(특정시설 입지 완화), 국가예산사업, 지원사업 등을 통한 지원 기능을 수행함

○ 이는 농촌특화지구를 통한 국가 재정지원 + 농생명산업지구를 통한 지방 재정지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동력(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설조성에서는 통촌특화지구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완화 + 농생명산업지구를 통한 시설입지완화를 도모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력(방법)을 확보할 수 있을것임

[그림 5-5] 농생명산업지구-농촌특화지구 연계 개념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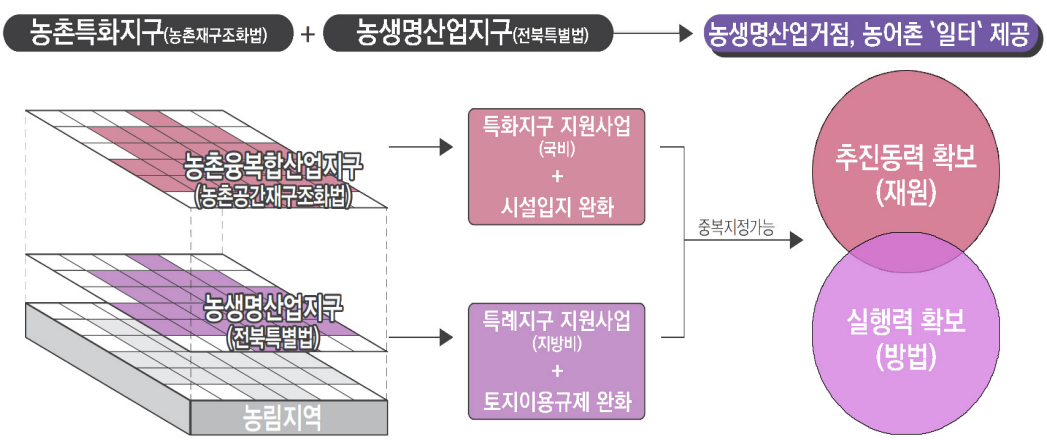

다. 기타 특례지구 연계 방안

1)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연계 방안

○ 농생명산업지구 외 타 전북특례지구는 현재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연계방안에 검토에 한계를 가지나 농생명산업지구와 동일 개념을 적용하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농촌재구조화법)와 친환경산악관광지구(전북특별법)의 연계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예시 : 장수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 번암면 일대 트레일레이스 빌리지를 구축하여 산악관련 레포츠의 중심지로 성장, 이를 활용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트레일레이스빌리지)-농촌마을보호지구(죽암마을)-경관농업지구(동화호 벚꽃길, 장안산 억새숲)를 연계, '친환경산악관광지구'(전북특별법)-'마을보호지구'-'경관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연계로 농촌·산악 관광의 종합적 거점역할 수행 가능 예상

[그림 5-6] 친환경산악관광지구-농촌특화지구 연계 개념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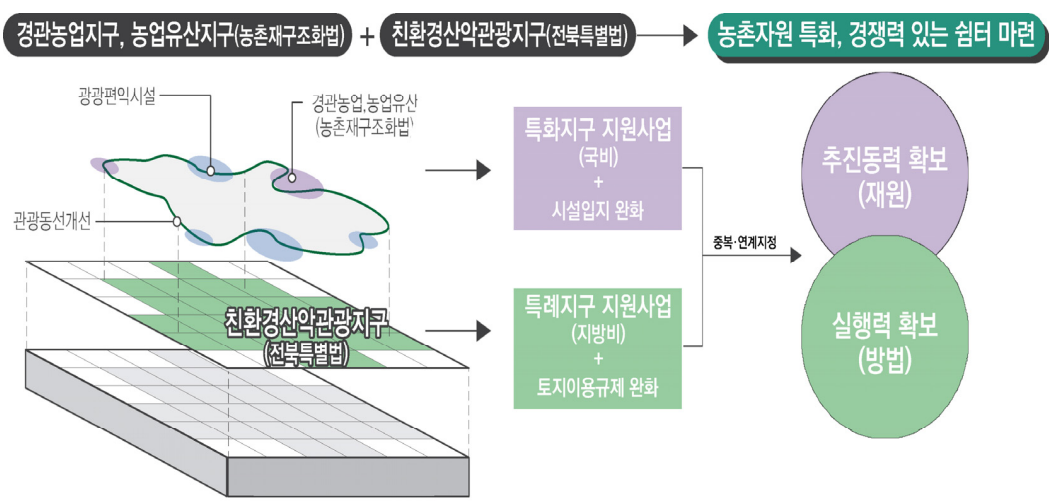

○ 이외 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전북특별법)-재생에너지지구(농촌재구조화법), 산림복지지구(전북특별법)-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촌재구조화법)의 연계 등이 검토 될수 있을 것으로 향후 전북자치도 계획 수립을 반영하여 전북자치도 및 지자체의 특례-특화지구의 연계 방안모색이 필요함

2) 산업관련 농촌특화지구의 특례 연계 방안

○ 산업관련 지구의 입지적정성 검토를 위한 격자 도출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 특례지구를 반영하여, 각 농촌특화지구 별 분석프로세스를 개별 작성하여 입지를 완화가 적용된 농촌특화지구 지정검토가 가능함

- 전북특례지구는 각 지구의 성격 및 특례의 내용과 지정 요건이 다양함에 따라, 입지적정성 검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요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례를 확대해갈 예정으로 연계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필요

[그림 5-7] 입지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전북특례지구 적용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신재생에너지지구
목적		산업시설 이전 · 집적화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 농촌산업육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			
입지가능시설		공장, 물류단지 등 농 · 임업용 시설	축사 및 축사 관련 사육/가공/자원화시설	농업생산시설 제조/가공/유통/관광 시설	재생에너지 생산/운반/저장시설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보호요소	주거지, 농지, 도로, 하천의 4개 요소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등급화			
입지 불가지역 검토기준	용도지역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제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 ·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외			
	자연환경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전북특례지구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지구, 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용도지역 입제제한 제외

4.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계획수립 기반마련

▌단계적 추진

○ 전북자치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계획수립 대상인 13개 시군이 `25년 이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농촌공간계획 관련 행정 및 용역사의 업무 과도로 인해 계획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사업간의 연계 및 주민참여 기회 감소 등이 발생할 우려, 이로인해 계획의 질적저하가 발생할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함

○ 현재 시범수립 및 계획수립 중인 지자체에서 수립지침과 관련법령 등에 있어 변경과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변경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수립 시기에 따른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사업 계획과 정책적 방향성 및 사업선정 요건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 사업이 투트랙으로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농촌특화지구와 농촌특화지구사업(농촌공간정비사업) 수립에 주의 필요

○ 또한, 전북자치도 내 기초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시군 매칭가능 지방비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통한 새로운 농촌협약 추진여건이 부족함

○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단계적 계획수립을 제안하고자 함. 이는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수립과정에서 광역차원의 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광역-기초 간의 협력체계의 마련과 농촌공간계획의 완결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역량강화를 목표로 함

○ 시군은 기초단계의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전북자치도는 [표 5-1]의 내용에 따라 농촌협약사업이 완료 예정인 임실, 순창(`20 선정), 김제, 진안, 무주(`21) 등 시군의 사업수요를 조사, 현재 시범수립중이 지자체 이외 선도 수립 지자체를 선정하여 기초-광역이 농촌공간계획 공동수립 형태의 도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함

- 도 공모사업을 통한 농촌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 내용, 추진체계, 사업구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얻어지는 노하우를 타 시군으로 이전, 그 외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내실화 과정 필요

▌조사 및 분석 기반 마련

○ 앞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데이터는 시군 자체자료의 구축여부, 구축된 자료의 양과 질, 현행화 등의 문제점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및 입지분석 시, 정확한 시군의 여건진단과 입지선정의 차이가 발생함

○ 현재 농촌공간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V-WORLD),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데이터포털,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시스템, 지자체 자체자료의 가공과 지오코딩(자료의 GIS위치 정보 가공)을 통한 공간분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들에 의지하여 지난한 DB구축과정이 필요함

- 현재 농업 및 농촌관련 데이터DB 및 공간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또한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s://www.raise.go.kr),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팜맵(https://agis.epis.or.kr)등에 분산

○ 전북자치도의 경우,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공간분석기반 마련, 농촌공간계획 관련 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사와 농촌관련 공간DB구축 등 기존 협력기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전북자치도 중심, 시범수립지역·도공모수립지역 대상, 분석 및 성과 지표개발 연구와 농어촌 공간분석 체계수립 및 DB구축 용역 등의 시행이 필요함

- 분석 및 성과 지표개발 연구 : 정책내용과 전북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분석에 있어 유의한 결과를 가지는 지표들을 선별·제안하고 시군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영하는 각 지표들이 유의미한 값을 가지기 위한 범위와 값, 성과지표 설정 방향, 각 지표의 관리 주체 검토와 기초단계에서의 지표(현황·통계)관리·작성 방법 등을 제안

- 공간분석 체계수립 및 DB구축 용역 : 1단계로 분석 및 성과 지표개발 연구 수행 이후,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표들에 대한 DB구축(격자 규격, 기초 자료 DB구축, 관련기관 자료DB구축, 분산된 공간정보시스템 연동)

- 농식품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과제협력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농촌공간계획의 테스트베드 및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

▌농촌공간계획 추진체계 정비

○ 현재 농촌계획 관련 사업추진부서는 농촌재생팀, 농촌계획팀, 농정팀이 전담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촌관련 실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농어촌관련 정책의 수렴과 반영, 계획수립에 효과적인 형태, 농촌관련팀 중심으로 타 부서원의 참여 형태의 행정협의회를 운영, 다른 분야를 보완하고 있으나 농촌특화지구는 지구지정 시, 다수의 법적 규제가 적용됨으로 도시계획, 산업, 환경 등 다방면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 농촌공간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촌협약을 비롯 각종 공모사업, 국비지원사업, 지방비사업등의 개별사업에 걸쳐 심의회, 협의회,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PM단 등 사업지원을 위한 자문·심의 기구와 농어촌지원센터, 지역활력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등의 지원조직(지원기관, 중간지원조직,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광역 및 시군의 농촌계획(농촌공간에서 수립되는 모든 계획)에 무분별한 비전 및 목표 설정으로 각 사업별 달성 지표와 계획내용의 및 일관성 및 통일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등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별도의 교육·컨설팅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 지정 등 농촌에 가치 증대 및 사업시행으로 지원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현재 농촌에서 운영중인 자문·심의 기구, 지원조직을 기초·광역단위로 각 부서 별, 사업별 조사를 통해 통합 및 확대, 분과운영, 연계운영 등의 정비·운영 체계 정비가 필요함

○ 이와 함께 행정협의회에 다수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토록하고 농촌팀만이 아닌 규제, 사업시행 등에 관련된 타 팀원을 공동담당으로 설정하여 타 부서 구성원의 책임성 강화와 각 단위사업 별 사업부서와의 연계로 실행력 제고가 필요함

- 현재 '전북 농어촌활력재단'설립을 준비중, '전북 농어촌활력재단'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에서 활동하는 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 현장활동가, 전문가, 주민조직(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사업 별 추진위원회), 지역리더, 액션그룹 등에 대한 조사와 참여 확대 및 연계 방안 마련

나. 관련 주체의 역량강화

▌ 참여 주체의 역량강화

○ 기초자치단체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단위사업 단위 중심의 사업담당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20년부터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되어 그 기간이 짧고, 정책 방향과 내용의 지속적인 변화로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있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농촌사업 담당 조직 또한 용역업체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지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지체의 기초역량강화 및 준비가 필요함

○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지역과 법률, 정책 등 전 영역에서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농촌특화지구지정을 위한 마을보호지구 및 타 특화지구의 입지적성성 검토의 실행은 각종 시군의 DATA의 가공과 집적화, 승인통계로의 절차를 거쳐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 및 산업, 환경 등 다방면의 정책과 법령에 대한 이해 전제

○ 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보직순환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농촌공간계획 정책과 지침에 즉각적인 대응력 부족과 전문성·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기관 및 중간조직 전문화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흐름과 농촌특화지구 활용에 대한 노하우 축적, 사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지원조직은 나아가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협정을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지원하는 주체로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계획수립과 특화지구 지정에 주민참여 유도를 이끌어내지 못할 여지가 있음

○ 추진체계의 역량강화를 위해 농어촌공간계획 교육프로세스의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며 시범계획 수립 및 도 공모사업 등에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도내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구축, 기술이전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초 중간지원조직등의 지정이 현재 년단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구성원의 직업 안정성 부족으로 잦은 이직 및 결원 발생 등 지원조직 본연의 업무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원조직의 지정기간 확대와 조직과 인력구성에 대한 재원확보로 조직의 안정정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갈등해결 프로세스 마련

○ 농촌특화지구는 다양한 성격의 지구가 지정, 현재의 토지이용체계와 도입되는 토지이용체계의 이득관계에 맞물려 지역(읍면, 마을)간, 지역주민 간, 시설 임차인·임대인 간 갈등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제안, 협정 등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계획수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농촌공간계획에서 적극적인 지역주민과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는 갈등의 유발과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음

- 축산지구 지정, 기존 환경위해시설 및 환경관리시설의 이전 등, 거주자와 사용자의 관점에 따른 농촌지역사회의 갈등 발생 가능성 농후

○ 계획수립 추진체계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마을-읍면-시군 단위에서의 갈등해결 위원회 등의 운영 등 대응 체계를 설계·조직하고, 지자체 및 지원조직 대응 가이드라인, 유형별 해결 사례집,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

○ 지속적인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협력프로그램 등을 수시로 시행,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갈등발생 예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이 필요함

○ 또한, 광역에서는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해결 또는 분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발생 시, 조정 및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 「전북특별법」변경 시행으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는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의 계획과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적용한 다양한 유형의 지구지정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농촌특화지구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응하고, 관련 법령의 시행 등에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함

○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사업계획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재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효과에 따른 시군 내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모니터링,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 주민참여 확대

▌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 농촌공간계획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의 성장을 위한 의견들을 다양한 창구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계획수립으로 인한 수립단계에서의 동의와 함께 농촌지역에서의 갈등발생을 예방함

○ 현재 농촌에는 농식품부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100개 시군을 선정하여 1,500개 이상의 액션그룹이 활동하였으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문체부·한국관광공사의 DMO(지역관광추진조직), 행안부 주민자치회, 전북자치도의 생생마을만들기, 사업별 추진위원회, 지역리더 그룹, 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주민공동체가 운영중으로 의견수렴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지역의 주민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함

○ 다양한 주민공동체의 활동영역을 농촌공간계획으로 유도, 해당 시군 주민들의 수요 반영 소통창구를 확대, 시군→읍면→행정리→마을로의 공동체의 활동영역을 구체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계획수립체계 주민 참여 확대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결정에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에서 제안한 내용들의 사업화를 통해 사업에 대한 참여주체로서의 성취감을 지역사회에서 공유, 지역주민 간의 협력과 결속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수립체계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마련인 필요함

○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주민들의 실수요를 기반한 계획이어야 하며, 농촌특화지구는 주민생활과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주민 간의 합의를 통해 발전방향과 세부계획, 구역계 설정의 합의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시군(사업위주) 및 읍면(지역위주)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농촌공동체들을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시군은 각 계획의 수립초기부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읍면별 설명회와 리더교육, 읍·면 나아가서는 최소 법정리 단위의 의견수렴과 결정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원조직 중심 진행이 필요함

▌행정-의회-주민 소통 강화

○ 농촌재구조화법 입법 취지인 `농촌공간의 농촌다움 회복`의 실행방안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축사 입지 제한 강화와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요건 완화 등 농촌위해시설의 입지에 대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행정의 정책방향 설정과 의회의 입법과정은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지역소멸 대응,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성장에 대한 목표설정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와 다른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행정과 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행정-의회-주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 의회, 주민 각 주체별 분절보다는 지역주민이라는 동질성 확보가 필요함

○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부탁이 아닌 추천·공모방식을 통한 수당지급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와 주민에게 `시군계획단` 등의 권한과 지위를 제공, 적극적 참여 동기 마련이 필요함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 요약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농촌특화지구 제도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됨

-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고려할 사항과 구체적인 방법 등 시군의 일선 현장에서서의 정책 적용 및 집행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
- 중앙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수단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지구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향을 제안
- 전북자치도 및 13개 시군에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계획수립 단계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 연구 내용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 관련 동향과 함께 농촌공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취지 및 추진 방향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성과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함

○ 농식품부의 정책 자료를 기준으로 농촌공간정책 핵심 수단인 농촌특화지구의 도입 배경과 목적, 운영의 기본원칙 대한 내용과 함께 세부적인 사항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목적,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일선 행정 및 계획수립 관련 주체의 역량강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일선 지차체의 계획수립 관련 추진 상황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사례연구는 농촌공간

계획 시범 시군(5개)의 계획 내용에 제시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함

○ 농촌공간계획 내에서 농촌특화지구가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을 검토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절차와 기준, 타 계획·제도와의 관계 등 지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출하여 일선 시군의 계획 수립 과정은 물론 광역지자체의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촌특화지구 7개 유형의 도입 목적과 취지는 물론 각 유형별 지정 기준과 방법, 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 농촌특화지구 적용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및 정책 추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량과 추진체계 등 정책 대응 태세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시함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등의 전북자치도 특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

○ 농촌특화지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향과 함께 농촌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 계획수립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 과제를 제시함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 본 연구는 2024년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였으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농촌특화지구에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 농식품부의 정책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연구목표와 방향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였음

○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지침 등)의 확정과 연동하여 농촌특화지구를 포함한 농촌공간계획 전반의 계획수립 및 심의·승인 기준, 추진체계 등에 대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연구(용역 포함)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정책적 제언

▌농촌공간계획의 법적인 위상 부여 및 범위 확정

○ 농촌공간계획은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촌공간에 대한 부분을 보조(완화 또는 강화)하고 공간적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을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관리·성장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국토계획법은 총 144개 조항으로 국토의 개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 하나의 법률로 굉장히 많은 토지이용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음
- 성장관리계획 구역 도입(2021년) 등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과 성장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여기에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는 것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계획 수립 절차 개선

○ 현행 법령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와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 혼선과 계획기간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됨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은 기초·광역심의회의 심의 절차 이외에도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많은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획수립의 효율성 제고 및 수립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자문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의 기능은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 사업계획은 기본·시행계획과 수립 목적 및 범위 등가 소규모·구체적이므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승인하

는 것으로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계획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농촌공간이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의 자문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 도입 필요

▌계획수립 취지를 고려한 과도한 현황분석 항목의 조정

○ 기본계획의 수립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계획수립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황분석 관련 항목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완화 또는 삭제 검토 필요

○ 인구분석,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은 현행 지침에서의 위상을 축소 조정하여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기준에 포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 필요

○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의 경우, 농촌특화지구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구계 설정, 세부사업의 입지선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보조자료로 활용 제안

▌농촌특화지구 관련 기본·시행계획의 내용 범위 명확화

○ 기본계획에서는 농촌특화지구 후보지역을 도출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구의 선정 및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시군의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의 취지와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농촌특화지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 필요

참 고 문 헌
REFERENCE

김솔희, 서교, 이성우, 전정배. (2020). 정부별 국정운영 방향과 농촌지역개발사업 변화 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6(1), p.131

송미령, 성주인, 한이철, 서형주, 민경찬. (2021).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송미령, 한이철, 서형주. (2019).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혜진, 모용원. (2022.10.). 농촌 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임승현, 이중섭, 황영모, 김수용. (2021). 전라북도 농촌마을 기초통계 작성 연구,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692

임승현, 황영모, 김수용, 정미선. (2024). 인구감소 대응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 구축 기초 연구.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331

국토연구원. (2020).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한국농정50년사.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24).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10문 10답

농림축산식품부. (20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완주군. (2023). 2035 완주 도시기본계획.

전라북도. (2020).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조사 및 관리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 (2024). 2024년도 경관보전특화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전북특별자치도. (2024).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추진계획

정읍시. (2016). 2030년 정읍도시기본계획.

SUMMARY

Research on Operational and Management Roadmaps for Rural Specialized Districts in Jeonbuk State

Seong Hwa Jang· GwiJin Kim

1. Research Goals and Method

○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Jeonbuk State's eligibility and readiness for the rural specialized district system (the System), as well as develop effective operational and management roadmaps, to assist the region in fully utilizing the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in compliance with the "Act on Rural Spatial Restructuring."

○ The System is expected to play an integral role in developing and preserving Jeonbuk State's rural spaces, as it can streamline the mapping of spatial scopes for rural policy projects (those pursued starting in 2024) while possibly relaxing or strengthening existing land use regulations.

○ First, we referred to the government guidelines to outline the specific criteria and procedures required for designating a rural specialized district, and we proposed feasible alternatives that each city and county in Jeonbuk State can leverage to facilitate its policy customization and implementation.

- According to the master planning guidelines and policy material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ry), planners are granted some leeway in applying the designation criteria.

○ Second, given that the designation of rural specialized districts requires the

synergistic integration with policy projects, which are promoted to encourage relocation of facilities to designated areas by imposing restrictions on new facility locations, we proposed operational roadmaps toward effective district designation by combining project options availabl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ith those projects that can be pursued at the metropolitan (e.g., Jeonbuk State special cases) and basic local government levels.

- We reviewed special provisions introduced with the launch of Jeonbuk State and sought ways to apply them to rural specialized districts.

○ We analyzed central government guidelines and master initiatives of sample cities and counties to propose operational and management roadmaps. This provided Jeonbuk State and its 13 cities and counties with essential data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System.

2.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This study was originally promoted as a 2024 policy research project. However, a delay in the Ministry's provision of policy standards, including updating and fine-tuning, for the System necessitated some adjustments to the initial research goals and direction.

○ In this context, comprehensive research and related services at the Jeonbuk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must be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finalized plans and guidelines on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o develop tangible plans, deliberation and approval criteria, and implementation roadmaps for overall rural spaces, including rural specialized districts.

▌Granting Legal Status to and Determining Scope of Rural Spatial Planning

○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institutional status of rural spatial planning, thereby enabling it to play a role in spatially supporting rural spaces (relaxing

or strengthening) that are neglected in the curren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Additionally, it is strongly advis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mending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o spatially separate urban and rural areas for their respective management and growth.

▌Improving Planning Stage

○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stipulate that the approval of master and i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subject to the review by both the Basic Rural Spatial Policy Council and the Metropolitan Rural Spatial Policy Council, leading to potential administrative disruptions and delays due to overlapping procedures.

○ Given the nature of work inherent in developing master and implementation plans, we propose a simplified planning stage in which the Basic Rural Spatial Policy Council's deliberation function is reduced to an advisory role, while the Metropolitan Rural Spatial Policy Council is solely responsible for deliberations.

○ For small-scale and specific project plans, it is also necessary to adjust the process by having them reviewed by the Basic Rural Spatial Policy Council and approved by the head of a basic local government (i.e., mayor or governor).

▌Streamlining Status Analysis Items to Suit the Purpose of Planning

○ Considering the purpose of master planning, the number and scope of items required in the current planning guidelines for status analysis exceed what is deemed reasonable, necessitating curtailment or deletion.

○ For example, existing guidelines that govern population analysis, rural spatial restructuring, and the management and layout of rural life service facilities need to be downscaled and incorporated into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rural regeneration and revitalization areas.

○ We also propose using GIS-driven spatial analysis as supplementary data in creating a project roadmap for the System to facilitate decision-making for establishing district boundaries and selecting subproject locations.

▌Redefining the Scope of Master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System

○ Current guidelines stipulate that eligible candidates for the System must be outlined in the master plan, while detailed roadmaps to district selection and design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limit the master plan's focus to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system operations and management.

○ The phrase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ural specialized districts" in the master planning guidelines may be misconstrued as requiring specific and detailed roadmaps. Thus, we recommend changing this phrase to "general direction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ural specialized districts."

Key Words Rural villages, Rural spaces, Rural specialized zones, Spatial planning, Spatial analysis

정책연구 2024-19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발 행 인 | 이 남 호
발 행 일 | 2024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79-1 955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4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물 수요량 분석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방향 기초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방안 연구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연구
「태조 이성계」 지역 대표 자산화 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육성 전략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전북자치도 디지털대전환 여건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 전략 연구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계절근로자제 관리 모델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 특화 관광자원개발 연구
전북자치도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전략수립 연구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발전 방안

현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새만금 산단 전력인프라 구축 대응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활동 현황조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해외도시간 협력관계 구축 방안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방향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95530
9 788966 125791
ISBN 978-89-6612-579-1 (PDF)